

2023. 학생생활제규정 표준안 (중등용)



▶ 발간 목적

본 표준안은 〈경상남도교육청〉에서 발행한 「2020 학생생활제규정 표준 안」의 재개정판으로 교육부 및 전국 시·도교육청이 발간한 2022년 학교 규칙 운영매뉴얼을 바탕으로 「대한민국헌법」,「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초·중등교육법 시행령」,「유엔아동권리협약」 등 관련 규범 및 국가인권위원회 '학교생활에서의 학생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 개선 권고'(2017) 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학교규칙은 학교라는 교육공동체 내에서 생활하면서 보장받아야 할 기본적 인권에 관한 사항과 책임을 규정한 규범의 집합으로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과 '학생 생활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됩니다. 학생생활제규정은 그 중 '학생 생활에 관한 사항'으로 학생이 학교생활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이자, 교원과 보호자에게는 학생생활교육의 지침서 역할이 될것입니다. 따라서 본 표준안은 학교생활에서 지켜야 할 약속과 보장받을 권리, 준수할 책임과 의무에 대한 내용, 그리고 교원과 보호자에게는 학생생활제규정 제·개정 절차와 운영 방법,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 방법 예시및 유의사항, 학생자치, 선도, 기숙사 생활 등을 안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3. 학생생활제규정 표준안」은 학교의 선택권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가운데 교육 현장의 다양한 장면마다 달리 적용되었던 규범이나 가치들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여 교육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초등, 중등의 학생생활제규정 지침서가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 소통, 공감, 참여의 학생생활제규정

학교생활의 기본이 되는 '학생생활제규정 표준안'은 학생과 교사가 교육활동과 학교생활을 함에 있어서 '학생과 교사의 인권이 보호'되며,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활동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합니다. 이러한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학생생활제규정은 법규범의 형식을 갖춰야 하며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들어 그 내용을 학생생활제규정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학교의 역사와 교육 가치, 문화적 특수성 등을 반영하여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학생생활제규정을 만들어 가는 개정의 과정을 통해 학생, 보호자 (학부모 등), 교원이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고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를 담아내는 참여와 소통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게 될 것입니다.

학생생활제규정 적용 시에는 학교 구성원들 간 충분한 소통을 통해 마련된 (안)을 학년(학기) 초에 학생·보호자(학부모)·교원 전체에게 미리 안내하고 동의를 구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스스로 참여하여 만드는 과정을 통해 **학생의 인권은 보장**되며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의 함양으로 **교권이 존중**되는 **인권 친화적인 학교 문화는** 자연스럽게 조성될 것입니다. 더불어 상호 공감과 존중의 생활교육으로 전환이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합니다.

차 례

Ι	학교규칙과 학생생활제(齊)규정	
1.	학교규칙과 학생생활제(齊)규정의 개념	. 6
2.	학교규칙과 학생생활제(齊)규정의 기재사항	7
II	학생생활제(齊)규정 개정 절차	
1.	학생생활제(齊)규정 개정 표준안	. 8
2.	학생생활제(齊)규정 개정 Q&A	12
3.	학생생활제(齊)규정 개정 참고 사항	16
4.	학생생활제규정 관련 서식	22
Ш	학생생활규정	
1.	학생생활규정 표준안	31
2.	학생생활규정 Q&A	46
3.	학생생활규정 참고 사항	50
4.	학생생활규정 관련 서식	59

Ⅳ 학생선도규정 67 1. 학생선도규정 표준안 67 2. 학생선도규정 Q&A 76 3. 학생선도규정 참고 사항 81 4. 학생전도규정 관련 서식 96 V 학생자치규정 표준안 133 2. 학생자치규정 Q&A 154 3. 학생자치규정 참고 사항 156 4. 학생자치규정 관련 서식 160

Ⅵ 기숙사학생생활규정

- 5 -

1. 기숙사학생생활규정 표준안 178

2. 기숙사학생생활규정 Q&A 188

3. 기숙사학생생활규정 참고 사항 190

I 학생생활제(齊)규정의 운영

1. 학교규칙과 학생생활제(齊)규정의 개념

학교규칙은 학교라는 교육공동체 내에서 보장받아야 하는 기본적 인권에 관한 사항과 책임을 규정한 규범의 집합을 의미합니다. 학교규칙 내용 및 개정 절차는 「초·중등교육법」 제8조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에 근거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2. 12. 1.] [대통령령 제32883호, 2022. 8. 30., 일부개정]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①법 제8조에 따른 학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05. 1. 29., 2011. 3. 18., 2012. 4. 20., 2012. 10. 29., 2020. 2. 25., 2022. 8. 30.>

- 1. 수업연한 , 학년 , 학기 및 휴업일
- 2.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 3. 교과 · 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수료의 인정
- 4.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휴학、퇴학、수료 및 졸업
- 5.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 6. 수업료 \ 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 7. 학생 포상, 징계,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 방법, 학업 중단 예방 및 학교 내 교육· 연구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 8.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 9. 학칙개정절차
- 10.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제10호까지 학교규칙 기재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이는 필수 기재 사항입니다. 각 기재 사항의 내용을 살펴볼 때,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은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이고,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은 "학생 생활에 관한 사항"이며, 제10 호는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입니다.

즉, 학교규칙은 ①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과 ② 학생 생활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고, 이 중 ② 학생 생활에 관한 사항을 경상남도교육청에서 발간한 2023. 학생생활제(齊)규정 표준안에서는 **학교규칙 중 학생 생활에 관한 사** 항 [이하 '학생생활제(齊)규정'] 이라고 지칭합니다.

2. 학교규칙과 학생생활제(齊)규정의 기재사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학교규칙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학교규칙의 기재사항]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1.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2.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3. 교과·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수료의 인정 4.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휴학·퇴학·수료 및 졸업 학업 중단 예방 5.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6. 수업료·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10.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학생 생활에 관한 사항 : 학생생활제규정	7. 학생 포상, 징계,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방법, 학업 중단 예방 및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 생활에 관한 사항 ※ 단, 학업 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은 교육공동체의 의견 수렴 절차에서 제외되므로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4호에 덧붙여 기재함 8.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9. 학칙개정절차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학생생활제규정이라 함은 학교규칙 기재 사항 중 학생 생활에 관한 사항을 의미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서는 "학교의 장은 제1항 제7호(학업 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보호자,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학생생활제규정은 학업 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교육공 동체(학생, 보호자(학부모 등), 교원)의 의견을 듣고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 여 제정 또는 개정해야 합니다.

학생생활제규정은 학생, 보호자(학부모 등), 교원이 직접 참여하여 만드는

규범인 만큼 교육공동체 스스로 이를 지켜야 하고, 학생 생활의 안내, 교육, 관리, 지도, 징계 등의 기준과 근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II 학생생활제(齊)규정 개정 절차

1. 학생생활제(齊)규정 개정 표준안

※ 본 개정 표준안은 참고 자료이며, 표준안에 대한 의의, 관련 법령, 기본 방침 및 유의 사항 등을 참고하여 각 학교의 학생, 보호자(학부모 등), 교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교의 특성에 따라 보충 또 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신설 학교의 경우, 개정이 아닌 제정으로 변경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제1장 학생생활제규정 개정 절차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학생생활제규정 개정 절차'에 필요한 세부 사항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근거)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제2절제32조, 제63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59조의4,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자치 및 참여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제15조 등 관계법령 및 조례에 근거한다.

제3조(적용 범위) '학생생활제규정'을 개정할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준수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학생생활제규정'이라 함은 본교의학교규칙 중에서 '학생 포상, 징계, 교육 목적상 필요한 지도 방법, 학교 내교육·연구 활동 보호,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학칙 개정 절차, 기숙사생활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제5조(학생생활제규정 제ㆍ개정 위원회의 구성) ① 학교장은 본교의 '학생생활

제규정'을 개정하기 위하여 학생생활제규정 제·개정 위원회 (이하 '제·개정 위원회')를 구성한다.

※ 해당 용어는 교육청별로 '규정개정심의위원회', '학교규칙 제·개정 위원회' 등과 같이 다양한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표준안에서는 '학생생활제규정 제·개정 위원회'로 통칭하고 있으며 각 학교의 상황에 맞게용어를 통일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개정 위원회'는 실질적 결정 단위가 아닌 절차 운영과 자문의역할이라는 점에서 그 구성원을 위원으로, 외부 위원인 경우에는 위촉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 ② 제·개정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때, 학생·보호자(학부모 등)·교원·전문가(필요시)가 포함되도록 하며 학생의 수가 반드시 1/3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되, 교원의 수와 보호자(학부모 등)의수가 각각 학생의 수를 넘지 않도록 한다.
- ③ 제ㆍ개정 위원회의 교원위원은 교직원 회의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 중에서 선출한다.
- ④ 제·개정 위원회의 학생대표는 특정 학년에 치우치지 않게 구성하며 민주적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다만 불가피한 때에만 대의원회를 통하여 선출할 수 있다.
- ⑤ 제·개정 위원회의 보호자(학부모 등) 위원은 보호자(학부모 등)대표 회의에서 선출한다.
- ⑥ 제·개정 위원회의 외부 전문가는 관련 전문가 중에서 학생·보호자(학부모등)·교원대표로서 선출된 위원들이 필요시 위촉하도록 한다.
- ⑦ 제·개정 위원회의 구성에 앞서 반드시 학생·보호자(학부모 등)·교원에게 제·개정 위원회의 구성 목적과 방법, 일정, 활동 내용에 대해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한다.

제6조(제·개정 위원회 운영) ① 제·개정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하여 선출하고, 간사를 두어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개한다.

-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사임, 또는 유고 등으로 인하여 새롭게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 ③ 제·개정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제·개정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

교 관계자, 보호자(학부모 등) 대표, 학생대표 및 기타 제·개정 위원회의 의결 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개정안 발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생활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 1. 제 · 개정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 3. 보호자(학부모 등) 대표회의(의견서 첨부)
- 4. 학생 또는 학생 대의원 1/3 이상 동의
- 5. 학교장
- ②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시기(학기말 또는 학년말 등)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필요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제8조(검토 및 의견수렴) ① 제·개정 위원회는 설문조사, 토론회 등의 방법으로 발의안에 대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특히 학생의 의견을 결과에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 ② 제·개정 위원회는 발의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다.
- ③ 제1항에 의한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제ㆍ개정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9조(심의 및 결정) ① 제·개정 위원회는 개정 발의가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 내에 의견 수렴 등 민주적 절차를 거친 심의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 ②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학생생활제규정 개정 심의 시 학생대표 등이 회의에 참여하여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한다.
- ③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학생생활제규정 개정 심의 절차에서 학생 또는 학생자치회의 의견제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 ④ 학교의 장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실현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개정하여야 한다.

제10조(공포 및 정보 공시) 학교의 장은 개정안을 학교홈페이지에 탑재하고 학교알리미 등을 통해 정보 공시한다.

제11조(연수 및 교육) 학교의 장은 개정된 학생생활제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보호자(학부모 등)에게는 가정통신문 등으로 개정 내용을 안내한다.

제12조(적용 및 환류) 학교의 장은 학생생활제규정에 대한 의견수렴 및 분석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학생생활제규정의 준수 및 실천 정도를 평가하는 등 상시 개정 체제를 마련한다.

제2장 규정의 개정

제13조(개정 절차) 본 규정의 개정 절차는 학생생활제(齊)규정의 개정절차를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학생생활제규정 개정 Q&A

01. 학교생활제규정은 매년 개정해야 하나요?

Al. 매년 의무적으로 개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개정 필요성 여부에 대해 매년 새 구성원에게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매년 학교생활제규정에 대한 학생, 보호자(학부모 등),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검토 결과, 개정할 필요성이 없다면 개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학교생활제규정에 대해 참여 기회를 보장받지 못했던 신입생과 그 보호자(학부모 등)의 의견을 반영하거나 새로운 학교문화와 변경된 상위 법령과 조례 등을 반영하여 보다 민주적이고 인권 친화적인 규정을 만들기 위해 매년 개정을 적극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2. 학교생활제규정 개정안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나요?

A2. 네,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합니다.

이는 「초·중등교육법」 제32조에 규정된 사항으로 학생생활제규정 제·개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개정안이라도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필요시 제·개정위원회 위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개정안의 수립 경과, 주요 내용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즉시 학교장에게 통보하여 확정해야 합니다.

Q3. 학교생활제규정과 관련하여 상위 법령 개정(교육청 지침 포함) 내용을 반영하거나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할 때에도 규정 개정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A3. 아닙니다. 규정 개정 절차 없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할 때는 교육공동체이 의견 수렴결과와 무관하게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이고, 단순한 표현·자구 변경은 학생의 학교생활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없으므로 교육공동체의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단, 수정·변경 내용에 대하여 학교장 결재를 득한 후 홈페이지 탑재하여 학생·보호자(학부모 등)·교원 등에게 안내·홍보해야 하며, 관련 내용을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Q4. 지난해 학교생활제규정을 개정하지 않았어도 학생·보호자(학부모 등)·교원에게 매년 의무적으로 그 내용을 안내·홍보해야 하나요?

A4. 네, 반드시 안내하고 그 내용도 교육해야 합니다.

매년 학교 홈페이지(정보공개란), 학교알리미(https://www.schoolinfo.go.kr) 등을 통해 학교규칙(학교생활제규정 포함)을 공시하고, 그 내용도 교육해야 합니다.

학교규칙(학교생활제규정 포함)에 대한 공시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의무사항입니다. 규정에 대한 안내와 홍보는 매 학년초(3월) 및 수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보호자(학부모등) 교육, 가정통신문, 교사 연수, 학생 교육 등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Q5. 학생생활제규정 제·개정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하나요?

A5. 학생·보호자(학부모 등)·교원 대표로 5~11인 이내로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다만, 학생·보호자(학부모 등) 대표가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합니다.

학생생활제규정 제·개정 제반 사항을 계획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학생생활제규정 제·개정위원회」(이하 '제·개정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은 학생·보호자(학부모 등)·교원으로 위촉하여 구성합니다.

제·개정위원회는 학생·보호자(학부모 등)·교원 대표로 5~11인 이내로 구성하되, 학생대표의 수가 전체 위원수의 1/3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제·개정위원회는 위원장·위원·간사(생활지도 업무 담당자)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합니다.

- Q6. 학교생활제규정 제·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A6. 협의회, 토론회, 설문조사, 스티커 붙이기, 가정통신문, SNS를 통한 온 라인설문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학생 의견은 학생자치활동(학급·학년회의, 총학생회 등), 설문조사, 스 티커 붙이기,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할 수 있습니다.

교원의 의견은 부서별·학년별 및 교직원 회의를 통해 수렴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학부모 등) 의견은 보호자(학부모 등) 총회, 가정통신문(설문조사, 인터넷 조사), 모니터링단 활동 등을 통하여 수렴할 수 있습니다.

- Q7. 학생생활제규정 제·개정위원회와 관련하여 학생생활제규정의 개정 시학생, 보호자(학부모 등), 교원의 의견을 듣고 개정해야 하는 범위는 어디 까지 인가요?
- A7. 학생생활제규정 제·개정위원회에서 학생 생활과 관련된 규정 즉, 학생생활규정, 학생선도규정, 학생자치규정 등을 개정할 때에는 반드시학생·보호자(학부모 등)·교원의 의견을 듣고,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합니다.

학교규칙은 학교라는 조직 내에서 그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규범들의 집합을 의미합니다. 학교규칙은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6, 10호)과 학생 생활에 관한 사항(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7~9호)으로 구성되고, 이 중 '학생 생활에 관한 사항'을 "학생생활제규정"이라고 합니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08. 학생대표 등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나요?

A8. 네, 할 수 있습니다. 「교육기본법」 제5조(교육의 자주성 등)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의4(의견수렴 등)에 따라 학생의 요구가 있다면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관련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교육부 장관에게 관련 법 개정을 권고하였습니다.

"학칙 제·개정 시 학생의 참여권 보장을 위해 「초·중등교육법」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및 제59조의4를 개정하여, 학생의 의견 반영이 형식적인 절차에만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 2017. 12. 21. 권고 결정문 중)

3. 학생생활제규정 개정 관련 참고 사항

절차	참고
학생생활제규정 제·개정 위원회 구성	 학생, 교원, 보호자(학부모 등)로 구성(필요시 전문가로 구성) 학생위원 수가 전체 위원의 1/3 이상이 되도록 구성
개정안 발의	• 학교구성원, 학생생활제규정 제·개정 위원회, 학생회, 교직원회, 보호자 (학부모 등)회등의 발의
D	
학교공동체 의견수렴	 발의안에 대한 문구와 적정성 검토 학생생활제규정 제·개정 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 구성원 (학생, 보호자(학부모 등), 교원)의 의견수렴 발의안 확정
U	
개정 심의안 확정	• 학생생활제규정 제·개정 위원회에서 발의안에 대한 문구와 적정성 검토 후 개정 심의안 확정
D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과정에 학생대표 참석 및 의견 개진 기회 부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개정안 확정
D	
학교장 승인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결과인 개정안 승인
Ð	
공포	 학교 구성원들이 개정된 규정을 알 수 있도록 학교 게시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 통해 공고 학생생활제규정의 내용은 학교 홈페이지에서 학생과 보호자(학부모 등) 등이 알기 쉽게 별도의 팝업창, 퀵메뉴 등으로 공지
D	
개정 규정 안내	• 학교공동체 대상 개정 규정 안내
Ð	
적용 및 환류	 학생생활제규정 운영 결과 평가·환류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분석

☞ 발의안 : 학생생활제규정 제·개정 위원회가 발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견수렴을 마친 상태

☞ 심의안 : 학생생활제규정 제·개정 위원회가 발의안에 대한 자구와 적정성 검토를 마친 상태

☞ 개정안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안으로, 개정안은 학교장의 공포를 통해 확정

가. '학생생활제규정 제·개정 위원회' 구성과 운영

1) 학생생활제규정 제 · 개정 위원회 구성

- 학교장은 학생생활제규정에 대한 개정 발의안을 규칙 형식에 맞추어 가다듬고, 민주적 의견수렴을 통한 발의안으로 확정 절차를 진행할 '학생 생활제규정 제·개정 위원회'를 구성함.
- '학생생활제규정 제·개정 위원회'의 위원은 '학생, 보호자(학부모등), 교원, 전문가(필요시)'로 구성하며, 인원은 5인~11인으로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7인 이상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 외부 전문가는 필요시 인권, 법률, 아동·청소년, 사회복지, 상담 관련 경력자 등을 폭넓게 인정하여 위촉할 수 있음.

		위원의 구성			
위원 수	위원장				
		구분	구성방법		
		교원	- 학생 위원의 수 이하로 구성 - 교직원 회의를 거쳐 구성		
위원장	위원 중 호선	학생	- 특정 학년에 치우치지 않게 구성 - 위원회의 1/3 이상 되도록 구성 -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불가피한 경우 대의기구를 통해 선출)		
포함					
(5명~11명)		명~11명) ^{오진}	보호자(학 부모 등)	- 보호자(학부모 등) 대표 회의를 거쳐 구성	
		전문가 (필요시)	 교원, 학생, 보호자(학부모 등) 위원들이 추천하여 위촉 인권, 법률, 아동·청소년, 사회복지, 상담 관련 경력자 등을 포함 폭넓게 외부위원으로 인정 		

2) 학생생활제규정 개정안의 발의

○ 학생, 보호자(학부모 등), 교직원은 누구나 학생생활제규정의 개정 발의할 수 있음.

○ 다만 학생자치회, 보호자(학부모 등)회의, 교직원회의 등 학교 내 기구 를 통하거나, 일정 수 이상의 참여를 발의 요건으로 하는 것은 가능함.

3) 민주적 의견수렴 절차

- '학생생활제규정 제·개정 위원회'에서는 개정 발의안에 대하여 목적의 정당성, 수단과 방법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 이해관계의 균형성을 살펴보고, 개정 시기 적정성 등에 대해 검토하고, 학교 구성원의 의견수렴을 진행함.
- 학생의 경우 학생자치활동(학급·학년회의, 학생대의원회, 동아리 활동 등), 온·오프라인 설문조사, 스티커 붙이기, 학교우체통, 학교신문고, 토론 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의견수렴을 진행함.
- 보호자(학부모 등)의 경우 보호자(학부모 등)회, 가정통신문(설문조사, 인터넷 조사)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진행함.
- 교원의 경우 부서별, 학년별 회의, 전체 교직원 회의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진행함.

4)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안 마련

- '학생생활제규정 제·개정 위원회'는 민주적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얻은 의견을 반영하고, 학생생활제규정의 형식요건에 부합하도록 학교운영 위원회 심의안을 마련함.
- 현행 학생생활제규정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안 내용을 비교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내용을 신구 조문 대조표의 형식으로 작성함.
- 확정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안을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학교의 장은 심의 안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사유가 없는 한**, 학교운영위원회에 그대로 상정함.

5)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 '학생생활제규정 제·개정 위원회'의 위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직

접 참석하여 수립 경과, 주요 내용 등을 설명함.

○학생생활제규정의 개정 사항 대부분은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한 관련 이 있으므로 학생대표 등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6) 학생생활제규정 개정안의 학교장 승인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되면 그 결과를 학교장에게 즉시 보고함.
- 학교장은 법령 위배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정안에 대해 승인함.

7) 개정된 학생생활제규정의 공포와 시행

- 학교장은 학생생활제규정 개정안을 승인하여 공포
- 학교 게시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공고
- 공고 시 반드시 개정 학생생활제규정의 시행 시기 명시

8) 학생생활제규정 이해 교육

- 개정 후에는 학생·보호자(학부모 등)·교사에게 학생생활제규정 개정 사항을 포함한 전체 규정을 다시 공지하여야 함.
- 학교장은 개정된 학생생활제규정을 학교 구성원 모두가 인지하고 준수
 할 수 있도록 교육 연수를 실시하여야 함.
- 학년초 학생·보호자(학부모 등)·교사에게 학생생활제규정 전체를 안내해야 하며, 이 때 학생, 보호자(학부모 등)에게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서약서 작성 및 제출을 강제하지 않도록 유의함.

9) 점검 및 환류

○ 학교장은 '학생생활제규정 제·개정 위원회'를 통해 개정 절차에서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차기 개정에 이러한 사항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준비함.

○ 점검 사항

※(예시) 학생생활제규정 개정 운영 체크리스트

7-11	체크사항		크항목	n] =
절차			아니오	비고
	• 학생생활제규정 제·개정 위원회는 학생, 교원, 보호자(학부모 등), 전문가(필요시)로 구성되었는가?			
규정개정심의 위원회 구성	• 학생생활제규정 제·개정 위원회 구성원의 수가 5인 이상 적절히 구성되었는가?			
	• 학생위원 수가 전체 위원의 1/3이상이 되 도록 구성하였는가?			
개정안 발의	• 개정안 발의 주체가 적절하였는가?			
	• 학생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는가?			방법: 추진일:
학교공동체 의견 수렴	• 보호자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는가?			방법: 추진일:
	• 교원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는가?			방법: 추진일:
인권보장 방향	• 인권을 보장하고 실현하는 개정 내용인가?			
학생생활제규 개정 절차 제·	• 학생생활제규정 제·개정 위원회에서 안건 을 검토하였는가?			심의일:
개정위원회 검토	• 개의 정족수와 의결 정족수가 적절하였는가?			
학교운영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쳤는가?			심의일:
위원회 심의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과정에 학생 대표가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주어졌는가?			
	• 학교 구성원들이 개정된 규정을 알 수 있 도록 학교게시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공고하였는가?			
공포 및 안내	• 학생생활제규정의 내용은 학교홈페이지에 서 학생과 보호자 등이 알기 쉽게 별도의 팝업창으로 공지하였는가?			
	• 개정된 주요 내용에 대해 학생·교직원보호			

자에게 안내하였는가?

10) 참고 (학생생활제규정의 운영 시기 등)

구분	권장시기	내 용
안내	학년초	 □ 학생생활제규정 안내·연수·홍보 • 학교 홈페이지 탑재: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탑재 • 학생생활제규정을 담은 소책자, 리플릿 제작·배부 • 가정통신문, 보호자(학부모 등) 문자 메시지 발송, 설명회 개최 • 학교알리미 탑재 ※ 공시항목-교육활동(학교규칙 및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검토	학년초	 □ 학생생활제규정 개정 의견 조회 ● 매년 학생생활제규정 개정에 대한 의견 청취 ● 학생생활제규정 검토 결과 반영 및 전년도 운영 평가 결과 반영 ● 보호자(학부모 등)총회, 학생자치회, 교직원 회의 의견 청취
개정	학기중	□ 학생생활제규정 제·개정 위원회 운영 검토 및 개정 • 학생생활제규정 제·개정 위원회 운영 검토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학생생활제규정 개정 자체 점검사항 교육청 보고 • 개정 학생생활제규정 학교알리미 탑재(수시 공시 가능)
	연중	□ 학생생활제규정 운영 • 단계별 인권 친화적 규정에 관한 교육 실시
운영	학기중	□ 학생생활제규정 운영 과정 상시 점검 • 학생자치활동 • 보호자(학부모 등) 총회 의견 청취 • 학교 홈페이지 및 의견 게시판 • 교직원 회의
결과 평가	학년말	□ 학생생활제규정 운영 결과 평가 · 환류 • 의견수렴(학생·보호자(학부모 등)·교원 운영 평가 설문조사) • 필요한 경우 다음연도 개정안에 반영

※ 출처 : 경기도교육청 「학교생활인권규정 운영 안내」 참조



4. 학생생활제규정 관련 서식(예시)

※ 본 서식은 예시안이며 학교의 상황에 맞게 변경하여 운영 가능함

[서식 1-①] 학생생활제규정 제·개정 위원 명부

○○중·고등학교

연번	성 명	소 속	연락처	위촉기간	비고
1	₹00				위원장 (보호자)
2	김00				학생
3	# }				학생
4	0100				교원
5	<i>300</i>				교원
6	<i>\$100</i>				외부 전문가
7					

※ 위원의 구성

구분	구성 방법		
교원	•학생 위원의 수 이하로 구성		
<u> </u>	•교직원 회의를 거쳐 구성(학교장 제외)		
	•특정 학년에 치우치지 않게 구성		
학생	•위원회의 1/3 이상 되도록 구성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불가피한 경우 대의원회를 통해 선출)		
H 중소// 중남다 드/	•학생 위원의 수 이하로 구성		
보호자(학부모 등)	•보호자(학부모 등) 대표 회의를 거쳐 구성		
	•교원, 학생, 보호자(학부모 등) 위원들이 추천하여 위촉		
전문가(필요시)	•인권, 법률, 아동·청소년, 사회복지, 상담 관련 경력자 등을 포함 폭넓게		
	외부 위원으로 인정		

[서식 1-②] 학생생활제규정 개정 발의안 양식

학생생활제규정 개정 발의안

규정 항목	현행 규정	의견(안)	의견 제출 사유
제 <i>○조</i> 교복	동절기 교복 위에 방한용 외투를 착용할 수 있지만, 수업시간에는 착용하지 않는다.(단, 색상은 무채색이어야 함)	교복 외에 방한용 덧옷, 조끼 등의 착용 여부 및 색상, 형태 등에 대해서는 학생 개인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교복 위 외투 착용을 제한하는 것은 학생의 건강권과도 관련이 있으며. 교복안이나 외투 색깔을 제한하는 것은 개인의 개성실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임
제6조 학생의 권리 -3항-3호	게시물(의견 제시·알림글)은 자유롭게 탈부착할 수 있다.	게시물(의견 제시·알림글· <u>그림 등)</u> 은 자유롭게 탈부착할 수 있다.	게시물의 다양한 종류를 인정하여 학교 구성원의 의사소통을 도울 수 있음.
제27조 소지품 및 소지품 검사 -3항-2호	소지품 검사 실시 전 해당 학생에게 소지품 검사의 목적과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소지품 검사 실시 전 해당 학생에게 소지품 검사의 목적과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u>학생의</u> 동의를 구해야 한다.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더라도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는 것은 학생 개인의 의사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임.

○○학교 학생생활제규정 중 위와 같은 부분에 대해 개정이 필요하다는 학생회 회원들의 의견제출에 따라 ○○학교 대의원회 회의를 거쳐위와 같이 개정을 요청합니다.

2000.00.00

○○학교 학생회장 ○○○ (서명)

붙임 학생(대의원)회 회의록 1부. 끝.

[서식 1-③] 학생(대의원)회 회의록

제00회	○○학교	학생(대의원)회 회의를	록
○ 회의 날짜 :○ 장 소 :○ 참석 위원 : 명				
O 회의 주제				
O 회의 내용				
○ 회의 결과				
O기 타				
O확 인	,			.1=1
자격 성명		자격	성명	서명
위원장 ○○ 위원	<u> </u>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서식 1-④] 학생생활제규정 개정 신구대조표

구 분	작 성 원 칙
【조명과 조제목】	생략하지 않고 기재한다.
【개정되는 부분】	개정되는 부분은 모두 기재하고 밑줄을 친다.
【개정되지 않는 부분】	개정되지 않는 부분은 점선으로 표시한다.
 【신 설】	신설되는 내용을 모두 기재하고 밑줄을 친다.
	"(삭제)"라고 표시하고 밑줄을 친다.
 【개정내용과 관계없는 부분】	"(현행과 같음)"이라 표시하되 밑줄을 치지 않는다.

현 행	개 정 안
제16조(허가사항) 학생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담당 교사 및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6조(허가사항)
①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받아야 한다.	 ① (삭제)
② 캠핑 등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삭제) ② (첨해고 가오)
③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③ (현행과 같음) ④ <u>휴일에 학교에서 단체 활동을 하고자 할 때</u> (신설)

[서식 1-⑤] 학생생활제규정 개정 발의안(심의안)

학생생활제규정 개정 발의안(심의안)

규정 항목	의견 제출 사유
제6조(학생의 권리)-3항-3호	게시물의 다양한 종류를 인정하여 학교 구성원의 의사소통을 도울 수 있음.
제27조(소지품 및 소지품 검사)-3항-2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더라도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는 것은 학생 개인의 의사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6조(학생의 권리) 학생은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제6조(학생의 권리)
① ~ ③ (생략)	① ~ ③ (현행과 같음)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게시물(의견 제시·알림글)은 자유롭게 탈부착할 수 있다. 다만, 지정된 장소(학교게시판 등) 및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특정 개인 및 단체를 비방.모욕.명예훼손, 혐오, 허위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게시물(의견 제시·알림글·그림 등)은 자유롭게 탈부착할 수 있다. 다만, 지정된 장소(학교게시판 등) 및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특정 개인 및 단체를 비방.모욕.명예훼손, 혐오, 허위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소지품 및 소지품 검사)	제27조(소지품 및 소지품 검사)
① ~ ③ (생략)	① ~ ③ (현행과 같음)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소지품 검사 실시 전 해당 학생에게 소지품 검사의 목적과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3. 소지품 검사 실시 전 해당 학생에게 소지품 검사의 목적과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학생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4. ~ 6 (생략)	4. ~ 6 (현행과 같음)

붙임 학생생활제규정 개정(안) 1부. 끝.

[서식 1-⑥] 의견 수렴 양식

학생생활제규정 개정 발의안에 대한 의견수렴 안내

안녕하십니까? 「초·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생생활 제규정 개정 시 학교 구성원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학생생활제규정은 학생, 보호자(학부모 등),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학교 '학생생활제규정 제·개정 위원회'에서 교원과 학생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생활제규정을 개정하 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첨부해 드리는 바와 같으며, 발의안 전문은 우리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보호자(학부모 등)께서는 발의안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발의안에 대해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20 년 월 일

○○중・고등학교장 ○○○

○○학년도 학생생활제규정 개정 발의안에 대한 의견서

(예시1)

찬성	반대	기타 의견

(예시2)

관련 조항	의견	비고
제○조		
제○조		

20 년 월 일

보호자('학부모 등) 성명:	(.	서명	١,	

학 생 성명: (서명)

[서식 1-⑦] 학생생활제규정 안내

학생생활제규정 안내문

존경하는 보호자(학부모 등)님께

자녀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학생의 보호자(학부모 등)가 함께하는 생활교육을 하고자 학생생활제규정을 우리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하였으니 학생과 함께 이 규정을 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학생생활제규정이나 생활교육의 방법과 절차 등에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담임선생님이나 교무실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교는 학생생활제규정을 토대로 민주적인 생활교육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학생이 학교 교육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책임을 다 할 수 있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함께 노력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중·고등학교장 ○ ○ ○

[서식 1-⑧] 학생생활제규정 확인서

※ 학교장의 학교규칙 설명 의무 이행 및 통지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0○○학년도 학생생활제규정

학생·보호자(학부모 등) 확인서

학생, 보호자(학부모 등), 교원이 직접 참여하여 만든 202○년도 ○○ 중·고등학교 학생생활제규정의 학교생활규칙 및 지도계획을 잘 읽고 이해하였습니다.

학년 반 번 학생성명 서명 보호자성명 서명

202 년 월 일

○○중·고등학교장 귀하

Ⅱ 학생생활규정

1. 학생생활규정 표준안

※ 본 개정 표준안은 참고 자료이며, 표준안에 대한 의의, 관련 법령, 기본 방침 및 유의 사항 등을 참고하여 각 학교의 학생, 보호자(학부모 등), 교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교의 특성에 따라 보충 또 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및 범위) ① 이 규정은 '○○○○학교 학생생활규정'이라 한다. ② 이 규정은 학생의 학교생활 전반과 관련된 규정으로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 학생과 교직원, 보호자(학부모 등) 모두가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바탕으로 인권과 민주적 학생자치를 보장하여 학생이 참여와 소통의 학교 공동체 문화 속에서 학습하고 생활하면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 이 규정은 「대한민국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유엔아동권리협약」,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아동복지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근거한다.

제4조(규정 적용의 원칙) 학생의 인권은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엄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므로 이 규정에 열거하지 않은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안 되며 적용 근거에 따라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제5조(학교구성원의 책무) 학교의 구성원으로서 학생, 교직원, 학교교육 종사자, 보호자(학부모 등)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인권 친화적인 학교 문화 조 성을 위해 상호 간의 다음 각 호의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 1. 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학부모 등)와 교직원, 학교교육 종사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해 노력하며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원활한 생활지 도를 위하여 시설, 인력 등 제반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 2. 교직원 및 학교교육 종사자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하고 학생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 3. 보호자(학부모 등)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학교의 장 및 교원의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 4. 학생은 인권에 관하여 학습하고 학교공동체의 인권문화를 존중, 실천해야 한다. 또한 학교 및 교직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하고 협력하며 학생의 참여하에 정해진 학교 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권리와 의무

제6조(학생의 권리) 학생은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 1. 학습자로서 학습권을 보장받을 권리
- 2. 실질적인 학생자치활동을 위해 학생대표기구의 자치권을 보장받을 권리
- 3. 학교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인격을 존중받을 다음 각 목의 권리
 - 가. 서명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수 있다.
- 나.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집회는 비폭력적이고 평화적이어야 한다. 단, 학교의 장은 교내의 집회에 대해서는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의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학교의 규정으로 집회의 시간, 장소를 제한할 수 있다.
- 다. 게시물(의견 제시·알림글·그림 등)은 자유롭게 탈부착할 수 있다. 다만, 지정된 장소(학교게시판 등)에 게시하고 게시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특정 개인 및 단체를 비방·모욕·명예훼손, 혐오, 성적표현 및 성차별적 표현, 허위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라. 학교 안팎에서 모임이나 단체 활동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 마. 교지, 신문, 방송 등 학생 언론 활동, 축제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누리고, 필요시 시설과 행·재정적 지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 4. 아동학대, 학교폭력 등 모든 폭력과 체벌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5. 쉬는 시간 ·점심시간 등을 통해 휴식할 권리와 문화생활을 누릴 권리
 - 6. 정규 교과 이외 교육 선택의 자유(보충수업・방과후 활동 등)를 보장받을 권리
- 7. 안전사고로부터 보호받고 건강한 생활(혐연권 보장, 생리 공결 인정 및 편의 제공 등)을 누릴 권리
 - 8.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소명할 기회를 가질 권리
- 9. 학년·나이·출신·성별·성적·외모·종교·부모의 경제 및 사회적 지위·신체적 조건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 10. 소수정체성(이주민가정, 북한이탈주민가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 11. 청소년 미혼모(부)·임신부 학생으로서 학습권을 보장받을 권리
 - 12. 장애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장과 학교생활의 편의시설을 우선적으로 보장받을 권리
- 13. 인권교육·아동학대예방교육·학교폭력예방교육·안전교육·성교육·게임중독예방교육·정보통신이용교육·자살예방교육 등을 교육받을 권리
- 14. 전문상담(생활·진학·진로·청소년노동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상담 내용에 관련된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 15. 사생활 비밀의 침해(소지품 검사 등)를 받지 않을 다음 각 목의 권리
- 가. 학생은 소지품 등과 관련하여 사생활의 비밀을 유지하고 감시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단 학교는 타인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긴급하거나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30조에 따라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나. 개인정보는 본인 및 부모 등 보호자(학부모 등)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 16. 편리하고 쾌적한 보건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 17.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을 보장받을 다음 각 목의 권리
 - 가. 학생은 안전한 먹거리에 의한 급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 나. 학생·학부모·교직원(영양교사 또는 영양사 포함) 대표로 구성되는 '학교급식협의회'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 다. 필요시 급식 재료·급식업체 등 급식 관련 정보를 제공받고 반영된 결과

를 요구할 수 있다.

라. 친환경 농산물에 기초한 급식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18. 징계 등 절차에서 다음 각 목의 권리

가. 징계 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 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나.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는 징계 대상 학생에 대한 선도와 해당 학생의 조속한 학업 복귀에 적합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지역사 회, 보호자(학부모 등) 등과 협력하여 교육받을 수 있어야 한다.

다. 징계 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되며, 징계에 따른 지도 방법과 절차에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학생의 의무) 학생은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지닌다.

- 1. 학교규칙과 규정을 준수할 의무
- 2. 학교구성원의 인권을 존중할 의무
- 3. 교권을 존중할 의무
- 4.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할 의무
- 5. 서로 존중하며 학교폭력 등을 행하지 않을 의무
- 6. 수업 및 기타 교육활동에 참여할 의무
- 7.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할 의무
- 8. 학교생활 환경을 소중히 하고 학교 내 공공기물을 소중히 다룰 의무
- 9. 자신과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노력할 의무
- 10. 바른말과 글을 쓰고 정보통신 윤리를 준수할 의무
- 11. 타인의 사적인 시간과 문화를 존중하며,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할 의무
- 12. 공공장소 및 교육활동 시간에 휴대전화 사용 규칙을 지킬 의무

제3장 기본생활

제8조(생활) ①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공동체 생활을 한다.

- ②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편의를 우선하는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 ③ 단체 교육활동을 할 때는 교사 및 인솔자의 지도에 따라 활동한다.

제9조(예절) ① 학생과 교직원, 학생과 학생은 서로 존중하며 예의를 지킨다.

- ② 먼저 본 사람이 인사하는 습관을 가진다.
- ③ 학교구성원과 대화할 때는 언행을 공손하게 한다.

제10조(이성교제) ① 서로 존중하고 성 평등의식을 갖는다.

- ②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 ③ 이성과 관련된 문제와 고민은 교원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제11조(출입의 제한) ① 학생은 '청소년출입금지구역'에 출입하지 않는다.

- ② 학생은 청소년 출입가능 업소라도 정해진 시간을 지켜야 한다.
- ※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물건',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출입·고 용금지업소'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4호 및 제5호의 정의에 따른다.

제4장 용의 복장

제12조(용모) ① 학생은 용모에 관하여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 ② 용모 및 두발은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청결하게 유지한다.
- ③ 두발은 학교 구성원(학생·교원·보호자(학부모 등))의 합의를 통하여 결정하되, 학생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반영한다.
- ④ 타인을 비하·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 만한 문구·상징 등이 포함된 복장이나 장식물을 착용하지 않는다.
- ⑤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문신, 장신구 등은 금한다.

제13조(복장) ① 교복(생활복 포함)·체육복 등의 착용 여부 및 디자인 결정 등은 학생·교원·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 ② 일과 중에는 규정에 맞는 복장으로 생활한다. 단, 신체적으로 특이한 조건, 건강상의 이유 등에 의해 대체 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
- ③ 여학생의 경우 교복 치마와 바지 착용을 선택할 수 있다.
- ④ 학생생활규정에 명시된 교복(생활복 포함)·체육복의 디자인을 변형해서는 안 된다.

- ⑤ 등·하교 때 건강 보호를 위해 교복 위에 기타 의류(외투·목도리·스카프 등) 착용을 허용한다.
- ⑥ 학생의 이름표는 탈·부착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교외에서의 이름표 착용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 ⑦ 실기 및 실습 시 수업에 맞는 복장을 갖춰 입고 필요시 안전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 ⑧ 지정된 교복(생활복 포함)·체육복·실내화 이외의 의류·양말·신발·가방 등에 대해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디자인과 색상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제14조(신발 및 가방 등) ① 실내화와 실외화를 구분하여 착용한다.

- ②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신발(높은 굽, 뾰족한 끝, 금속 장식 등)을 제한할 수 있다.
- ③ 가방은 교육활동 및 학교생활에 편리한 것으로 한다.

제5장 학교 내 활동

제15조(등·하교) ① 정해진 시간에 교문으로 등·하교한다.

② 합당한 사유(농어촌 원거리 통학생·보호자(학부모 등)의 요청 등)가 있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등·하교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6조(일과시간 중 외출) 등교 후 외출할 경우에는 담임교사 또는 해당 교사의 허락을 얻어 외출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돌아오면 즉시 알려야 한다.

제17조(수업시간) ① 수업에 참여하여야 하며, 수업을 진행하는 교원의 정당한 지도에 따른다.

- ② 몸이 아프거나 급한 용무가 있는 경우 교원의 허락을 얻은 후 행동한다.
- ③ 교원의 수업 진행이나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지 않는다.
 -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14조제2항제4호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교원의 정당한 수업(교육활동)을 방해 시,「교육기본법」제3조, 제9조, 제12조 및「초·중등교육법」제18조의4에 의거 다른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 보호를 위해 직무상의 권한인 교육활동 수행은 존중되어야 하며 부당한 교육활동 침해 로부터 보호되어야 합니다. 학생생활규정 개정 및 안내 시 수업 방해 행위*에 대한 학생의 올바른 이해와 지도로 처벌 (징계)에 앞서, 보다 근본적인 성찰과 개선의 인권 친화적인 학교 문화를 조성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수업방해유형; 수업활동과 무관하게 돌아다니는 학생, 수업활동과 무관하게 떠드는 학생, 수업과 관련 없는 질문을 계속하는 학생, 정당한 이유없이 무단으로 늦게 오는 학생, 다른 학생의 학습을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학생(출처: 이음교실)

제18조(분리의 적용 및 방법)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학생을 분리 할 수 있다.

- 1.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 2.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
- 3.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 4.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 고시에 따라 학교의 장은 학생생활지도의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교원의 생활지도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현장에서 필요한 제반지원 사항에 대한 수시 점검 및 지원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단위 학교의 총괄책임자로서 담임 교사가 해결하기 힘든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지도 대책을 수립하여 분리 상황 발생 시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합니다. 분리는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시하여야 합니다.

제19조(분리 절차 및 유의점) ①분리는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 1. 교원은 분리를 실시하기 전 해당 학생에게 주의를 주어야 한다.
- 2. 교원은 제18조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분리한 경우 학교의 장에게 지도의일시 및 경위 등을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학부모 등)에게 알려야 한다.
- 3. 학교의 장이 학생의 가정학습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목에 한하며 반드시 해당 학생의 보호자(학부모 등)와 조언 또는 상담 후 실시하여야 한다.
- 가. 교원의 생활지도에 따른 위 제18조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를 학생이 거부하는 경우
- 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동일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 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 '주의, 조언 또는 상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9조 및 제10조, 제11조의 정의에 따른다.

※ 가정학습 요청은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해당 학생이 수업으로 다시 복귀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을 가정과 연계하여 일시적으로 지도하는 방법이므로 징계로 인한 출석정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출결 상황에 결석 처리하지 않으며 [서식3]가정학습 실시 확인서 등을 활용하여 [서식2]분리지도 일지에 기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20조(분리의 범위) ①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은 다음 각호의 내용과 범위에서 시행한다.

- 1.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주변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여 학생들로부터 불만이 제기되는 경우
- 나. 모둠 활동 시 의견충돌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다른 학생들의 학습에 방해가 되는 경우
 - 2. 이동은 단위 수업시간 이내로 한다.
 - 3. 교원이 정해주는 다른 좌석으로 이동하도록 지도한다.
 - 4. 수업에 참여하도록 지도하며 별도 프로그램을 수행하지는 않는다.
 - 5. 수업이 마치면 본래 자리로 돌아가도록 안내한다.
- ②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는 다음 각 호의 내용과 범위에서 시행한다.
 - 1.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 분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수업 활동과 무관하게 떠들어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 나. 수업과 무관한 질문을 계속하여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 다. 수업 활동과 무관하게 교실 내를 돌아다니거나 교실 밖을 자주 드나들 어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 라. 수업 활동과 무관한 활동을 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 분위기를 저해하 거나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 마.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지도를 따르지 않은 경우
 - 바.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분리 후 1일 이내 재차 위반한 경우
 - 2. 분리는 단위 수업시간 이내로 한다.
 - 3. 교실 내 정해진 장소로 이동하도록 지도한다.
- 4. 정해진 장소에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생각하도록 안내하며 별도 프로그램을 수행하지는 않는다.
 - 5. 수업에 참여할 마음의 준비가 되면 언제든 자기 자리로 돌아가도록 안내한다.
- ③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는 다음 각 호의 내용과 범위에서 시행한다.
- 1.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 분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수업시간 중 학생 간 언어적 다툼으로 소란이 발생하여 수업에 방해가 되는 경우
 - 나. 제20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분리 후 1일 이내 재차 위반한 경우

- 다. 위 가목과 나목을 재차 위반한 경우
- 라. 수업시간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이 발생하여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 마. 자신과 타인에게 신체적, 정서적 안전에 위협이 되는 문제행동을 하여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바. 자신과 타인의 재산에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손실을 일으키는 문제 행동을 하여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 2. 분리는 단위 수업시간 이내로 한다.
- 3. 제20조 제3항 제1호의 가목 및 나목의 경우 해당 학생을 교원이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문 밖 복도로 이동하도록 지도한다. 필요시 본인의 책상과 의자를 이동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 4. 제20조 제3항 제1호의 다목에서 바목까지의 경우 해당 학생을 교원(관리자 또는 지도교사)이 지도·감독 할 수 있는 학교 지정 장소로 교직원이 인솔한다. 단, 안전에 따른 제한적인 물리적 제지 분리의 경우는 제32조에 따른다.
- 5. 학교 지정 장소에서 교원(관리자 또는 지도교사)이 제공하는 과제를 수행하도록 안내한다. 단, 필요시 과제 수행 이전에 마음을 진정시키는 시간을 가질수 있도록 한다.
 - 6. 수업시간이 종료되면 교실로 이동하도록 안내한다.
 - ※세부 절차 및 내용은 학교별도계획에 따라 운영한다.(표1 참고)
- ④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는 다음 각 호의 내용과 범위에서 시행한다.
 - 1.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 분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위 제3항 제1호에 따른 분리 후 1일 이내 재차 위반한 경우
- 나. 위 제3항 제1호에 따라 분리되었으나 학교 지정 장소의 해당 교원의 생활지도를 따르지 않은 경우
 - 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 2. 분리는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1일 60분 이내로 한다. 단, 등교(이전) 시간 및 식사시간의 경우 20분 이내로 하며 쉬는 시간은 제외한다.
- 3. 학교의 장이 지정한 특정 장소로의 분리를 시행하기 전 보호자(학부모 등)에게 시간, 사유 등을 알린다.
 - 4. 분리 사안에 따라 학교의 장이 지정한 특정 장소에는 해당 학생을 지도ㆍ

감독할 수 있는 교원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 5. 이동한 장소에서 교원이 제공하는 과제를 수행하도록 안내한다. 단, 필요시 학생과 상담 시간을 가질 수도 있다.
 - 6. 진행 시간이 종료되면 학생이 교실로 복귀 또는 귀가하도록 안내한다.
 - ※ 세부 절차 및 내용은 학교별도계획에 따라 운영한다.(표2 참고)
 - * 학생의 분리는 교육공동체의 합의를 통하여 학교의 특수성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변경·적용하는 것이 바람 직합니다. 학생의 수업 방해에 대한 사후 처벌(징계)가 아닌, 보다 근본적인 해결과 지원을 위해 평화롭고 긍 정적인 수업문화 조성을 위한 예방활동과 행동 원인에 따른 맞춤형 지원으로 관계회복과 배움, 성장에 중점을 두는 프로그램을 모색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 ※ 학교의 장은 분리 조치 시 학생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사안을 고려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의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4조 등
 -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경우 「초·중등교육법」제28조, 시행령 제54조
 - -'다문화 학생'의 경우「초·중등교육법」제28조의2
 - ※ 분리와 관련된 표1과 표2를 참고하여 경남 학생생활규정 제2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분리 장소, 시간, 및 학습지원방법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수립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 분리의 요건은 학생이 수업 중 잡담, 장난, 고성, 수업 거부, 기타 돌발행동 등으로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는 경우,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거부하거나 타인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는 경우 등으로 교육공동체의 협의를 통하여 기준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제21조(수업 외 시간) ① 실내에서 주위를 소란케 하여 타인의 생활에 불편함을 끼치지 않는다.

- ② 실내에서 심한 장난(공놀이, 격투기 등)을 하지 않는다.
- ③ 사행성 오락이나 도박(인터넷도박 포함)을 하지 않는다.
- ④ 정보통신기기를 부적절한 용도(게임, 오락, 불건전사이트 접속 등)로 사용하지 않는다.

제22조(학교 시설물의 이용) ①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한다.

- ② 학교 시설물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이상이 있으면 즉시 담임교사 또는 행정실에 알린다.
- ③ 교내 생활 중 고의나 실수로 시설물을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때는 즉시 담임교사 또는 행정실에 알린다.
- ④ 교내의 시설물을 고의·과실로 파손 또는 훼손한 학생은 이에 상응하는 변상 조치를 해야 한다.

제23조(봉사활동) ①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봉사활동은 선행의 대상이 된다.

② 학급 일이나 학교에서 인정하는 공공의 행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경우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24조(기타 교내 활동) ① 담당 교원에게 지도 및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일과시간 이외 담임교사 또는 담당 교원의 허락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 2.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 3. 교실·특별실에 비치된 학습정보화 기기를 사용하고자 할 때

제6장 학교 외 활동

제25조(학교 외 활동) ① 법, 질서와 공중도덕에 맞는 언행을 하도록 노력한다.

- ② 장애인·노약자·임산부를 먼저 배려하고 타인에게 친절하게 대한다.
- ③ 학교를 대표하여 행사 및 대회에 참가하고자 할 경우 학교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④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는 지도교원의 안내에 따르며, 현장과 상황에 맞는 안전 수칙을 알고 실천한다.
- ⑤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 ⑥ 술·담배(전자담배, 유사 흡연물 등)·본드·가스·마약류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구입·소지·복용하지 않는다.
- ⑦ 보호자(학부모 등)의 동의와 「근로기준법」, 「청소년 기본법」 등에 따라 청소년노동을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교육 및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장 정보 통신

제26조(온라인 생활) ① 온라인 공간에서 바른말과 글을 사용하여 올바른 사이버문화를 조성한다.

② 온라인 공간을 통한 폭력·성희롱·성매매·음란물 유포·비방(악플)·도박 등을 하

- 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 ③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온라인 공간에서 내려받은 불법 유해 매체물의 교내 반입 및 배포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자신과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한다.
- ⑤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제27조(정보통신기기 및 전자기기) ① 공공장소에서 개인의 정보통신기기(노트북·컴퓨터·스마트 기기·휴대전화 등) 및 전자기기는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서만 사용하며, 교원의 교육과 연구활동 및 타인의 생활과 학습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② 수업시간에는 정보통신기기 및 전자기기의 전원을 꺼야 한다. 단, 수업에 필요한 경우 교원의 허락을 구한 후 사용할 수 있다.
- ※ 수업 중 교원의 사전 동의 없이 보호자(학부모 등) 및 학생의 녹음 또는 실시간 청취 등의 행위는 「통신비밀보호 법」을 위반한 침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보고받은 관할청은 「교원지위법」에 따라 수사기관 에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단, 학생의 개별 학습을 위해 사전에 수업 교원에서 신청하고 허가를 받은 뒤 녹음하는 것은 가능하나 녹음파일이 허가된 목적 외로 활용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교원은 녹음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 ③ 수업시간 사용이 제한된 정보통신기기 및 전자기기를 학생이 사용한 경우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한다.
- 1. 수업 중 사용하는 경우 주의를 주고 지속적으로 사용할 시 분리할 수 있음을 해당 학생에게 안내한다.
- 2. 교원이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따르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정보통신기기 또는 전자기기를 학생으로부터 분리할 수 있다. 단, 교원의 지도에 따르지 않는 학생은 제20조제2항의 절차를 따른다.
- ④ 정보통신 기자재는 학습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관리하도록 노력한다.
- ⑤ 시험시간 중에는 일체의 정보통신기기 및 전자기기를 소지하지 않는다. 소지한 경우 '학업성적관리규정' 및 '학생선도규정'의 징계 절차를 따른다. ※시험시간 중 소지하지 않는 '정보통신기기 및 전자기기'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명시된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의 전자기기에 준한다.

제8장 환경과 안전

제28조(음식물) ① 음식물은 교내 지정된 장소에서만 섭취하여 타인의 건강과 환경을 지키도록 노력한다.

- ② 식사 전이나 기타 음식물을 섭취하기 전에는 손 씻기를 생활화한다.
- ③ 실내 청결 유지를 위하여 껌, 과자류 등의 소지 및 섭취를 자제한다.

제29조(청결활동)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정해진 장소에 분류하여 배출한다.

- 1. 일반쓰레기
- 2. 재활용품
- 3. 남은 음식물

제30조(소지 금지 물품 및 소지품 검사) ① 음란물(음란미디어·음란서적 등), 흡연 관련물(담배·전자담배·성냥·라이터 등), 주류, 마약류, 본드·부탄가스·환각제 등, 흉기(공구류·칼 등) 등은 소지해서는 안되며 화기 및 전열기(미용기기 등) 등은 학교 내에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단, 사용 금지 물품의 경우 담임교사 또는 담당 교사에게 사전 허락을 받은 경우는 사용 가능하다.

- ② 위 1항의 소지 금지 물품을 지닌 학생 개인의 소지품 검사는 당해 학교 교원만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유의하여 실시한다.
- 1. 소지품 검사는 불특정 다수(전 학년·특정 학년·특정 학급·특정 집단 등)를 대상으로 해서는 안 된다.
- 2. 소지품 검사는 실시해야만 하는 긴급하거나 합리적 이유(해당 학교 구성원이나 학생의 제한 소지품 소지 및 사용을 목격 및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절도·흡연 등이 식별되었을 때 등)가 있을 때 실시하여야 한다.
- 3. 소지품 검사 실시 전 해당 학생에게 소지품 검사의 목적과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학생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 4. 소지품 검사는 학생이 동의하는 공공의 장소에서 실시한다. 소지품 검사 과정에서 교사는 학생이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낄만한 표현이나 언행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5. 소지 금지 물품이 확인된 경우 분리 방법 및 절차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소지 금지 물품을 소지하지 않았음을 소명하는 것은 학생에게 있음을 안내한다.

- 나. 학생에게 분리 보관 사유 및 기간, 반환 방법 등을 알린다.
- 다. 학생에게 소지 금지 해당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이 지정한 장소에 보관한다.
- 라. 교원은 소지 금지 물품 분리 사실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학교의 장은 보호자(학부모 등)에게 3일 이내 찾아가도록 안내한다.
 - 마. 학교의 장은 분리보관일지를 작성하고 관리한다.
- 바. 보호자(학부모 등)가 폐기를 요청하는 경우 및 3일 이내 찾아가지 않는 경우 반환 의사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폐기함을 함께 고지한다. 단, 사전에 학 교와 협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찾아가는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 사. 반환 또는 폐기 결과를 분리보관일지에 기록 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한다 6. 소지품 검사 실시 후 해당 사항이 아닐 경우, 교사는 학생의 자존감 회복 을 도와주어야 한다.
- 7. 교원의 소지품 검사에 응하지 않는 학생의 지도 절차는 다음 각 목을 따른다. 가. 생활교육 담당부장이 상황을 파악한 후, 소지품 검사 불응에 대한 학생 및 해당 교사의 확인서를 받는다. 확인서에는 소지품 검사의 목적, 이유, 절차, 관련 의견 등을 포함할 수 있다.
- 나. 해당 학생의 보호자(학부모 등)를 내교하게 하여 사유를 설명하고 보호자(학부모 등)의 의견을 청취한다.
 - 다. 생활교육 담당부장은 해당 학생을 '학생선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 세부 절차 및 내용은 학교별도계획에 따라 운영한다.(표2 참고)

제31조(안전) 학생은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유의하여야 한다.

- 1. 시설, 실내·외 활동, 신체활동, 여가생활, 식생활 안전 등 생활안전 유의
- 2. 교통법규 준수 및 교통안전 유의
- 3. 언어·신체폭력, 집단따돌림, 성폭력, 사이버폭력, 생명존중 등 폭력 및 신 변안전 유의
- 4. 흡연, 음주, 의약품, 유해물질 안전 및 인터넷 중독, 정보보호 등 약물 및 사이버중독 유의
 - 5. 화재, 폭발, 붕괴, 화학적 오염, 자연재난, 사회재난 등 재난안전 유의
 - 6. 실험·실습, 특성화고 현장실습 시 안전 유의
 - 7. 기본 응급처치, 유형별 응급처치요령 숙지

제32조(물리적 제지의 적용 및 방법)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 ② 물리적 제지를 실시할 때는 다음 각 호에 유의한다.
- 1. 물리적 제지는 학교의 장 및 학교의 교원이 긴급한 경우 최소한으로 실시한다. 단, 위급 상황 발생으로 물리적 제지와 분리 필요시에는 주변 교직원 참여도 가능하다.
- 2. 학교의 장 및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 3. 학교의 장 및 교원은 필요시 현장에 있는 학생들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고 상황이 진정된 후 교실로 복귀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 4. 학교의 장 및 교원은 해당 학생을 제19조 및 제20조제3항의 분리 절차에 따라 분리한다.
 - 5. 교원은 학교의 장에게 물리적 제지 사실을 즉시 보고한다.
 - 6.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학부모 등)에게 알린다.

* 물리적 제지는 길을 가로막는 행위, 학생의 신체적 일부를 붙잡는 행위 등을 포함하며 긴급한 상황에서 자신과 타인의 안전 확보를 위해 교원의 판단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단, 물리적 제지 시 학생의 부상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식 등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하여야 하며 학생의 인격을 비하는 발언,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9장 규정의 개정

제33조(개정 절차) 본 규정의 개정 절차는 학생생활제(齊)규정의 개정 절차를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학생생활규정 Q&A

Q1. 학생생활규정에 반드시 목적 조항을 두어야 하나요?

==> A1. 네, 그렇습니다. 학생생활규정이 학생 통제 목적이 아닌 학생 스스로가 참여하여 정한 공동체 규범이라는 목적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O2. 다른 학교의 학생생활규정을 어떻게 볼 수 있나요?

==> A2. 학교 학생생활규정은 수시 정보공시 항목이며 '학교알리미 (https://www.schoolinfo.go.kr)' 웹사이트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다른 학교 학생생활규정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활용할 수 있습니다.

03. 학교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수거해도 되나요?

==> A3.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의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의 소지 및 상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는 것임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통신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 사용 규정을 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Q4. 화장, 장신구, 써클렌즈, 문신 등을 제한하는 조항을 두어도 되나요?

==> A4. 네, 그렇습니다. 학생생활에 관한 모든 규정은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고, 학교 구성원의 협의 과정을 반드시 거친 공동체의 규범으로서 가능합니다. 다만, 위에 언급된 바와 같이 제한 성격의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Q5. '표현의 자유' 유의사항에 게시물 수거 및 철거의 주체는 꼭 교사가 되어야 하나요?

==> A5. 네, 그렇습니다. 구성원을 차별·혐오하는 표현물을 발견하는 경우 학생생활교육의 지도 권한은 교사에게 있으므로 교사가 이행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바람직합니다.

Q6. 중학교의 경우 선거법 및 정당법에 적용되는 나이에 해당되는 학생이 없는 경우 학생생활규정에 꼭 담아야 하는가요?

==> A6. 학생생활규정은 학교의 상황에 따라 조율 가능합니다. 중학교에 도 입학 유예 등으로 만 16세 이상의 학생이 재학 중일 경우, 본 조항을 둠으로써 학생의 참정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07. 필사를 하도록 지시하는 것도 인권침해가 될 수 있나요?

==> A7. 네, 그렇습니다. 학생생활교육의 방편으로 글을 읽고 감상문을 작성하거나 성찰하도록 지도하는 것은 가능하나 교육목적을 벗어난 과도한 글귀 필사는 인권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 학생의 연령이나 수준 등을 고려하지 않고 '10개 명언 문장을 50번씩 쓰기', '책 등을 따라 A3 용지 앞뒤로 빈틈없이 빽빽하게 쓰기' 등의 방법으로 학생에게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기보다는 사실상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주는 방식은 가혹행위에 해당하여 인권침해의 소지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Q8. 훈계·훈육의 방법으로 손들고 있기, 팔굽혀펴기, 운동장 뜀뛰기, 점프 스쿼트 등을 적용하는 것은 '체벌'에 해당되는가요?

==> A8. 네, 그렇습니다. 학생의 신체에 직·간접적으로 고통을 주는 모든 행위는 체벌에 해당됩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8항은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은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체벌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교사가 직접 학생을 체벌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학생의 신체를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경우도 역시 체벌입니다. 따라서 훈계·훈육의 방법으로 손들고 있기, 팔굽혀펴기, 운동장 뜀뛰기, 점프 스쿼트 등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것 역시 「초·중등교육법」이 금지하는 체벌에 해당합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행위는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 「아동학대범죄처벌법」상 아동학대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Q9. 정당한 생활지도란 무엇이며, 고시와 학칙에 따라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를 하였다면 학생이나 학부모의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나요?
- ==> A9. 법령의 위임을 받은 고시와 고시에 따라 학칙으로 정한 생활규정으로 이루어진 교원의 생활지도는 '법령에 의한 행위'로써 형법 제 20조(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면책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가 법령·고시·학칙이 정한 범위를 벗어나거나 고시가 정한 학생생활지도의 범위를 벗어나 규정하고 있는 학칙에 근거하여 생활지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학칙을 제·개정할 때는 이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Q10. 학생을 훈육할 때 반드시 조언, 상담, 주의 단계를 순차적으로 거친 후 제지 또는 분리를 실시할 수 있나요?

==> A10. 일반적인 교육활동 상황에서는 조언이나 상담 또는 주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훈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훈육 전에 실시하는 조언이나 상담, 주의는 사전에 이루어지면 충분한 것으로 반드시 당일에 이루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학칙에 따른 금지 행동을 하는 학생에게는 구두 제제를 바로 할 수 있고,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는 등의 긴급한 경우에는 곧바로 물리적 제지도 할 수 있습니다.

Q11.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별도 장소에 분리하지 않고 보호자에게 바로 인계를 요청할 수 있나요?

==> All.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또는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를 거부하거나, 고시 제12조제6항제3호와 제4호에 따른 분리를 1일 2회 이상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지속해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학교의 장은 보호자에게 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Q12. 분리 조치한 학생에 대한 보호자 인계가 필요하여 요청하였으나 보호 자가 이를 거부할 시에는 어떻게 조치할 수 있나요?

==> A12. 만약 보호자에게 학생 인계를 요청하였으나 반복적으로 보호자가 이를 거부하면 사안에 따라서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15조제1항 및 제4호 및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기분에 관한 고시」 제2조제4호에 근거하여 보호자가 정당한 교원의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Q13.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를 할 경우 보호자에 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사전에 통지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A13. 정규수업이 끝난 뒤 남겨서 교육하고자 할 때 귀가 시간과 현재 상황을 보호자에게 안내하지 위함입니다.

Q14. 학생 분리 지도 시, 학생의 출결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 A14. 고시 제12조제6항에 따른 '학생분리'는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 지침」 제8조(출결상황)에 해당되지 않으며, 학교에서 별도의 '분리학생 조치 현황 대장' 등을 통해 분리 학생의 학습 장소를 기록·관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학생의 출석을 인정해 주며, 출석부마 나이스 출결관리에 인정결석 처리하지 않고 단위학교 '분리학생 조치 현황 대장' 등의 기록을 통해 확인합니다. 이와 같은 처리는 일시적인 분리의 일종인 가정학습도 동일합니다.

3. 학생생활규정 참고 사항

가. 학생생활규정 주요 워칙

학생생활규정은 학생의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자치 규범이다. 따라서 자치 규범으로서의 역할에 맞게 일차적으로는 학생의 권리를 명시하여 보호하며, 이차적으로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가지게 되는 역할과 규율을 자율적으로 확인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 1) 학교는 기본적으로는 교육권 보장과 실현을 중심으로 학생의 인권이 구현되는 장이므로 학생생활규정 역시 인권보장의 원칙을 천명하는 것이 당연함.
- 2) 다만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 일정 부분 제한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경우에도 학교구성원의 민주적인 방법에 의해 마련된 학생생활규정에 의해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제한할 수 있다. 따라서 학생생활규정에서도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3) 또한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주 관적이고 자의적인 해석과 적용의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용어로 수정하여야 할 것임.

나. 학생생활규정 내 유의사항

○ 용모 규정

「대한민국헌법」 제10조는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아야 하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행복추구권의 구체적인 내용에는 일반적 행동 자유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생의 두발 및

복장 등 용모에 대한 자기결정과 그에 따른 개성의 자유로운 실현은 행복추구권으로서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제17조 및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 사생활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학생 개인이 자신의용모를 결정하고 일상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여야 한다.

- 1) 용모에 대한 규정은 학생이 기본권을 행사하는 주체이자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기본권을 행사하고 조율해가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임.
- 2) 용모는 「대한민국헌법」 제10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기본권이므로 이에 대한 제한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학생이 참여한 의견 수렴의 절차를 거쳐야 함.

※ 유의해야 할 예: 개인의 건강, 기후, 학교 밖 교육활동 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교복 및 복장 제한, 교복의 종류가 바지와 치마로 되어 있음에 도 여학생에게 바지 교복 선택에 제한을 두거나 실질적인 선택을 어렵게 하는 규정, 성별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디자인 강조, 성별에 따라 두발에 대한 규제를 달리하는 규정, 교복 외 외투·속옷·티셔츠·양말·신발 등에 제한, 체육복 착용 제한,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등하교시 생활복 제한 등

O 소지품 검사

학생은 부당한 간섭 없이 물품을 소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사생활의 자유를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해치는 정보 및 물질로부터 학생을 보호하는 목적으로만 물품 검사와 소지 제한을 할 수 있다.

- 1) 「대한민국헌법」 제17조, 「유엔아동권리협약」제16조에 명시된 것처럼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는 기본권으로서 보장되어야 함.
- 2) 그러나 학교는 학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고, 아동복지에 해로운 정보와 자료, 물질로부터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과 함께 해석되어야 함.

- 3) 학생이 소지 금지 물품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학생생활규정의 소지 및 사용이 불가한 물품과 상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함.
- 4) 불가피하게 검사를 할 때는 학생이 그 필요성을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도록 그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는 과정을 가져야 함.
- 5) 소지품 검사 과정에서 위협적인 언어 사용 및 신체 접촉 등은 금하여야 함.
- 6) 소지품 검사를 할 때 교사와 학생 단 두 명의 구성원만 있는 밀폐된 장소는 금하고, 2인 이상의 교사(학생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가 함께 실시하는 등 교사와 학생 모두가 안전한 공간에서 진행되어야 함. 단, CCTV가 설치된 장소나 영상 촬영을 하는 경우 사전 학생의 동의(개인정보보호법 상의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아야 함.
- 7) 다른 학생에게 공개된 장소에서 소지품 검사를 진행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유의함.

○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 규정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은 사생활, 통신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실현의 의미가 있다.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 및 사용에 관한 규정은 학생의 의 견을 반영한 민주적 절차를 거칠 때 진정한 자율 규범으로써 의미가 있다.

- 1)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 자체를 금하거나 학생의 휴대전화를 일괄수거하여 학교 내에 있는 시간 동안 휴대전화 사용을 일체 제한하는 것은 지양해야 함.
- 2)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는 학생이 자기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학생 자신들의 의견에 기반한 규정이어야 자발적 실천이 가능함.

○ 정보에 관한 권리

「대한민국헌법」 제10조는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의미하고, 그 구체적 인 내용으로 사생활 보장을 포함하고 있다.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보장은 인간 존엄성에 대한 존중과 함께 자신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이는 자신에 대한 정보가 알려진 시점, 범위 등을 알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서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의미한다. 즉, 정보에 대한 권리는 학생이 자신의 문제에 대해 참여하고 한사람으로서 인격을 보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1) 개인정보는 계속적, 포괄적, 무제한적으로 수집될 수 없음. 학교 구성원의 개인 정보 수집·기록은 목적이 합당하고 분명해야 하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함.
- 2) 학교는 정보 수집·기록 기술이 고도화되는 환경을 반영하여 정보 유출에 유의하여야 하며 당사자의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보장하도록 노력해야 함.

O 학생의 참정권 보장

「교육기본법」 제2조는 교육이념으로 시민의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시 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는 것으로 규정한 바, 학생 역시 한 명의 시민 으로서 정치에 참여하여 역량을 향상해갈 수 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청소년들이 그들의 권리 실현을 위해 협상하고 옹호할 수 있으며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정치적 및 시민적 참여 수단으로서의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아동권리위원회(2017), 일반논평 20호]

- 1) 「공직선거법」 제15조 제1항, 제16조 제2항이 개정(2022. 1. 21.)됨에 따라 만 18세 이상 청소년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행사가 가능함.
- 2) 「정당법」 제22조 제1항의 개정(2022. 1. 21.)으로 만 16세 이상 청소년 은 정당 가입 및 활동을 할 수 있음.
- 3) 학교 외부의 정당 활동, 사회단체 가입과 활동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거나 이에 대한 징계 처분 등에 유의해야 함.

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반영 사항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제12조제6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지도를 할 수 있는 요건, 분리장소 및 시간, 실시 절차, 학습지원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하여야 함

[제12조제6항의 제3호 및 제4호에 대한 학칙 규정 예시]

생활지도		요건	분리장소(시간)	절차 및 유의점	학습지원
3호 지도	가	1호 또는 2호 지도 에도 불구하고 교육 활동을 지속 방해 할 경우	있는 개방된 교실 앞문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나	① 수업 중 학생 간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② '가'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교무실 등 교감 지정 장소 (수업 종료 시 까지)	교사가 교무실에 학생 인계 요청 후, 교직원이 인계하여 학생을 교무실 등 지정 장소로 이동	
4호 지도	가	수업시간에 지각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실 등 (점심시간 내 20분 내외)	식사에 필요한 최소시간 (20분) 보장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지도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나	① 3호 '나'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경우 또는 ②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교무실 등 교감 지정 장소 (60분 이내)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사전에 통지함	행동성찰문 등 과제 부여
기타	* 지각의 기준을 학교 여건에 따라 명확히 설정 가능 ※ 분리된 학생에 대한 지도는 학교 여건에 따라 시간대별로 교직원이 분담하는 방식 등을 정하여 실시할 수 있음				

※ 본 예시는 참고 자료로 활용하며, 단위학교 여건에 맞게 정하여 실시

출처: 교육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관련 학칙 특례 운영 안내'

[표1 – 경남 학생생활규정 제20조 분리의 범위에 대한 예시]

※ 아래 표는 예시이며 고시 해설서 등을 참고하여 학생, 보호자(학부모 등), 교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교의 특성에 따라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분리의 범위	요건		절차 및 유의점	학습지원
1항 수업 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 의 이동	가. 주변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여 학생들로부터 불만이 제기되는 경우 나. 모둠 활동 시 의견충돌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다른 학생들의 학습에 방해가 되는 경우	수업 교원이 정해주는 교실 내 다른 좌석 (단위 수업시간 이내)	•주의를 준 후 실시 •다른 좌석으로 해당 학생이 자리 이동하 도록 안내	수업에 참여, 별도 <u>프로그</u> 램 제공 없음
2항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	 가. 수업 활동과 무관하게 떠들어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나. 수업과 무관한 질문을 계속하여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다. 수업 활동과 무관하게 교실 내를 돌아다니거나교실 밖을 자주 드나들어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라. 수업 활동과 무관한 활동을 하여 다른 학생들의학습 분위기를 저해하거나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마.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지도를 따르지 않은 경우바.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분리 후 1일 이내 재차 위반한 경우 	수업 교원이 교실 내 지정한 장소 (단위 수업시간 이내)	•수업 교원의 선문적 인 판단에 따라 수 업에 참여할 마음의 준비가 되면 자기 자리로 돌아가도록 지도 가능함	수업에 참여, 자신의 행동 에 대한 성찰, 별도 <u>프로그</u> 램 제공 없음
	가. 학생 간 언어적 다툼으로 소란이 발생 하여 수업에 방해가 되는 경우 나. 제20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분리 후 1 일 이내 재차 위반한 경우	수업 교원이 학생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문 밖 복도 (단위 수업시간 이내)	의자를 준비하게 할	수업 교원이 부여한 과제 (회복적 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3 항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다. 위 가목과 나목을 재차 위반한 경우라. 수업시간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이 발생하여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마. 자신과 타인에게 신체적, 정서적 안전에 위협이 되는 문제행동을 하여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바. 자신과 타인의 재산에 고의·과실로 손해· 손실을 일으키는 문제행동을 하여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학교 지정 장소 교장실, 교무실, 학년실 등 학교장이 지정한 장소 (단위 수업시간 이내,	수업 교원이 관리자에게 학생인계요청 관리자 또는 지도교사가 분리장소로 학생 인솔 관리자가 분리학생 1차 면담 후 분리학생 상황에 따른 지도 조치 관리자 또는 지도교사가 분리학생 지도 및 교육 관리자 부재 또는 업무수행이 어려울 시 업무 대행자를 지명할 수 있음 지명할 수 있음 지명할 수 있음 전하성 지용한 수 있음 지용한 사용 지용한 사용	관리자 또는 지도교사가 부여한 과제 (회복적성찰문,
4항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가. 위 제3항 제1호에 따른 분리 후 1일 이내 재차 위반한 경우 나. 위 제3항 제1호에 따라 분리되었 으나 학교 지정 장소의 해당 교원의 생활지도를 따르지 않은 경우 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사안에 따라 학교장이 지정한 장소 (1일 60분 내,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부여한 과제 (회복적 성찰문,
기타	 * 학교의 장은 지도계획 수립 시 분리 요간 분리 장소, 지도프로그램 내용, 제공 서 * 위급 상황 발생으로 물리적 제지와 분리 * <u>학교 지정 장소</u>는 사안의 경중 및 학교 학생에게 적합한 장소 2~3개 등 지정하 	선, 분리 학생 인솔, 식 등을 포함하여 7 시 필요시에는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ᆌ획하여야 함 교직원 참여 가능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제12조제9항에 따라 **분리 보관**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보관 **방법** 및 **기한**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야 함

[제12조제 9항에 대한 학칙 규정 예시]

	요건	분리기간	분리장소	분리방법
1	제10조제2항에 따라 2회 이 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 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정보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	수업시간	교실 지정 장소	 1회차: 주의 실시 2회차: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 3회차: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 수업 종료 후: 즉시 되돌려줌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 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은 물품 (예시) 흉기, 라이터, 레 이저빔 기기 등		교무실 등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신고※ 학교의 장은 물품분리보관 일자를 작성 관리함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시) 술, 담배 등	3일	학교의 장이 지정하는 장소	· 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관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4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예시) 도색잡지 등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 본 예시는 참고 자료로 활용하며, 단위학교 여건에 맞게 정하여 실시 출처: 교육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관련 학칙 특례 운영 안내'

[표2 – 경남 학생생활규정 제27조제3항 사용제한물품 및 제30조제1항의 소지 금지물품에 대한 <mark>예시</mark>]

* 아래 표는 예시이며 고시 해설서 등을 참고하여 학생, 보호자(학부모 등), 교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교의 특성에 따라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요건	분리기간	분리장소	분리방법
제27조 제3항 사용제한 물품	제27제3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정보통신기기및전자기기)	수업시간	교실 지정 장소	 1회차: 주의 실시 2회차: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 3회차: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 수업 종료 후: 즉시 되돌려줌 ※교원의 지도에 따르지 않는 학생은 제20조제2항의 절차에 따름
제30조 제1항 소지금지 물품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은 물품 (예시) 흉기(공구류-칼 등), 흡연 관 련물(성냥라이터 등), 본드부탄가스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 될 수 없는 물품 (예시) 주류, 흡연 관련물(담배·전 자담배 등) 마약류, 환각제 등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예시) 음란물음란미디어, 음란서적 등	201	학교의 장이 지정하는 지정하는 교무실의 캐비넷 등	 교원은 분리보관 사유, 기간, 반환 방법 등을 학생에게 알림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신고 *학교의 장은 물품분리보관 일지를 작성 관리함 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관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라. 학생생활규정 주요 개정 권고 사항

학생의 권리와 의무 규정 명시를 통한 학생 기본권 보장

(학생의 권리) 게시물을 통한 학생 의견을 표현하는 데 있어 '다만, 지정된 장소(학교 게시판 등) 및 기간, 작성자(단체 대표 등)를 실명으로 명시하여야 한다.'와 유사한 규정은 작성자의 실명을 기재하도록 강요함으로써 자칫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개정을 권고함

(학생의 권리) 학교생활에 있어 '학년·나이·출신·성별·성적·외모· 종교·부모의 경제 및 사회적 지위·신체적 조건 등'구체적인 차별 요 인을 빠짐없이 규정에 명시함으로써 학생이 처한 다양한 상황이 보호되 지 않거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않도록 개정을 권고함

ル 과도한 생활 규제 완화를 통한 학생 권리 증진

(예절) '웃어른을 대할 때는 언행을 공손하게 한다.'와 유사한 규정은 존중의 원칙에 어긋난 말은 아니나, 웃어른이 나이가 어린 학생을 대할 때도 동등하게 지켜지지 않는다면 나이에 따른 차별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학교구성원 모두 상호 존중하며 예의를 지키는 내용으로 수정이 필요함

(이성교제) '불건전한 이성 교제를 금지한다'와 유사한 내용의 규정은 사적 영역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있는 행동을 한다' 등으로 수정을 권고함

() 과도한 용의 복장 규정 완화를 통한 학생 기본권 보장

(용의복장 수정) 민주적 절차에 따른 공동체의 합의 하에 마련된 조항일 경우 준수하여야 하나, '획일적 두발 규정과 과도한 용모, 복장, 신발의 종류 및 가방 규격 등'의 합리적 이유 없는 기본권 제한 규정은 학생의 개성발현권 및 자기행동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학습권 보호 및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또는 안전을 위한 목적을 우선한 최소한의 제한을 권장함

(용의복장 삭제) '학생 신분에 맞는 용의'와 유사한 표현의 규정은 해석하는 주체별로 자의적이고 주관적으로 해석되어 일관된 규정의 적용이어렵고,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를 권고함

● 공동체 합의에 의한 휴대전화 사용 제한 규정 마련

(정보통신기기 및 전자기기) 등교 이후 일괄적으로 휴대전화를 수거하여 하교 때 반환하는 규정은 학생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음. 다른학생의 학습권 보호', '교사의 수업권 보호'등을 위해 공공의 시간과 장소(수업 및 교육활동)에서는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할 수 있음을 감안하되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해야 하며, 관련 규정은 공동체 합의에 의한 것이어야 함

(정보통신기기 및 전자기기) 휴대전화 수거 관련 규정 위반으로 인한 장기간 학교 보관 등은 통신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뿐만 아니라 재산권침해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통신예절교육 이수 등으로 개정 권고함

● 학생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인격권의 침해를 최소화

(소지품 및 소지품 검사) 소지품 검사는 긴급하게 실시해야만 하는 상황 (사전 사유 설명)이거나, 해당 학교 구성원 등의 제한 소지품 소지 및 사용에 대한 목격 등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 학생 본인의 동의를 얻어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학생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 인격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법과 동의 절차, 자존감 회복 등에 대한 규정도고려해야 함

4. 학생생활규정 관련 서식

[서식 1] 학생생활제규정 체크리스트

2023. 학생생활제규정 체크리스트

기관명	학교	작성기준일	<i>2023.</i>	<i>12. 1.</i>
점검자	(직위) <i>생활교육부장</i>	(성명)	홍길 동	(인)
확인자	(직위) <i>교 감</i>	(성명)	홍길동	(인)

※□안에 V표에 해 주십시오.

영역 1 제·개정 절차 규정

순	점검 항목	점검	결과
1	학생생활제규정(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 운영 및 절차 등 명시 여부	□반영	□미반영
2	학생생활제규정(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 구성 시 학생 수 1/3 이상 구성	□반영	□미반영
3	학생생활제규정(학교규칙) 제·개정 시 구성원 의견수렴 방법 명시 여부	□반영	□미반영

영역 2 생활규정

순	점검 항목	점검	l결과
4	학생의 학교교육활동 참여 및 학교규범 준수 의무와 권리	□반영	□미반영
5	편견과 차별적 용어를 인권 친화적 용어로 수정	□반영	□미반영
6	염색, 파마 등 두발의 색상, 모양, 길이 제한을 어길 경우 불이익	□삭제	□미삭제
7	화장 등 용모 제한을 어길 경우 과도한 불이익	□삭제	□미삭제
8	양말, 신발 등의 색상 및 형태 제한, 교복 위 방한용 덧옷 착용 금지 (색상, 모양 규제 포함)	□삭제	□미삭제
9	여학생 교복의 치마와 (반)바지 선택권을 보장 (※ 남학생교는 '해당없음' 제출)	□ □ 반영 미년	□ 19명 해당없음
10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 자체를 금지	□삭제	□미삭제
11	구성원의 합의에 따른 학생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관리방법 마련	□반영	□미반영
12	소지품 검사에 대한 안전성, 긴급성, 동의여부에 근거한 기준과 절차 마련	□반영	□미반영

영역 3 선도규정

순	점검 항목	점검결과	
13	선도부원에게 학생 지도 및 생활교육 권한 일부 위임 규정 금지	□반영	□미반영
14	징계 회부 시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반영	□미반영
15	선도위원회에 회부 된 학생의 개인정보 보호	□반영	□미반영
16	선도위원회 회의 시 학생·보호자에게 반드시 의견진술 기회 부여	□반영	□미반영
17	특별교육 이수(위탁)기관 및 교육과정 운영 사항	□반영	□미반영
18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며 과도한 징계 기준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수정	□반영	□미반영

19	상벌점제, 유사상범점제(벌점 누적 등을 이유로 한 징계 등) 관련 규정	□삭제	□미삭제
20	정당, 사회단체 가입 일괄적 제한 또는 징계 규정 수정(만18세 선거권 부여 및 만16세 이상 정당 가입에 따른 학생의 표현과 참여의 자유 보장)	□반영	□미반영
21	학교내봉사를 포함한 모든 징계 조치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	□반영	□미반영
22	학교내 재심의 신청, 징계조정위원회 청구(퇴학시),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 방법 청구 기간 명시	□반영	□미반영
23	선도위원회 징계 결과 공고 ('○학년김○○'표기도식별기능	□삭제	□미삭제
24	선도(징계)위원회 징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31조제1항제1호~제5호) : 학교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출석정지(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 퇴학(의무교육대상자 제외)	□반영	□미반영
25	퇴학 조치 전 가정학습 기간 명시 여부		
26	학교내 재심의 운영 및 절차에 관한 규정	□반영	□미반영
2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 관련 사항	□삭제	□미삭제
28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교육활동침해행위'관련 사항	□삭제	□미삭제

영역 4 자치규정

순	점검 항목	점검	결과
29	학생회 임원 선거 등 학생 자치활동 참여권 보장 : 학생회 임원 선거 조항을 자치규정 내에 포함	□반영	□미반영
30	학생회장단 및 학급임원 자격 제한 : 성적, 출결, 사소한 징계(교내봉사)와 관련한 지나친 규제	□삭제	□미삭제
31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학생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의 참석 가능	□반영	□미반영
32	투표권 제한 내용: 졸업 예정자(중·고 3학년), 선거관리위원 등	□삭제	□미삭제
33	교외생활 및 단체 활동의 과도한 제한 : 학교장의 허가 없이 단체기입 금지, 외부 행사에 출품, 출연 또는 참가에 대한 장계	□삭제	□미삭제
34	선거관리위원회 학생로 구성 여부	□반영	□미반영
35	금품 선거 예방 및 공정 선거를 위한 입후보자 및 유권자교육 철저	□반영	□미반영

영역 5 기숙사규정

순	점검 항목		점검결과
36	기숙사학생자치회 구성 및 역할 명시	 반영	□ □ □ □ □ 비난영 해당없음
37	기숙사학생자치회(학생대표 등)에게 기숙사 학생의 생활 수칙 준수 여부 감독 권한 일부 위임 규정 금지	□ 삭제	□ □ □ 마삭제 해당없음
38	기숙사 입사 시 차별 조항 금지(성적, 징계 경중 미고려 등)	 반영	□ □ □ □ □ □ □ □ □ □ □ □ □ □ □ □ □ □ □
39	기숙사 내 통신의 자유의 과도한 제한(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 자체를 금지)	 반영	□ □ □ □ □ □ □ □ □ □ □ □ □ □ □ □ □ □ □
40	학생선도위원회 징계를 근거로 한 기숙사 퇴사 조치 조항 삭제	 삭제	□ □ □ □ □ □ □ □ □ □ □ □ □ □ □ □ □ □ □

점검결과 통 계	개선 (반영,삭제)	미개선(미반영,미삭제)	해당없음
합 계	()개 항목	()개 항목	()개 항목

[서식 2] 교육활동 방해에 따른 분리일지

교육활동 방해에 따른 분리 일지

						()	<u>학교</u>	
저스	H-1	ㅂ기	71 3 1	분리 경위	분리 통보	작성자	확인자		
접수 번호 	분리 일시	분리 학생	시행 교원	(요건, 분리장소, 경위, 학습지원 내용 등 기록)	일시 및 통보 방법	담당 교사	학교의 장	비고	
23-1	2023. 9, 15. 11:30 ~11:45	○○○ (○-○반)	000	김○○학생과 정☆☆학생이수업 중 언성을 높이며 말다툼을 하여 국어수업을 진행 중이던 박**교사 1차례 주의를 준뒤 잠시 멈추었으나 다시 말다툼이 진행되어 2차 주의를 줌.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의 주의 이후 즉시 일어나 큰 소리로 싸울 듯이 서로를 향에 다가서서 박**교사 가운데 막아서며 서로 멈추게 제지함. 2회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지속하고 진정이 되지 않아보여 ○○학교 학생생활규정 제21조제 3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따라분리조치함별도의 과제를 제시하지는 않았으며 마음을 진정할 시간이필요해 보여 자신의 행동에 대해 생각하라고 안내함수업이 종료된 11:45분 교실로복귀하였음	해당없음 9.15 14:00 어머니와				
23-2			○○○ (○○○ 지원)		사전 통보: 10.10. 14:00 어머니께 유선통보 10.10. 16:00 아버지께 서면통보				

[참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제12조제6항 제3호(수업중 교실밖 분리) 및 제4호(정규수업 이외 시간 분리), 제12조제4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의 경우는(**경남 학생생활규정 제20조 제3항 및 제4항, 제32조) 반드시 분리일지 작성 후 분리장소·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을 보호자(학부모 등)에게 안내 바람 -경남 학생생활규정 제19조제3항에 따라 가정학습 요청으로 인하여 분리된 경우도 일지에 기록 바람 -경남 학생생활규정 제20조제4항에 따른 분리의 경우는 보호자(학부모 등)에게 사전 통보 하여야 함 -보호자(학부모)에게 안내하는 방법은 서면, 유선, 문자 등 사안에 따라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 후 시행 바람

[서식 3] 일시 분리로 인한 가정학습 실시 보호자(학부모 등) 확인서

보호자님께!

○○학교장은「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제12조(훈육)제6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호자에게 일시적으로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교에서는 본교 생활규정 제○○조제○호에 따라 보호자에게 인계하여 가정학습을 시행하고자 안내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학습 실시에 따른 보호자 협조사항>

- **■(가정학습보호자확인서 제출)** 아래의 '보호자 확인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제출방법(예시): '보호자 확인서'를 (담임)교사에게 사진으로 전송, 메일, 출력물 지참 등 편리한 방법으로 제출
- **■(가정학습 시 특이사항 발생시)** 즉시 (담임)교사에게 연락(문자 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 055-123-4567(학교대표 번호)

202 년 월 일

○○중・고등학교장 (직인)

가정학습 보호자 확인서

아래와 같이 가정학습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학년 반 이름

가정학습 일시	가정학습 내용				
2023년 11월 15일	○○○ 온라인 학습 참여, 교과서 내용 정리 등				

특이사항 등 기재

보호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보호자 연락처1	학생과의 관계()
보호자 연락처2	학생과의 관계()

[서식 4] 교육활동 방해에 따른 회복적 성찰문

회 복 적 성 찰 문

교육 요청 일시	2023. 10. 10. 11:00 3교시 영어수업					
도착 시간	2023. 10. 10. 11 :0	<i>01</i> 종료 시간	2023. 10. 10. 11:20			
교육 요청 교원	<i>홍길동</i>	대상 학생	홍길동			
무슨 일이 있었나요?	※ 말, 행동 등을 누가	,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그때 어떤 생각으로 그런 행동(말)을 했나요?						
왜 이런 일이 일어 났다고 생각하나요?						
자신의 행동으로 가장 큰 영 향을 받은 사람은 누구(들) 라고 생각하나요?	※ 피해받은 사람, 나의 감정 추측하여 기록	행동, 나의 말, 나의 느	낌, 다른 사람(상대방)의			
자신의 행동으로 발생한 피 해를 회복하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 앞으로 이런 일이 / 체적으로 적어 봅시	생기지 않기 위해 내가 ² 다	실천할 수 있는 일을 구			
주변(부모님, 선생님, 친구들 등)에서 본인에게 도와주었 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번 일을 통해 배운 점은 무엇인가요?						
작성일	20 년 월	일 작성 학생	(서명)			

[서식 5] 개인 휴대전화(정보통신 기능 휴대용 전자기기 등) 사용 허가 요청서

개인 휴대전화(정보통신 기능 휴대용 전자기기 등) 사용 허가 요청서

학생 성명	홍길동	학 번	2학년 3반		
사용 허가 요청 물품	갤럭시 Z플립 4				
사용 허가 신청 일시 2023년 11월 16일 15시					
사용 허가 기간 및 시간 2023년 11월 17일 ~ 11월 24일, 영어 수업 시간					
사용 목적					
증빙 자료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제4조 및 본교 생활규정 제○○조제○호에 따라, 수업 중 학생의 휴대전화(정보통신 기능 휴대용 전자기기 등) 사용을 허가 받고자 함
- 휴대전화(정보통신 기능 휴대용 전자기기 등) 보관 및 사용에 또른 책임은 물품 소유자 개인에게 있음
- 기존 목적에 맞지 않는 휴대전화 사용 또는 불법적 사용에 따른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
- 기존 허가된 목적 외 활용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녹음을 중단시킬 수 있음

202 년 월 일

○○중・고등학교장 (직인)

[서식 6] 소지 금지 물품 분리보관 일지

소지 금지 물품 분리보관 일지

()학교

								<u> </u>	ш′	
접수	확인	확인	대상	확인	소지 금지	분리 통보	반환· 폐기	작성자 확	확인자	교의
번호	일시	장소	학생	교원	물품	일시 및 방법	결과	담당 교사	학교의 장	
23-1	2023. 9, 15. 16:30	상담실	○○○ (○-○반)	000	에쎄 1갑	9.15 14:00 어머니와 유선 통화	9. 15. 폐기처리 (어머니요 청)			
23-2				○○○ (○○○ 지원)		10.10. 14:00 아버지께 서면통보				
23-3										

[참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제12조제9항 및 경남 학생생활규정 제30조제2항에 따라 소지 금지 물품을 분리 보관한 경우 일지에 기록함

[서식 7] 소지금지 물품 분리보관 통지서

소지금지 물품 분리보관 통지서

학생 성명	홍길동	학 번 2학년 3반				
분리보관 근거	본교 생활규정 제36 -학생 및 교직원의 (0조제1항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분리보관 물품	라이터					
분리보관 일시 2023년 11월 16일 15시						
분리보관 기간	2023년 11월 16일	~ 11월 19일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제12조제9항 및 본교 생활규정 제○○조제○호 에 따라, 위와 같은 경위로 해당 물품을 분리보관하였음을 통보합니다.
- 분리보관 물품 중 타인과 자신의 안전에 해가 되거나 학생에게 금지된 물건 등은 보호자가 직접 물품을 회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보호자가 원할 경우, 해당 물건을 반환하지 않고 폐기할 수 있습니다.
- 분리보관 기간(3일) 종료 후 다시 3일이 지난 후에는 물품을 자동으로 폐기하며, 해당 기간 이후 학교는 물건 폐기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202 년 월 일

○○중・고등학교장 (직인)

Ⅲ 학생선도규정

1. 학생선도규정 표준안

※ 본 개정 표준안은 참고 자료이며, 표준안에 대한 의의, 관련 법령, 기본 방침 및 유의 사항 등을 참고하여 각 학교의 학생, 보호자(학부모 등), 교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교의 특성에 따라 보충 또 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학교 학생선도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학생의 선도 사항을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학생이 올바른 행동과 바람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 이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에 따라 학생선도 (징계)에 관한 세부 사항들을 규정한다.

제4조(원칙) ① 학생선도는 문제 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사전 예방 교육과 치유 에 중점을 둔다.

- ② 학생선도는 학생의 잘못된 행위의 경중과 본인 및 타인의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고 헤아려 보편타당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 ③ 학생을 선도할 때는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고 가급적 징계의 종류는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잘못을 뉘우치고 마음을 바르게고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장 선도위원회

제5조(구성 및 역할) ① 학생의 선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선도위원회에는 학생선도위원회와 학생선도재심의위원회를 둔다.

- ② 학생선도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학생선도위원회는 위원장(교감) 1인을 포함하여 생활교육담당부장, 생활교육담당교사 등 5~9인으로 구성한다.
 - 2. 학생선도위원회는 선도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에 대하여 심의 · 의결한다.
- 3. 학생선도위원회는 반드시 해당 학생 및 보호자(학부모 등)의 의견을 청취 한 뒤 심의·의결한다.
- 4. 학생선도위원회는 심사에 필요 시 해당 학생의 소속 학급 담임교사, 상담교사 또는 참고인(전문가 등) 등을 출석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 진술로 대신할 수 있다.
- ③ 학생선도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학생선도재심의위원회는 위원장(학교운영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학교운영 위원회 위원, 교감, 생활교육담당부장, 생활교육담당교사 등 5~9인으로 구성한다.
- 2. 학생선도재심의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학부모 등), 학교장의 재심의 요 청이 있는 사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 3. 학생선도재심의위원회는 반드시 해당 학생 및 보호자(학부모 등)의 의견을 청취한 뒤 재심의·의결한다.
- 4. 학생선도재심의위원회는 심사에 필요 시 해당 학생의 소속 학급 담임교사, 상담교사 또는 참고인(전문가 등) 등을 출석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합당한 사유 가 있는 경우 서면 진술로 대신할 수 있다.
- 5. 학생선도재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의결한 조치는 기존의 조치보다 가중될 수 없다.
- ④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 전반을 총괄하며, 사무는 학생생활교육 담당부서에서 주관한다.
- **제6조(학생선도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생활교육 담당 부서로부터 학생징계 사안의 보고를 받은 후, 14일 이내 위원회를 소집한다.
- ② 위원회 개최 전 학생 또는 보호자(학부모 등)에게 위원회 개최, 의견진술(소명)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등에 관한 내용을 사전에 통지한다.
- ③ 위원 중심의 사안 또는 관련 학생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으며,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한다.

- ④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학부모)에게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와 방법(서면 진술 등)을 제공한다.
- ⑥ 위원회 심의 내용은 회의록으로 기록하여 관리한다.
- ⑦ 학교장은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징계 등 조치를 한다.
- ⑧ 위원회 위원 및 간사는 심의 내용 및 결과, 그 밖에 사안 또는 대상 학생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 ⑨ 위원회 심의 대상자, 심의 내용 및 결과 등은 공고하지 않는다.

제3장 징계

제7조(적용 및 종류) 학생에 대한 징계는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시행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학교의장은 징계를 할 때는 학생의 보호자(학부모 등)와 학생의 교육에 관하여 상담을할 수 있으며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학교내의 봉사
- 2. 사회봉사
- 3. 특별교육이수
- 4. 출석정지

[고등학교] 5. 퇴학(의무교육과정 제외)

제8조(징계의 방법) ① 학교내의 봉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과 범위에서 시행한다.

- 1. 15시간 이내로 하며, 봉사의 취지 및 내용에 부합하는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 2. '학교내의 봉사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 3. 창의적 체험활동의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 '학교내의 봉사 프로그램'의 예) 학교내 환경 정화, 교내 도서관 도서 정비, 교재 및 교구 정리, 상담지도 등 상담 지도는 해당 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Wee클래스 상담교사, 담임, 업무담당교사 등으로 구성 가능합니다.
- ② 사회봉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과 범위에서 시행한다.
 - 1. 30시간 이내로 하며, 상담과 봉사활동 등을 수행해야 한다.

- 2. 사회봉사 기관은 학교장이 지명한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실행하며 위탁 기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단, 학생선도위원회 결정에 따라 학교 내에서 사회봉사를 할 수도 있다.
 - 가.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기관
 - 나.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 상담전문가·청소년교육사 등을 두고 있거나 전문상담교육을 하고 있는 기관

* '사회봉사'의 예) 도서 업무 보조, 식사보조, 우편물 분류, 환경 정화, 기관(시설) 특성을 반영한 상담 등 - '가'목에 해당하는 기관은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기관으로 직속기관 도서관 등도 가능합니다. 사회 봉사로 인정 불가한 기관은 영리 목적, 종교·정치 목적, 소속 회원의 이익 목적,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기관 및 단체입니다.

- 3. 학생은 사회봉사 조치 이행 확인을 위한 이수증 또는 확인서를 제출하여 야 하며, 이수증 등을 제출하지 않을 시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 4. 창의적 체험활동의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③ 특별교육이수는 다음 각 호의 내용과 범위에서 시행한다.
 - 1. 30시간 이내로 하며, 특별교육이수기관과 협의하여 실시 일수를 정한다.
 - 2. 특별교육이수는 교육감이 지정 또는 위탁한 기관에서 실시한다.
 - 3.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 치료교육,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교육을 이수한다.
 - 4. 부적응 학생 교육을 위한 대안학교에서 단기간의 교육을 이수한다.
 - 5. 상담자원 봉사자·사회봉사자 등과 연계하여 1대1로 상담치료교육을 이수한다.
 - 6. 기타 위의 각 호에 준하는 교육을 이수한다.
 - 7. 학생은 특별교육이수 조치 이행 확인을 위한 이수증 또는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수증 등을 제출하지 않을 시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 ④ 출석정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과 범위에서 시행한다.
 - 1. 출석정지는 학생선도규정 등에 의해 시행하되,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 2.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상황란에 '미인정결석' 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한다.
- [중학교] 3. 출석정지 기간이 30일이 경과한 이후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경우 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해 대안교육 위탁 등 특별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고등학교] 3. 출석정지 기간이 30일이 경과한 이후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경우

다음 단계의 징계를 적용할 수 있다.

[고등학교] ⑤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 1.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학생
- 2.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이 잦은 학생
- 3. 기타 학칙을 위반한 학생

[고등학교] ⑥ 퇴학처분 전 조치는 다음 각 호의 내용과 범위에서 시행한다.

- 1. 학교장은 퇴학처분을 내리기 전에 반성 및 행동개선을 위하여 10일 이내 의(숙려 기간 2주)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초·중등교육법 시행 령」 제31조제6항)
- 2. 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한 때에는 당해 학생 및 보호자(학부모 등)와 진 로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 훈 련기관 등을 알선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징계의 사유와 기준) ①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공동체(학생, 보호자(학부모 등), 교직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 '학교폭력'관련 사항 및 '교육활동 침해행위'관련 사항의 경우「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및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별도 처리하여야 하며 학생선도위원회에서 징계처리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 2. 교원의 학생생활제규정에 의한 정당한 지도 및 징계 조치에 따른 교육을 불이 행한 행위
- ※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2023.3.23.시행)에 따라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포함되었습니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라 함은 학생생활제규정에 따른 지도라 할 수 있습니다.
- *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 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 3. 교원 외 학생 교육을 담당하는 강사 등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침해한 행위
- 4. 시험문제를 절취 · 유출 및 대리시험에 관여한 행위
- 5. 평가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했거나 방조한 사실이 명확한 행위
- 6. 합리적 이유 없이 수업이나 시험을 거부한 행위
- 7. 미인정결석을 월 3일 이상 한 행위
- 8. 미인정지각, 미인정조퇴, 미인정결과를 월 3회 이상 한 행위

- 9. 공문서나 학교장이 인정하는 문서를 위조한 행위(진단서, 성적표, 현장체험학습 관련서류, 봉사활동 확인서 등)
- 10.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동조한 행위
- 11. 남에게 고의로 피해를 준 행위
- 12. 학교의 공공기물 및 차량을 고의로 훼손 및 파손한 행위
- 13. 공공시설물, 집기류 등을 허락 없이 반출 및 고의로 파손한 행위
- 14.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어 징계할 필요가 있는 행위
- 15. 도박(인터넷도박 포함), 인터넷 거래 사기, 불법 상행위를 한 행위
- 16. 온라인 공간에서 정보통신윤리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행위
- 17. 학교 및 온라인 공간에서 음란물을 소지, 탐독, 배포한 행위
- 18. 불법 집회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된 행위
- 19. 흡연 또는 음주를 상습적으로 한 행위
- 20.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약물'을 소지 또는 복용·흡입하였거나 타인에게 사용하도록 권유·교사·강요한 행위
- 21.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물건'을 소지하거나 타인에게 소지하도록 권유·교사·강요한 행위
- 22.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출 입·고용금지업소'를 출입하였거나 타인에게 출입하도록 권유·교사·강 요한 행위
- 23. 흉기를 휴대한 행위
- 24. 징계 조치에 불응하는 행위
- 25. 징계 기간 중 위 각 호를 재차 위반한 행위
- ② 위 각 호에 따른 징계는 단계적 절차에 따라 적용한다.

제10조(학생선도위원회의 심의절차) ① 위원회는 생활교육담당부장, 해당 학년 부장, 생활교육 담당교사, 담임교사 등으로부터 사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청 취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가 개최되기 전, 학생과 보호자(학부모 등)에게 위원회 개최의 일시 및 장소, 개최 이유, 의견 진술 기회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 ③ 위원회는 학생과 보호자(학부모 등)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보장한다.
- ④ 학생 및 보호자(학부모 등)가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⑤ 위원회 심의 · 의결 절차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 1. 개회
 - 2. 간사의 사안 설명
 - 3. 담당교사 등의 사안 설명 및 위원 질의응답
 - 4. 학생 또는 보호자(학부모 등) 및 법정대리인의 의견 진술 및 위원 질의응답
 - 5. 담임교사 또는 기타 참고인의 의견 청취 및 위원 질의응답
 - 6. 징계 조치 등 심의 · 의결
- ⑥ 학교장은 위원회 심의 · 의결에 따라 조치한다.

제11조(조치 결과 통지) ① 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학부모 등)에게 징계조치 결과를 징계의결일로부터 7일 이내 서면으로 통지한다.

- ② 징계 조치 결과의 통지 시 포함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징계 대상(학생)의 성명 및 소속
 - 2. 징계 조치 내용
 - 3. 징계 조치 사유 및 위반 규정
- 4. 재심의 신청, 재심청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 불복방법과 각 신청 및 청구 기간
 - 5. 징계기간 중 유의 사항
 - 6. 징계 조치 기관명 및 주소
- ③ 학교장은 징계 대상 학생, 징계 내용 및 결과 등을 공고하지 않는다.

제12조(재심의 신청) ① 징계 조치 결정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학부모 등)는 징계 조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재심의 신청은 1회에 한하여 인정한다.
- ③ 학교장은 학생 및 그 보호자(학부모 등)가 재심의를 신청하면, 학생선도재심의위원회의 재심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징계 조치를 유보한다.

제13조(재심의 절차) ① 학교장은 재심의 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공

휴일, 휴업일 제외)에 재심의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단, 재심의 거부 시에는 반드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② 재심의 사안은 학생선도재심의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하며 재심의 절차는 제 10조 학생선도위원회의 심의절차와 같다.
- ③ 재심의 결과는 원래의 조치보다 가중될 수 없다.

[고등학교] 제14조(퇴학처분에 대한 징계 재심 청구) ① 학교 내 선도위원회의 징계 처분 중 퇴학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보호자(학부모 등)는 퇴학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초·중등교육법」제18조의2(재심청구),「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31조의2(퇴학 조치된 자의 재심청구 등)에 따라 경상남도교육청에 설치된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로 재심을 청구할 수 할 수 있습니다.

- ② 학생 또는 보호자(학부모 등)가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포함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청구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 2. 피청구인
 - 3. 퇴학 조치가 있음을 안 날
 - 4. 청구의 취지 및 이유
- ③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청구사항을 지정 서식에 작성하여 관련 자료와 함께 담당 부서를 방문하여 접수한다.

제15조(기록 관리) ① 학생선도위원회 및 학생선도재심의위원회 회의록은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 ② 각 위원회 회의록은 해당 학년도 종료 시 편철하여 문서고에 이관한다.
- ③ 각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징계 조치를 받은 학생 및 그보호자(학부모 등)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했을 때는 위원 및 관련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다.

제16조(학습권 보장)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행사(체험학습·수학여행 등) 및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행사 및 평가 기간은 징계 기간에서 제외한다.

제17조(징계의 가중) 징계 중의 학생이 징계 사안이 되는 행위를 하거나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차 징계 심의를 요구하여 징계를 가중할 수 있다.

제18조(사후 조치) ① 담임교사와 상담교사는 징계가 종료된 학생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돕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한다.

[고등학교] ② 학교의 장은 퇴학 처분을 받은 학생에 대해서는 대안교육, 재입학 및 편입학, 검정고시, 방송통신중·고등학교 등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기회를 안내해야 한다.

제4장 규정의 개정

제19조(개정 절차) 본 규정의 개정 절차는 학생생활제(齊)규정의 개정절차를 따른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학생선도규정 Q&A

- Q1. 기존 선도위원회, 학생징계위원회 등 기구의 명칭을 모두 반드시 학생 선도위원회로 변경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 ==> A1. 아닙니다. 학생선도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상의 징계를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그러나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기구는 아니기 때문에 명칭을 반드시 변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Q2. 학생에게 학교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등의 징계 조치를 할때, 시간과 일수에 상한은 없는 것인가요?
- ==> A2.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상한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학생선도규정으로서 해당 징계 조치의 시간과 일수의 상한을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타당합니다.

그리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31조에서는 각 징계의 종류를 학교 내의 봉사 -> 사회봉사 -> 특별교육이수 -> 출석정지 -> 퇴학 순으로 규정 하고 있고, 이를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징계 조치의 상한 기준을 정할 때에도 각 징계 조치의 내용과 성격에 맞게 규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 내의 봉사 시간과 일수 상한을 길게 규정하여 사실상 특별교육이수 조치나 출석정지 조치보다 과중한결과가 발생하게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Q3. 학교내의 봉사 및 사회봉사는 학생생활기록부에 봉사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 ==> A3. 안 됩니다. 징계에 의한 봉사활동은 봉사활동 시간(학교생활기록 부 내의 봉사 활동 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4. 학생 및 보호자(학부모 등)에게 학생선도위원회 개최 안내를 하였으나, 학생이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생 및 보호자(학부모 등)가 출 석하지 않으면 개최할 수 없는 것인가요?

==> A4. 학생 및 보호자(학부모 등)가 출석하지 않아도 개최할 수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2항에서는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려면 그 학생이나 보호자(학부모 등)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는 사안을 조사하는 과정과 학생선도위원회 개최 시에 학생과 보호자(학부모 등)에게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 의견 진술은 직접 출석하여 구두로 진술하는 것과 서면으로 진술하는 것 모두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학교의 학생 및 보호자(학부모 등)에 대한 의견 진술 기회 보장과 의견 진술 방법 제공에도 불구하고,학생 및 보호자(학부모 등)가 이를 거부하고 포기할 때는 학교는 학생 및보호자(학부모 등)가 이를 거부하고 포기할 때는 학교는 학생 및보호자(학부모 등)가 진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학생선도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처럼 처리할 때도 추가로 기한을 정하여 의견진술 및 제출을 요청하고, 위원회 불출석 또는 서면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된다는 점에 대한 사전 안내가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합니다.

Q5. 학생과 그 보호자(학부모 등)에게 학생선도위원회 결정통지를 하려고 하는데 전화도 받지 않고 SNS 등을 통해 보내도 보지 않고 답변도 없습니다. 학생도 학교에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 전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문자 등으로 결정을 통지하여도 될까요?

==> A5. 안 됩니다. 행정청의 처분은 문서로 하여야 합니다.

문자의 경우 수신 확인이 어려워 상대방에게 도달되었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편(내용증명) 송달 등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수령했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통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Q6. 11월경에 학생선도위원회 개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개최 사유는 해당 학생의 흡연 및 절도이며, 흡연은 9월, 절도는 10월에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학생선도 위원회에서 흡연은 교내봉사, 절도는 특별교육이수로 조치를 나누어 해도 될까요?
- ==> A6. 타당하지 않습니다. 행위를 종합하여 하나의 징계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9월의 흡연에 대하여 즉시 학생선도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치하고, 10월의 절도에 대하여도 즉시 학생선도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치하는 것은 물론 가능합니다.

그러나 학교가 11월경에 이르러서야 9월의 흡연과 10월의 절도를 인지 하였거나 학생선도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는 교육적 판단을 하였다면 각 행위를 종합하여 하나의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Q7. 특별교육 이수 조치를 받은 학생이 해당 조치를 제대로 이수하지 아니한 사정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경우, 학생이 조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점을 별도의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인지요?
- ==> A7.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징계 처분 미이수 또는 불성실한 이행"이 학생선도규정상 징계 사유로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Q8. 학생생활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유로 징계 조치를 할 수 있나요?

==> A8. 타당하지 않습니다. 학생선도규정을 통해 학생은 위반 사항과 조치기준을 사전에 숙지하여 예방할 수 있고, 학교는 학생징계의 자의적 행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선도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학생이 미처 알지 못하였거나 알 수 없었던 사유로 학생을 징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Q9. 학생선도위원회에서 두 가지 이상의 징계를 동시에 내릴 수 있나요?

==> A9. 타당하지 않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라 징계는 병과할 수 없으며, 한 건의 사안에 대해 1~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만 부과할 수 있습니다.

- Q10. 학생선도위원회 심의 결과 퇴학 처분이 의결되어 학교장에게 요청하고자 합니다. 이때 가정학습 기간을 반드시 부과하여야 하나요?
- ==> A10. 반드시 부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서는 "학교의 장은 퇴학 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기간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생선도위원회는 퇴학 처분을 의결하면서, 가정학습 기간 부과 여부와 기간을 함께 심의하여야 합니다.

Q11. 퇴학처분 전 이루어지는 가정학습 기간은 며칠을 부과하여야 하나요?

==> A11. 10일 이내로 부과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에 관하여 법령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퇴학 처분 전 이루어지는 가정학습 기간은 출석정지 처분에 따른 처리결과와 마찬가지로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퇴학 처분 전 이루어지는 가정학습 기간도 출석정지 처분의 상한 기준에 따라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부과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Q12. 재심의 신청을 학생 또는 그 보호자(학부모 등)뿐만 아니라 학교장도 직접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학교들이 있는데, 학교장의 재심 의 요청 사항을 삭제해야 하는 것인가요?
- ==> A12. 아닙니다. 학교 단위 재심의는 요청 주체가 누구인지 간에 결과 적으로 학생선도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한 불복방법이기 때문에, 학생의 권 리를 확대하고 보장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이에 관한 충분한 기회를 부여 하고 이를 위한 절차 마련은 가능합니다.

013. 재심 청구와 재심의 신청은 어떻게 다른 것인가요?

==> A13. 재심 청구와 재심의 신청 모두 「초·중등교육법」상 징계에 대한 불복방법이라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그러나 위 두 개의 절차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재심청구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2에 따라, 「초·중등교육법」상 징계 처분 중 퇴학 조치를 받은 학생 또는 보호자(학부모 등)가시·도징계조정위원회에 청구하는 불복방법입니다.

반면 재심의 신청은 재심청구와 달리 법정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학교 자체적으로 학생 또는 보호자(학부모 등)의 이의제기가 있을 시 이에 관하 여 '재심의'를 하는 것으로 학생선도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불복방법 입니다.

즉 재심 청구는 법정 사항으로 퇴학 조치에 관해서만 청구할 수 있으며 시·도징계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재심의 신청은 학생선도규정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모든 징계 조치에 관하여 청구할 수 있고, 이는 학교에서 판단하여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Q14. 학생이 학교 밖에서 절도 및 도박 등의 사항으로 경찰서에서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학교에서 학생선도위원회를 열어 징계처분을 내릴 경우 이중 처벌이 되는 것은 아닌가요?

==> A14. 이중 처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학생이 절도 및 도박 등으로 경찰서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것과 별개로 학교에서는 학교생활규정 위반으로 징계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단, 학교생활규정에 이러한 사유로 징계를 내릴 수 있다는 규정이 명확히 존재하여야 합니다.

3. 학생선도규정 참고 사항

가. 학생선도규정의 개념 및 의의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서는 "학교의 장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는 "학생 포상, 징계,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 방법, 학업 중단예방 및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초·중등교육법」상의 징계와 관련한 사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징계 절차나 기준, 사안 조사 등 구체적 사항까지 규정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에 관하여는 학생선도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나. 학생선도규정의 기본 방침

- 1) 학생징계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2) 학교장은 학생을 지도하는 경우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3) 징계 사유 및 경위 등을 고려하고, 사안의 경중, 징계의 종류에 비례하여 징계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4) 징계 사유와 기준 등은 학생선도규정으로 정하고, 그 내용을 준수한다.
- 5) 학생을 징계하려면 그 학생이나 보호자(학부모 등)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와 방법을 제공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 6) 「초·중등교육법」상의 징계 심의 등을 위해 각 학교는 "학생선도위 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 7) 학교는 학생선도위원회 개최 전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징계사유에 대해 사전통지를 해야 한다.
 - 8) 학생선도위원회 심의 대상자, 심의 내용 및 결과 등은 공고하지 아니한다.

다. 선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구성

- 「초·중등교육법」 제18조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 학생 징계 사안 등을 심의하기 위해 각 단위 학교에는 학생선도위원회와 학생선도재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 각 위원회는 위원장, 위원으로 구성한다.
- 학생선도위원회는 위원장(교감) 1인을 포함하여 생활교육담당부장, 생활교육담당교사 등 5~9인으로 구성한다.
- 학생선도재심의위원회는 위원장(학교운영위원장) 1인을 포함한 학교운 영위원과 교감, 생활교육담당부장, 생활교육담당교사 등 5~9인으로 구성한다.
- 필요할 시 각 학교의 실정에 맞게 전문가 위원, 학부모 위원 등을 위촉 할 수 있다.
 - ㅇ 각 위원회는 사무처리 등을 담당하는 간사를 정하며, 간사는 교원으로 정한다.

2) 운영

- 각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각 위원회의 심의 대상 사안 또는 대상 학생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의에 참여할 수 없으며,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한다.
- 각 위원회는 위원회에 출석한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와 방법을 제공한다.
 - ㅇ 각 위원회의 심의 내용은 회의록으로 기록하여 관리한다.
- 각 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는 심의 내용 및 결과, 그 밖에 사안 또는 대 상 학생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사안 처리 절차 및 확인

9. 712 719		
절차	내용	관련 서식
사안 발생 및 사안 조사	 사안 발생 및 사안 조사: 위반 행위 발생 및 경중에 따라 사안 조사 여부 판단 사실 확인서 작성: 학생 의견서 작성 관련 학생 조사 및 객관적인 증거자료 확보: 목격자 진술서 작성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수업시간 이외의 시간에 조사) 정확한 사실 관계를 통한 조사보고서 작성 	[서식 3-①] [서식 3-②] [서식 3-③]
사안 보고 및 보호자(학부모 등) 상담	 학교장에 사안 보고: 학생 사안 조사 보고서 보호자(학부모 등) 연락 또는 내교 통지 보호자(학부모 등) 상담기록 유지: 일자 및 시간, 내용 등 	[서식 3-④]
선도위원회 개최 여부 결정	 선도위원회 개최 여부 결정(전자문서 내부 결재) 단, 전결위임규정에 의해 담당부서에 위임된 사항은 생활교육 담당부서에서 결재를 통해 조치 시행 관련 학생 자료 보강(지도 노력 등 추가 자료 보충) 	[서식 3-⑤]
선도위원회 개최에 대한 서면 통지	 해당 학생 및 보호자(학부모 등)에게 출석 서면 통지: 학생 선도위원회 출석 및 의견 제출 요청서 「초·중등교육법」제18조에 따라 의견진술의 기회가 있음을 명기(반드시 우편 등기 발송) 선도위원회 위원 대상 회의 개최 통지: 참석요청서 발송 	[서식 3-⑥] [서식 3-⑦]
D	• 선도취현외 취현 대성 외의 개최 중시·점역표정시 필증	[시작 2-@]
선도위원회 개최	 개회 사안보고: 사안보고, 관련 법률 및 규정 안내(제적, 기피, 회피, 주의사항 등) 당사자(학생) 및 보호자(학부모 등) 진술 및 질의·응답: 진술기회는 반드시 부여함 당사자(학생) 및 보호자(학부모 등) 최후 진술 참고인 의견 청취: 필요 시 담임교사, 상담교사 등의 의견 진술 징계 심의: 양정기준 제시, 동일 사안 심의결과 고지, 사안 경중과 당사자 자세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행위 사실 인정 여부, 규정 위반 여부, 징계 필요 여부, 징계 조치 등확인) 의결: 심의 사항 확인(조치결과, 시행방법 및 일정 등) 징계유형, 시행방법, 기간, 장소 등: 회의록에 명시 폐회 	[서식 3-⑩] [서식 3-⑪] [서식 3-⑪]
학교장 결재 및 조치결과 통보	 선도위원회 결과 및 조치이행계획 내부결재 보호자(학부모 등)가 회의 공개를 원할 경우 실명 삭제 후회의록 공개: 단, 목격자 진술서 등 그 외의 서류는 비공개 보호자(학부모 등)에게 조치 결과 통보: 반드시 서면 통지 통지 시 재심의(재심) 청구 반드시 안내: 통지 시 명기사항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징계 시행 '공고문' 부착 금지 	[서식 3-⑫] [서식 3-⑬] [서식 3-⑭] [서식3-⑮)⑥
□ 조치 시행 및 추수지도	 선도 조치 시행: 필요 시 징계 대장 기록 및 관리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적 노력(상담 등) 	[서식 3-⑰]

※(예시) 학생선도규정 사안처리 점검표

아래 체크리스트는 업무담당자가 학생선도규정을 위반한 학생에 관한 징계 추진 시 확인할 사항 점검표입니다. 참고하셔서 단위학교 및 사안의 특성 등에 맞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학생선도규정 사안처리 점검표

		23-〇차				
단 계	확인 사항	확인 항목	확인	결과		서식
	사실 확인	사건 정황 및 경위 파악	확인자:(확인일:(<i>2</i>			
	학생 지도	학생 면담 및 생활교육지도	지도자:(지도일:()	
사 안	사안 접수	신고 내용 '사안접수대장' 기록	보고자:(보고일:()	[서식 3-①] 사안접수대장
발 생		학교의 장 보고	보고자:(보고일:()	
	사안 보고	관련 교원, 담임교사, 관련자 통지	통지자:(통지일:()	
		관련 학생 및 보호자 통지	통지자:(통지일:()	
	관련자 조사	사실 확인서 작성	확인자:(확인일:()	[서식 3-②,③] 사실확인서
사 안	입증 자료 수집	물증 및 증거 수집	여()		부	
조 사	조사보고서 작성	사안조사보고서 작성	작성자:(보고일:() <i>)</i>	[서식 3-④] 사안조사보고서
•	조사 결과 보고	학교의 장 보고	보고자:(보고일:() <i>)</i>	
상	상정 여부 협의	선도위원회 안건 상정 여부 결정	상정		상정	[서식 3-⑤] 상정여부협의록
정	00 17 67	(미상정 시)징계 이외 지도방법	지도방안()	
여 부	학교의 장 재가	학교장의 상정 여부 결정(내부결재)	상정		l상정 	
· 결 정	심의 결과 통지	관련 교원, 담임교사, 관련자 통지	통지자:(통지일:() <i>)</i>	
Ö	ㅁㅋ ᇃ씩 중시	관련 학생 및 보호자 통지	통지자:(통지일:() <i>)</i>	

		23-〇차					
단 계	확인 사항	확인 항목	확인	결고	ŀ		서식
	계획수립	위원, 관련자, 학생, 보호자 참여 가능 일시 및 장소 선정 선도위원회 개최 내부 결재 (위원 출석 통지)	협의자:(협의일:(기안자:(결재일:())))	[서식 3-®] 참석요청서
선 도	개최 안내·통지	관련 교원, 담임교사, 관련자 통지	통지자:(통지일:(통지자:()	<i>)</i>	[서식 3-⑥,⑦]
위 원	징계 심의	관련 학생 및 보호자 서면 통지 	통지일:(징계		없음)	출석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서식 3-⑩]
회 개 *I	학교의 장 재가	학교의 장 징계 최종 결정	재가		불허		심의의결서 [서식 3-⑪] 회의록
최		관련 교원, 담임교사, 관련자 통지	통지자:(통지일:(통지자:())	[서식 3-@]
	심의 결과 통지	관련 학생 및 보호자 서면 통지 불복절차 통지 및 안내	통지일:(통지자:())	조치결과통지서 [서식3-⑮,⑯]
	이행 계획 수립	징계조치 이행 계획 수립	통지일:(수립		미수립	<i>)</i> !	재심의, 재심 [서식 3-⑫] 이행계획서
		학습결손 대비책 마련	여(부 		
		학교의 장 보고	보고자:(보고일:(통지자:())	
징 계	이행 계획 통지	관련 교원, 담임교사, 관련자 통지	통지일:(통지자:(, 	<i>)</i>	[서식 3-⑫]
시 행	징계 조치 시행	관련 학생 및 보호자 서면 통지 	통지일:(이행		미이항	<i>)</i>	이행계획서 [서식 3-⑪]
	6계 포시 시행	학교의 장 보고	보고자:())	징계대장
	징계 이행 보고	관련 교원, 담임교사, 관련자 통지	보고일:(통지자:(통지일:()))	
	불복	징계조치 불복 여부	수용		불복		

1) 위반 행위 발생 및 경중 판단

- 학생의 학생선도규정 위반 행위를 발견 또는 인지하였을 때, 최초 확인 교사가 상황을 관찰하고, 가단한 문답 등으로 사실을 확인한다.
 - 위반의 정도가 가벼울 경우 현장 지도를 하거나, 담임교사에게 인계한다.
-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학생생활교육 담당 부서 교 사에게 인계한다.

2) 사안 조사 여부 판단

- 학생생활교육 담당 부서 교사는 대상 학생에 대해 면담을 하여, 학생선 도위원회 심의를 위한 조사 진행 여부를 판단한다.
- 위반의 정도가 가볍거나 대상 학생이 충분히 반성하고 있거나 재발의 염려가 없다고 판단할 때, 지도 또는 훈계로 종결할 수 있다.
- ○. 위 '2)'에 해당하지 않아 학생선도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학생 생활교육 담당 부서는 조사한다.

3) 사안 조사

- 사안이 학생선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징계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안내한다.
- 징계를 목적으로 한 사안 조사 대상 학생(이하 '대상 학생'으로 한 다)에 대한 면담 조사를 한다.
 - 대상 학생의 학생 확인서와 보호자의 보호자 의견서 작성을 요청한다.
 - 목격 학생 또는 교사가 있는 경우, 이들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한다.
 -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대상 학생과 관련한 정보를 누설하지 아니한다.
 -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면담 조사는 2인 이상의 교사가 참여하되, 대상

학생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 ○. 사안 조사는 수업 시간이 아닌 시간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 수업 시간에 사안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고 다른 방법 으로는 사실을 확인할 방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 수업 시간이라 하더라도 사안 조사를 하되, 추후 보충 수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 강압 또는 회유 등 학생의 인권이 침해될 수 있는 조사는 금지된다.
- 조사는 공개된 장소에서 실시하며 학생의견서는 학생의 확인 서명을 받도록 한다.
- 학생 생활교육 담당 부서는 조사 내용 및 결과를 정리하여 학생선도위 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4) 학생선도위원회 심의

- 이 위원회 심의 전 준비 사항
- 위원장은 학생 생활교육 담당 부서로부터 사안 조사 내용 및 결과를 보고받은 후, 위원회 개최 일시 및 장소 등을 정한다.
- 위원회 개최 시 학생 및 그 보호자(학부모 등)에게 아래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 (1) 위원회 개최 일시, 장소, 개최 이유
 - (2) 의견 진술권 및 대리인 선임권 보장
 - (3) 보호자가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서면으로 의견 제출할 수 있음
- 이 위원회 심의
- 간사의 사안 및 조사 내용 설명
- 위원 제척·기피 사유 안내 및 확인

- 담임 교사 등 참고인 대상 질의응답 시행
- 대상 학생 및 그 보호자 대상 질의응답 시행
- 사안의 학생선도규정 위반 여부 심의 및 결정
- 학생선도규정 위반으로 판단할 시, 징계 여부와 종류 심의 및 결정
- 그 밖의 학생 지도 방법 논의 및 결정
- 위 각 결정은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위반 및 징계 여부, 징계 종류 결정 시 학생생활규정 내용 반드시 준수

5) 징계 조치

- 간사는 위원회 심의 결과를 학교장에게 보고한다.
- ㅇ 학교장은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조치한다.
- 조치 결과는 대상 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한다.
- 조치 결과 통지서에 조치 결정 내용, 결정 이유, 위반 규정, 학생 이행 사항, 보호자 협조 사항 등을 기재한다.
- 조치 결과 통지 시 재심청구, 행정심판 청구, 행정소송(단, 사립학교의 경우 민사소송) 청구, 학교 내 재심의 신청 등 불복방법 및 청구 기한을 안내한다.

6) 징계 종류 및 운영 방안

- 학교내의 봉사
- 1일 부과 시간 및 최대 부과 시간의 범위를 정하여 시행하며, 학교 내의 봉사의 취지 및 내용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정한다.
- 수업 이외의 시간에 실시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학생 또 는 보호자에게 안내 후 수업 시간에 시행할 수 있다.

- 학교는 학생의 선도 및 행동 개선, 재발 방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 창의적 체험활동의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사회봉사

- 1일 부과 시간 및 최대 부과 시간의 범위를 정하여 시행하며, 사회봉사 의 취지 및 내용과 봉사 기관의 운영 내용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정한다.
- 수업 이외의 시간에 실시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학생 또 는 보호자에게 안내 후 수업 시간에 시행할 수 있다.
- 학교 밖 행정 및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 봉사활동 인정기관에서 실시한다.
- 사회봉사 조치 이행 확인을 위한 이수증 또는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 학생생활교육 담당 부서는 사회봉사 실시 기관에 학생의 선도 및 행동 개선, 재발 방지를 위한 적절한 봉사 프로그램이 운영되는지 등을 확인한다.
- 창의적 체험활동의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특별교육 이수

- 최대 부과 시간의 범위를 정하여 시행하며, 일수는 특별교육이수 기관과 협의하여 실시한다.
- 수업 이외의 시간에 실시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안내 후 수업 시간에 시행할 수 있다.
- 교육감이 지정하거나 위탁한 기관에서 실시한다.
- 특별교육이수 조치 이행 확인을 위한 이수증 또는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 학생 생활교육 담당 부서는 특별교육이수 기관에 학생의 선도 및 행동 개선, 재발 방지를 위한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는지 등을 확인한다.

○ 출석정지

-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부과한다.
- 출석정지 기간에도 학생의 교육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및 교육 방법을 이용하거나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제공한다.

출석정지에 따른 학습결손 대책 방안(예)							
방안	내용						
과제 제시	-교과별 일정 과제를 해당 학생에게 부여						
수업 콘텐츠 제공	-수업 콘텐츠 제작 후 제공						
구합 근덴스 제공	-제작된 수업 콘텐츠 제공(EBS 등)						
	-실시간 쌍방향 원격 수업						
비대면 수업	-대면 수업 장면 실시간 송출						
	-대면 수업 녹화 후 제공						
방과후 보충학습	-방과 후 교과별 보충수업 실시						

- 출석정지 기간 중 학생 및 보호자와 상담을 진행하는 등으로 학생의 반성 및 행동개선을 지원한다.
-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상황란에 미인정결석 일수에 산 입하여 기재하고,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 퇴학

- 퇴학 처분은 아래의 상황에 해당하는 학생만 매우 엄격한 요건 아래에 서 신중히 결정하고, 아래의 상황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을 학생선도규정으로 마련한다.
 - (1)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이 잦은 경우
 - (3) 그 밖에 학생생활규정의 중대한 위반을 한 경우
-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 위원회는 심의 결과 퇴학 조치가 결정된 경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가정학습 기간을 부과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 학교의 장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퇴학 조치를 하기 전 가정학습 기 간을 부과할 수 있다.
- 학교의 장은 퇴학 처분을 한때에는 당해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징계 사유와 기준

		징계기준						
항	징계 사유	학교 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이수	출석 정지	퇴학		
1	상습적으로 미인정 지각, 미인정 조퇴, 미인정 결과를 하는 행위	0	0	0				
2	상습적으로 미인정 결석을 하는 행위		0	0	0	0		
3	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방조한 행위		0	0	0			
4	시험문제를 절취하거나 또는 유출한 행위		0	0	0	0		
5	유출(절취)된 시험문제를 이용한 학생 또는 대리시험에 관여한 행위		0	0	0	0		
6	학교에서 음란물을 소지, 탐독, 배포한 행위	0	0	0	0			
7	흡연 또는 음주를 상습적으로 하는 행위	0	0	0	0			
8	청소년 유해약물을 소지 또는 복용 등을 한 학생	0	0	0				
9	교내·외에서 남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를 한 학생	0	0	0	0			
10	학생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상습적으로 출입한 한 학생	0	0	0	0			
11	도박, 사기, 불법 상행위 등을 한 학생	0	0	0	0	0		
12	공문서나 학교장이 인정하는 문서를 위조한 행위(진단서, 성적표, 현장체험학습 관련 서류, 봉사활동 확인서 등)	0	0	0				
13	학교의 공공기물, 교내 차량을 고의로 훼손, 파손한 행위	0	0	0	0			
14	흉기를 휴대한 행위	0	0	0	0			
15	교원 외 학생 교육을 담당하는 강사 등의 정당한 교육 활 동을 침해한 행위	0	0	0	0	0		
16	징계 조치에 불응하는 행위	0	0	0				
17	징계 기간 중 위 본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0	0	0			

출처: 교육부, '2022년 학교규칙 운영 길라잡이(학생생활에 관한 사항) 제.개정 안내서'

마. 불복방법

1) 학교단위 불복절차 : 재심의

- 학생 및 그 보호자는 징계 조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학교 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 학생 및 그 보호자는 재심의 신청 시 신청서 서식에 따라 신청 사유 등을 명확히 기재한다.
- 재심의 신청은 조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1회에 한 하여 인정한다.
- 재심의 신청이 제기되면, 신청 자체 또는 재심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징계 조치를 유보한다.
- 학교의 장은 학생선도위원회 조치 결정 및 심의 내용, 학생 및 그 보호 자의 재심 신청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심의 신청이 접수된 날 로부터 5일 이내에 재심의 여부를 결정한다.
 - 재심의 신청이 인용될 시, 학생선도재심의위원회는 재심의를 한다.
- 학생선도재심의위원회는 원 조치 절차와 같이 재심의를 하며, 재심의 결과가 워조치보다 가중될 수 없다.
 - 재심의 관련한 사항은 학생선도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한다.

2) 시 · 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 재심 청구

- 징계 처분 중 퇴학 조치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대상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라 시·도 학생징계조 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청구한다.

- 재심 청구는 아래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한다.
- 청구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 피청구인
- 퇴학 조치 일자 및 퇴학 조치가 있음을 안 날
- 청구 취지 및 이유 기재

3)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 퇴학 처분에 대한 재심청구의 징계조정위원회 심사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행정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처분내용	대상	불복 절차 및 방법	담당기관
퇴학	관내 고등 학교	퇴학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3에 따른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2)	경상남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학교내의	공립	학교장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	국민권익 위원회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국립	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행정심판법 제27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음(행정소송법 20조)	경상남도교육청 정책기획과
출석정지	사립	학교장의 조치에 대하여 민사소송 을 제기할 수 있음	법원

바. 학생선도규정 주요 개정 권고 사항

◎ 징계 절차 명시를 통한 선도 타당성 및 효율성 확보

(사안설명) 학생선도위원회 및 학생선도재심의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위원회 개최 관련 안내와 의견진술(소명) 기회 보장 및 대리인 선임권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학생 및보호자가 방어권이나 항변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절차가 이행되어야 함. 또한 개인정보 자기통제권 및 정보 보호를 위해 징계 내용을 공표 및 게시해서는 안 됨

구체적이고 명확한 용어의 사용으로 학생 기본권 침해 최소화

(징계기준-기본권 침해 소지) '불미스러운, 성행이 불량하여, 문제 행동, 불량 서적, 불량 단체 및 불량 서클, 불손한 언동으로, 불건전한, 품행이 방정한 등 불명확한 용어 사용으로 자의적, 주관적 해석을 유발하여 기본권 침해우려가 있는 규정에 대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용어로 수정이 필요함

(징계기준-기준 적용의 모호함) '불건전한 이성교제로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학생', '남녀 간의 풍기문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의 내용 또는 이와 유사한 규정의 경우, 학생 지도 사유로써 '이성교제의 건전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풍기문란'등과 같은 모호한 용어에 대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용어로 수정할 것을 권고함

(징계기준-적용의 인과성 부족) '무단가출 후 물의를 야기한 학생' 및 유사 규정의 경우 가출의 원인을 고려할 때 개인의 가정사일 수 있으며, 물의 야기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징계 사유가 되기 어려우므로 관련 규정에 대해 개정을 권고함

(징계기준-적용의 과도함) '품행이 불량하여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등의 규정의 경우 진정 또는 통보만으로 학생을 징계하는 것은 기본권 및 학습권 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 권고함

(시대변화와 문화를 반영한 징계기준 마련을 통한 학생 인권 증진

(징계기준) 원동기 등의 사용에 있어 학교구성원의 합의에 의해 통학 안 전 확보 등의 사유로 등·하교 시 이용 제한은 가능하나, 오토바이 운전면

허를 취득한 학생에 대한 오토바이 운전 전면 금지 관련 규정의 경우 과 도한 사적 영역의 제한으로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음

- (징계기준) 자동차, 오토바이를 이용한 등·하교 금지 미준수 횟수에 따라 출석 정지 등의 징계는 학생 학습권 침해 소지가 있는 과도한 처분으로 판단되어 관련 규정에 대해 삭제 권고함
- (장계기준) 징계 사유가 되는 행위에 대해 자발적이지 않은 '반성문 작성'의 강요는 교육적 효과에 대해 검토가 요구되며,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 개정을 권고함. 징계의 사면 및 감면의 조건으로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부여된 학교생활규정 준수 '서약서' 제출과 같은 규정도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음

⑩ 잘못된 행위의 경중을 고려한 징계를 통한 학생 기본권 보장

- (장계기준) '형법상 유죄로 판결된 학생' 등과 같은 규정의 경우 역시 범죄의 심각성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선도위원회에서 징계종류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규정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함
- (장계기준) 흡연과 같은 정계 사유의 누적 적발에 대해 출석 정지 등으로 이어지는 장계에 대해 학생의 학습권만을 제한할 만한 정계 사유인지에 대한고려가 필요함. 청소년 흡연이 건강에 해로운 것은 분명한 사실이므로, 예방교육 및 금연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건강한 학교생활을 돕는 교육적 접근도 함께 고려해야 함을 권고함
- (징계기준)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된 학생', '경찰에 연행된 후 검찰에서 기소된 학생', '경찰 및 검찰에 연행되어 불구속된 학생' 등과 유사한 규정의 경우, 범죄의 심각성이나 중대성 등이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징계의 종류를 미리 학생선도규정에서 정해두기보다는 선도위원회에서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징계종류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을 권고함

(**) '학교폭력 및 교육활동 침해'에 따르는 사항은 학생생활규정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규정으로 개정 권고

(장계기준) 학교폭력 관련 사항 및 교육활동 침해행위 관련 사항의 경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 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름을 별표로 표기할 것을 권고함

4. 학생선도규정 관련 서식

[서식 3-①] 사안 접수 대장(※필수장부아님)

2023학년도 학생생활교육 사안접수대장

7) 1	,1 =	신고자			접수 사실 통보	작성자	확인자	
접수 번호	신고 일시	또는 신고기관	접수자	신고내용	일시 및 통보방법	담당 교사	학교장	비고
23-1	2023. 11.2. 22:00	○○○ (○○편의점)	○○○ (담임교사)	2023년 11월 2일 21시 경 홍길동 학생이 ○○ 편의점에서 친구들과 흡 연을 목적으로 담배 한 갑을 절도하였음	2023. 11. 3. 16:00(어머니			
23-2								
23-3								

[참고] 접수번호는 모든 관련 서류에 동일하게 작성 학교 여건에 따라 교감 전결 가능함 필수장부는 아니므로 단위 학교에서 장부 작성 및 비치 여부는 논의 후 결정 바람

[<mark>서식 3-②]</mark> 학생 사실 확인서

학생 사실 확인서

1	성명		하는	1 / 반		/		성별	남 / 여
			위반 행위] 인정 (여부	예) 인정,	부인		
	사안에 대한 의견		행위] 내용		예) 도박,	절도, /	시험 중 부정	행위 등
			관련	현 학생					
2			발생 일시]·기간·	횟수				
			발신	장소					
			발싱] 이유					
3	구ㅊ	세적 의견							
4	증	거 자료							
5	7	악성일	20 년	월	일	작성	당자 		(서명)

[서식 3-③] 목격자 확인서

목격자 사실 확인서

1	성명		학년 / 반 (목격자가 학생인	[경우)		당 업무 또는 <i>-</i> - 교직원/외부	I
			관련 학생				
	n -1 =1	나 가구! 귀 이	목격한 행위 내용				
2	목석인 	상황 확인	목격한 행위 발생 일시·기간·횟수				
			목격한 장소				
3	구체적	설명 및 의견					
4		작성일	20 년 월 일	작성	· 당자		(서명)

[서식 3-④] 학생 사안 조사 보고서

학생 생활교육 사안조사보고서

				선도규정제9조제1항제10호 및 제19호						
사안번호	23-1	서ㄷ그저	이바 가능	-남의 물건	<u> 음</u> 친] 행위				
기한한모	25-1	位土176	선도규정 위반 사항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에 동조한 행위					
				-흡연을 성	상습적으	로 한 형	탱위			
	소속	학년/반	성명	구년 (위반/관련	_		징계	이력		
관련자	○○학교	2학년 1반	홍길동	위빈	<u>}</u>			봉사 5시 23. 5. 1	·	
	○○학교	2학년 1반	김경남	위빈	}		ял О-	음		
	○○학교	교원	최교육	관린	4			_		
	○○경찰서	경위	박문수	목격	1			_		
	。2023년 .	11월 2일 21시	l경 홍길동 학	H생이 001	편의점이	서 친구	그 김경남	<i>士과 함</i>	께 담배	
	1갑을 절도함(사실 확인서, 증거1: 편의점 CCTV 영상)									
			· -			0]0]7	7 형자(에 축동	<i>5}</i>	
사안 개요	 편의점에서 나온 홍길동은 편의점 뒤에서 흡연을 하고 있었고 현장에 출동한 박문수경위에게 목격됨(사실 확인서) 									
	◦ 편의점 사장이 2023년 11월 2일 22시경 담임교사에게 사실을 통보하여 학교에서									
	○ 전의점 시장의 2023년 11월 2월 22시장 급입표시에게 시절을 중모하여 약표에서 인지하게 됨									
	인시아기	/ 검 								
	<i>∘ 김경남의</i>	<i>] 동조 여부: 김</i>	경남은 담배를	를 훔치는 것	<i>을 모르</i>	고 함께	'편의점	에 들어	갔으며	
쟁점 사항	담배 피는 장소에서도 흡연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박문수경위의 진술에 따르면									
	김경남은 흡연을 하고 있지 않았음									
						7	징계기준	<u> </u>		
	OLHLTI	:	지게 시으		학교		특별			
	위반자		징계 사유		내	사회 봉사	교육	출석 정지	퇴학	
					봉사		이수	0 1		
징계 기준	홍길동	흡연 또는 음주	를 상습적으로	하는 행위	0	0	0	0		
	020	교내·외에서 남: 한 학생	의 물건을 훔쳐	치는 행위를	0	0	0	0		
	김경남 교내·외에서 남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 동조한 학생			치는 행위에	0	0	0			
참고사항										
작성일	20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서식 3-⑤] 학생선도위원회 상정 여부 협의록

학생선도위원회 상정 여부 협의록(필요 시)

사안번호	23-1	선도규정	위반 사항	선도규정제9조제1항제10호 및 제19호 -남의 물건을 훔친 행위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에 동조한 행위 -흡연을 상습적으로 한 행위			
일시	2023.	11. 13.(월) 1	5:00~	장소		显	장실
참석자	교감 🔾	○○, 생활교	육부장 ○○○), 업무담당	- 교원 〇〇	○, 상담교	사 000
	소속	학년/반	성명	구분 (위반/관련			이력
관련자	OO학교	2학년 1반	홍길동	위반			봉사 5시간 23. 5. 13.)
	○○학교	2 2학년 1반 김경남 위반			어 어	0	
	○○학교	교원	최교육	관련			_
	○○경찰서	경위	박문수	목격			_
사안 개요	1갑을 절도	함(사실 확인. 서 나온 홍길. 위에게 목격된 장이 2023년 담배를 훔치는	서, 증거1: 편. 동은 편의점 두 팀(사실 확인서 11월 2일 22: - 것을 모르고	의점 CCTV 타에서 흡연 기) 시경 담임교 함께 편의점	7 영상) 을 하고 있 2사에게 사 1에 들어 갔-	있고 현장이 실을 통보하 으며 담배 피	남과 함께 담배 에 출동한 하여 학교에서 네는 장소에서도 연을 하고 있지
	성명 <u>(학반)</u>	징 계 사 유	징계 이력 여부	심각성	반성 정도	선도 가 능성	상정 여부
협의내용	김경남 (2-1)	흡연	없음	낮음	높음	높음	상정 않음
	종합의견: 취	흡연을 한 정홍	상이 없음				
협의결과	성명 (학반)	징계 사유	협의 결과		결정 사유		징계 이외 지도 방법
됩러결과	김경남 (2-1)	흡연	상정하지 않음	흡연을 한 았음	<u>·</u> 정황이 획	인되지 않	상담 1시간 (담임교사)

[서식 3-⑥] 학생선도위원회 출석 및 의견 제출 요청서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학생에 대한 학생선도 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니 관련 학생과 보호자(학부모 등)께 서는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해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 출석이 어려울 때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위 의견 진술 및 의견서 작성은 대리인을 통하여도 가능합니다.

의견서 등을 제출하지 않을 시 진술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개최 일시	2000.00.	2000.00.()00:00							
출석 장소	○○○○학교 실	: 당당실							
관련 학생	성명	홍길동	학년/반	/					
사안 발생 일시 <i>2023. 11. 2. 21시경</i>									
	사안 발생 장소	OO편	'의점 및 ○○편의점 :	<i>뒷골목</i>					
개최 사유	위반 행위 내용	○○편의점에서 담배 흡연을 하였음	<i>11갑을 절도한 뒤 〇〇</i>)편의점 뒷골목에서					
	관련 규정	선도규정제9조제1항제10호 및 제19호							
참고 사항	-기타 소명자료 취합니다관련 학생 또는 의견서를 작성하는 시의 전 서면의 것으로 간주하	추가 제출을 원하는 경우 보호자(학부모 등)께서 하여 업무담담교원에 견서 제출을 하지 않고 고 심의위원회는 진행	·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출석 시 업무담당교육 회의 당일 출석이 어려게 심의 개최 전까지 7 - 당일 출석하지 않은 됩니다. · 고등학교 교무실(20	현에서 사전 제출가능 취운 경우 첨부한 서면 제출 바랍니다. 경우 진술을 포기한					
	20 년 월 일								
		○○중·고등	-학교장						

[서식 3-⑦] 서면의견서(학생측용)

관련 학생	성명		학년/반	/
보호자(학부모 등)	성명		관련 학생과의 관계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 · 대신하고자 의견서·	학생선도위원회 회의여 를 제축한니다	에 참석할 수 없어 여	아래와 같이 서
징계 회부 사실에 대한 의견				
요구 사항				
기타 사항				

20 년 월 일

학생: (서명 또는 인)

보호자: (서명 또는 인)

0000학교 학생선도위원회 귀하

[서식 3-⑧] 학생선도위원회 참석 요청서(심의위원용)

학생선도위원회 참석 안내(심의위원용)

본 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중(고등)학교 학생선도규정」에 의거하여 제23-00차 학생선도 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참석자 : 위원 0 0 0

2. 일 시 : 년 월 일 시

3. 장 소 : ○○중(고등)학교 상담실

4. 안 건 : ○○중(고등)학교 23-00호 외 2건

년 월 일

학생선도위원회 위원장(직인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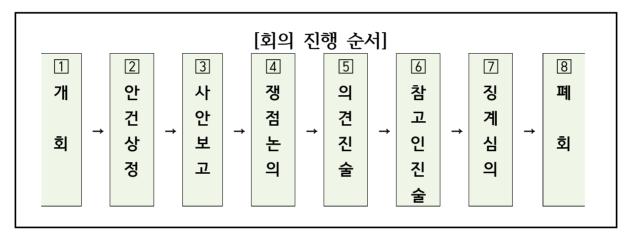
※ 참고사항

- 1. 문의 사항이 있으면 OO중(고등)학교 학생생활교육 담당 부서(전화 : 000-0000)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2. 선도위원님들께서는 비밀유지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3-⑨] 학생선도위원회 회의 진행 시나리오

※ [주의 및 참고]

- 본 시나리오는 선도위원회 회의 진행의 예시 자료입니다.
- 회의록 작성은 시나리오와 구별되며, 회의의 발언 요지만 기록해도 무방합니다.
- 학생과 보호자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기 전에 선도위원회 참석위원을 대상으로 사안개요 설명 및 진행 상황 등을 보고하여 사안에 대한 정확한 인지 후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 회

절차	세부 진행 발언	비고
정족수 확인 개회 알림	(위원장) 간사는 성원을 보고해주세요 (간 사) 재적위원 00명 중 00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본교 선도규정 제○조제○항에 의거 성원이 되었으므로 20 ○○학년도 제0차 학생선도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 다.	재적 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하되 회의 종료 시까지 성원 유지
위원장 인사	(위원장)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제2항에 의거하여 00학교 학생 징계에 관한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소집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회의 운영 목적과 규정에 의거 충분히 협의하셔서, 법률 제정 취지에 부합하는 학생 선도·교육을 위한 결정을 내려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2

안 건 상 정

절차	세부 진행 발언	비고
주의사항 전달	(위원장) 본격적인 진행에 앞서 선도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위해 몇 가지 말씀을 전달합니다. 첫째, 선도위원회는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적인 선도를 위한 목적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둘째, 위원님들은 사안의 본질과 핵심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교 학생선도규정 제○○조 제○항에 의거 선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선도위원회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대상 학생 및 관련 학생에 관한 정보, 심의 내용 및 결과, 그 밖의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는 비밀누설 금지의무가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상정	(위원장) 오늘 심의할 안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안번호 23-00, ○학년○반 A학생에 관한 징계 심의안을 본교 23-○차 학생선도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합니다.	
제척, 기피, 회피 안내 (필요시)	 (위원장) 안건 심의에 앞서 위원의 제척, 회피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간사는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사유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간 사) 본교 선도규정 제○○조제○항에 의거 제척, 기피, 회피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학교 선도규정 제○○조제○항 -위원 중심의 사안 또는 관련 학생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으며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한다. ▶ 심의에서 제척되며, 학생 및 보호자는 위원이 불공정한 결정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학생선도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위원이 제척 및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사안의 심사와 결정에서 회피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심의할 사안과 관련하여 제척 사유에 해당하시거나 회피하실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설명하기어려우므로위원자에해당하는위원이있는지확인

절차	세부 진행 발언	비고
	제척·기피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회피 신청이 없는 경우	
제척,	(위 원) 없습니다.	
기피,	(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심의할 안건과 관련하여 제척·기피	
회피	사유에 해당하거나 회피하실 위원분이 없는 것으로 확인해	
(해당없음)	도 되겠습니까?	
	(위 원) 네. 확인하였습니다.	
	제척·기피 사유에 해당하거나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	제척, 회피
	(위 원) A위원님께서는 본교 선도규정 제○○조제○항에 의거 대상	시 위원정족
	학생의 사촌으로 제척 사유에 해당한다고 생각됩니다. 따	수 등 성원
 제척,	라서 A위원님께서 본 사안을 심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	이 유지될
기피,	다고 생각합니다.	수 있도록
· ·	(위원장) 본교 선도규정 제○○조제○항에 의거 A위원이 제척 사유	유의하고,
회피	에 해당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제척, 회피,
(해당)	(위 원) 네. 동의합니다.	기피 해당자
	(위원장) 본교 선도규정 제○○조제○항에 의거 A위원은 제척 사유	는 회의에서
	에 해당함에 따라 제척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해당	제외함
	하는 A위원님께서는 귀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사 안 보고

절차	세부 진행 발언	비고
사안보고	(위원장) 다음은 안건에 대한 사안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사안의 내용, 사안의 경위, 사안조사 보고서, 사실 확인서 등을 참고하시고, 조치결정을 위해 학생 및 보호자께 추가로 확인할 사항에 대해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는 사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안 설명) ▶ 사안 설명 (간 사) 사안번호 23-00, ○○○학생 '흡연 및 절도' 규정 위반 사안의 경과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안개요, 진행상황, 중점 심의 사항 등 조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 ○ 2023년 11월 2일 21시경 홍길동 학생이 ○○편의점에서 친구 김경남과 함께 담배 1갑을 절도한 사실이 있으며 편의점 CCTV 영상 자료에도 해당 내용이 확인되었습니다.	해당학교 교 직원이 심의 위원회에 출 석하는 경우, 심의 위원들 이 교직원에 게 추가로 확인할 사항 을 준비하도 록 함

절차	세부 진행 발언	비고
	 ●편의점에서 나온 홍길동은 편의점 뒤에서 흡연을 하고 있었고 현장에 출동한 박문수경위에게 흡연 장면 역시 목격되었습니다. ●편의점 사장이 2023년 11월 2일 22시경 담임교사에게 사실을 통보하여 학교에서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 김경남은 담배를 훔치는 것을 모르고 함께 편의점에 들어 갔으며 담배 피는 장소에서도 흡연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문수경위의 진술에 따르면 현장에 출동하였을 당시 김경남은 흡연을 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기타 진단서, 문자내용 등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요약 보고 (간 사) 이상입니다. 	
조사 내용 확인	(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사안조사보고서와 관련 자료 중에서 궁금한 사항은 간사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원) 증거자료는 편의점 CCTV만 확보되어 있던데 혹시 담배를 피던 장소에는 영상이 촬영된 증거 자료 등은 없나요? (간 사) 네. 골목길에는 따로 CCTV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았고 경위의 진술서만 있습니다.	

4

쟁 점 논 의

절차	세부 진행 발언	비고
주요 쟁점	(위원장) 다음으로는 주요 쟁점 사안과 학생·보호자 질의·응답 시 확인 할 주요 사항에 대해 협의하겠습니다. 위원분들께서는 쟁점 주장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학생 의 반성 정도, 선도 가능성 및 주요 참고인의 의견 등을 종합할 수 있는 주요 질의 내용과 논의 사항에 관해 협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의 주요 논의 및 질의 사항 협의)	해당학교 교 직원이 학생 선도위원회 에 출석하는 경우, 심의
논의	 ▶ 논의·질의 사항 협의 (위 원) ○○○은 흡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이를 입증할만한 한 증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 원) ○○○이 흡연하지 않았다는 점이 사실로 드러나도 흡연을 하는 친구와 함께 있었던 정황을 볼 때 흡연에 동조한 학생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동조 정황에 대해서도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들이 교 직원에게 추 가로 확인할 사항을 준비 하도록 함

5

의 견 진 술

절차	세부 진행 발언	비고
	(위원장) 다음으로 사안 번호 23-00호 관련 학생 및 보호자의 질의	
	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당 학생 및 보호	
대리인	자께서 대리인 참석을 요청하였는지 간사는 확인해 주시기	
참석 확인	바랍니다.	
	(간 사) 네, 알겠습니다.	
	(대리인 참석 여부 확인)	
'대리인	대리인이 참석하지 않는 경우	
미참석'	(간 사) 사안 번호 23-00호 학생 및 보호자는 대리인 참석을 요청	
ļ · - ·	하지 않았습니다.	
	대리인이 참석하는 경우 (가 기) 기이 비송 00 00호 함께 미 비송기가 메기이 참서요 0 회	
	(간 사) 사안 번호 23-00호 학생 및 보호자는 대리인 참석을 요청	
	하였습니다.	
	(위원장) 본교 학생생활규정 제○○조 제○항 '대리인 선임권 보장'	
	에 근거하여 해당 대리인을 사안 번호 23-00호 학생 및	
'대리인	보호자의 대리인으로 참석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이	
참석'	의 있으십니까?	
	(위 원) 이의 없습니다.	
	▶ ○○학교 학생생활규정 제00조(학생의 권리)	
	® 징계 등 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권리 1. 징계 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 요청권의 보장 등 적	
	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학생 및	(위원장) 사안 번호 23-00호 학생 및 보호자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	
ᄀᄋᄎ 보호자	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해당 학생과 보호자(대리인)를 본	
고로시 (대리인)	위원회에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게더 <i>년)</i> 입장	(간 사) 네, 알겠습니다.	
80	(학생 및 보호자, 대리인 입장)	
	(학생 및 보호자, 대리인과의 인사)	-11+1 -1 -2
	(위원장) 바쁘신 와중에도 학생의 교육과 선도를 위한 본 위원회	해당 학생
	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및 보호자,
신원 및	(위원장) 먼저 신원 및 해당 학생과의 관계를 확인하도록 하겠습	관련 대리인
관계 확인	니다. 간사는 학생과 보호자님, 대리인의 신원과 해당	이 아닌 경
	학생과의 관계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 퇴장 조
	(간 사) 네, 알겠습니다.	치
	(신원 및 관계 확인)	

절차	세부 진행 발언	비고
	▶ 신원 및 관계 확인 순서 및 방법 1. 신분증을 통한 신상 확인(성함, 생년월일, 주소 등으로 파악) 2. 대면 확인(신분증 사진과 얼굴 대조) 3. 구두 확인 (간 사) 위원장님, ○○○학생과 보호자님, 대리인분의 신원과 해당 학생과의 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원확인에 이어서 기피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피 신청에 관한 본교 학생선도규정 제00조 제00항의 기피 사	, -
기피 신청	유에 관해 간사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 사) 네, 본교 학생선도규정 제00조 제00항에 의거 당사자의 본 위원회 위원 기피 해당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피 사유 설명) ○학교 학생선도규정 제6조(학생선도위원회의 운영) ③ 위원 중심의 사안 또는 관련 학생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으며,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한다. (간 사) 이상입니다.	
	(위원장) 그럼, 학생과 보호자께서는 오늘 심의할 사안과 관련하여 공정한 심의를 할 수 없다고 생각되거나 제척 및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이 있다고 생각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척·기피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기피 신청이 없는 경우	
제척·기피	(학생 및 보호자) 없습니다.	
'신청	(위원장) 네. 그럼,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기피 신청하실 위원분이	
없음'	없는 것으로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학생 및 보호자) 네, 그렇습니다.	
제척·기피 '신청'	제착·기피 사유에 해당하거나 기피 신청이 있는 경우 (보호자) ○○○위원을 (~사유)로 기피 신청합니다. ▶ 학생 및 보호자, 대리인의 기피 신청 (보호자) ○○○위원은 당일 흡연 학생을 지도했던 선생님으로서 본 사건을 공정하게 심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네, 보호자께서 신청하신 기피 신청은 기피 신청 사유를 바탕으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를 위해 본교 학생선도규정 제00조에 의거 ○○○위원이 기피 여부 결정을 위한 회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피 여부 결정은 기피 신청 대상 위원을 제외 한 위원들의 의결로 결정

절차	세부 진행 발언	비고
	○○○학생과 보호자(대리인)께서는 기피 여부 결정이 끝날	
	때까지 잠시 대기실로 이동하시어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에 의해 학생 및 보호자 대기실로 이동)	
	(위원장) 이제부터 보호자께서 신청하신 ○○○위원에 대한 기피 여	
	부를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원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	
	니다.	
	(위원 간 상호 협의)	
	▶ 위원 간 상호 협의	
	(위 원) ○○○위원은 "당일 흡연 학생을 지도했던 선생님으로서	
	본 사건을 공정하게 심의할 수 없다"라는 해당 학생 측	
	의 기피 신청 사유가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저 또한, 현장에서 지도했던 ○○○위원님이 해당 학생	
	의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징계 심의에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겠	
	습니다.	
	(위원장) 기피 여부 결정은 본교 학생선도규정 제00조에 의거 기피	
	신청 ○○○위원을 제외한 위원들의 의결로 결정됩니다.	
	○○○위원님 기피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	
	기 바랍니다.	
	(위 원) 모두 손을 듦(만장일치)	
	(위원장) 만장일치로 ○○○위원님에 대한 기피를 결정하도록 하겠	
	습니다.	
	(위원장) ○○○위원님은 귀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사는 학생	
	과 보호자님을 다시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간 사) 네, 알겠습니다.	
	(학생 및 보호자 (대리인) 재입장)	
	(위원장) 다음으로 학생선도위원회 주의사항에 관해 설명하겠습니다.	
	(위원장) 첫째, 발언하기 위해서는 먼저 발언하겠다는 의사를 밝히	주의사항의
	위원장에게 동의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별도
주의사항	둘째, 위원회가 진행되는 동안 욕설, 폭언, 폭행할 경우 퇴	유인물 제
안내	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고철 게 작·안내 가
	셋째, 본교 학생선도규정 제00조 제00항에 의거 회의 참석	역한테 기 능
	자 전원은 위원회에 참여하여 알게 된 모든 사항에 대해	0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차	세부 진행 발언	비고
	마지막으로 학생선도위원회는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	
	로 교육적 선도 조치를 결정하기 위함임을 알려드립니다.	
	(위원장) 이에 따라 학생과 보호자께서는 위원회의 조치 결정에 협	
	조해 주시고, 조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학교내	
	재심의, 재심 및 행정심판 등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위원장) 그 밖에 위원회 진행과 절차에 관해 질문 있으십니까?	
	(학생 및 보호자의 질문 사항 응답)	
	(위원장)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해당 사안 사실 확인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다음은 본교에서 조사한 ○○○학생의 사안 조사 내용입니	
	다. 학생과 보호자께서는 관련 내용을 잘 듣고 사실과 다르	
	거나 이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는 〇〇	
	○학생의 사안 조사 내용에 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 사) ○○○학생의 사안 조사 내용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안 설명)	
	▶ ○○○학생 사실 확인서 (사안조사보고서 일부 활용 가능)	
	사안 번호 23-00, ○○○학생의 '흡연 및 절도'규정 위반 사안	
	입니다. 20○○년 0월 0일 00시경 ○○○학생이 ○편의점에서	
	친구(○○○)와 함께 들어간 뒤 ○담배 한 갑을 절도하였습니다.	
	20○○년 0월 0일 00시경 편의점 뒤 골목에서 ○○○는 흡연을	
	하였고 친구(○○○)는 함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후 현장에	
조사 내용	출동한 경위에게 목격이 되었으며 편의점 사장의 연락을 받고 현	
사실 확인	장에 나간 ○○○선생님에게 지도받았습니다. (간 사) 이상입니다.	
	(위원장) ○○○학생과 보호자께서는 설명한 ○○○학생의 사안조사	
	내용이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본 사안	
	에 관해 소명하실 내용이나 의견 또는 질문이 있으실 경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있	
	으실 경우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진술, 질의응답, 추가자료 제출 등)	
	(위원장) 위원분들은 본 사안과 관련하여 확인하실 내용이나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해당 학생과 보호자님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학생과 보호자님께서는 위원분들의 질문이	
	이해되지 않으면 재차 질문을 요청해 주시고, 답변하기 어	
	려운 내용은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지나치게 긴	
	장하지 마시고, 사실에 근거하여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말	

절차	세부 진행 발언	비고
	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및 보호자 최종 진술	(위원 및 학생측 질의응답) (위원장) 마지막으로 학생과 보호자께서는 이번 사안에 대한 입장과 의견, 소명하실 내용, 요구사항 등에 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후 과정 및 불복절차 안내, 학생 및 보호자 퇴장	(위원장) 성실히 응답해 주신 ○○○학생과 보호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학생선도위원회의 조치 결정은 서면으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본 위원회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또한 서면으로 통지되며, 궁금하신 내용은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생 많으셨습니다. ○○○학생과 보호자께서는 귀가하셔도 좋습니다. (학생 및 보호자, 대리인 퇴장)	불복절차에 관한 별도 유인물 제 작·제공 가 능

6

참고인 진술

절차	세부 진행 발언	비고
참고인 의견 청취 여부 결정	(위원장) 다음은 참고인 진술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본교 학생선도규정 제00조 제00항에 의거 위원분들께서는 참고인 대상자를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선정은 위원장의 결정 또는 위원회 의결로 선정 가능합니다. (위원들의 참고인 선정 협의) (위원장) 위원님들의 협의를 통해 본 사안의 사실확인 및 징계 조치결정을 위해 ○○○학생의 담임교사 ○○○, 상담교사 ○○의 없으신가요? (위원장)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이의 없으시면, 간사는 해당 참고인 분들이 순차적으로 입장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인 예시 1. 해당 학교 교직원: 해당 학교의 관리자, 책임교사, 담임교사,	위원회 개최 이전 참고인 사전 조사 필요

학생보호인력 등을 출석하도록 하여 사안 관련 사실, 관련 학 생의 교우관계, 사안 발생 이후 학교생활 태도, 반성 정도 등 을 확인할 수 있음.	
을 확인할 수 있음.	
2. 청소년 상담사: 관련 학생의 심리상태 관련 등을 확인	
3. 특수교육 전문가: 장애 학생의 인지, 심리, 행동 특성 등을 확인	
4. 다문화교육 전문가: 다문화 학생의 언어 및 문화적 특성 등을	
확인	
5. 의사, 법률전문가 등도 필요에 따라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조	
언을 구할 수 있음.	
※ 유의 사항: 심의위원회 회의는 비공개이므로 참고인은 필요한	
때에만 회의에 출석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회의에 참석	
하거나, 징계 결정에 관여하는 발언을 하지 않도록 유의.	:L≅L∧ി നി⊐ി
	상황에 따라 개별 또는
입장 (간 사) 네, 알겠습니다. 집	집단 의견
	청취 가능
(위원장) 본 위원회에 참고인으로의 출석 요청에 응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먼저 신원 및 해당 학생과의 관계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참고인의 신원과 해당 학생과의 관계	
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 사) 네, 알겠습니다.	
신원 및 (신원 및 관계 확인) 하	해당 요청
│ 뿌게 │ : ▶ 기이 미 교계 하이 ᄉ 기 미 비배	참고인이 아 닌 경우 퇴
SLOI	전 경구 되 당 조치
2. 대면 확인(신분증 사진과 얼굴 대조)	
3. 구두 확인	
(간 사) 위원장님, 참고인 ○○○분의 신원과 해당 학생과의 관계	
를 확인하였습니다.	
(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다음으로 학생선도위원회 주의사항에 관해 설명하겠습니다.	
	주의사항의
I 구의사용	경우 별도
I OFIN	유인물을 제 악·안내 가
실 도시이도속 이셨습니다. 	. –
자 전원은 위원회에 참여하여 알게 된 모든 사항에 대해	

절차	세부 진행 발언	비고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생선도위원회는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	
	로 교육적 선도 조치를 결정하기 위함임을 알려드립니다.	
	(위원장) 이에 따라 참고인께서는 위원님의 질문에 있는 사실대로	
	성의껏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그 밖에 위원회와 관련된 질문 있으십니까?	
	(참고인 질의응답)	
	(위원장)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위원분들의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	
	겠습니다.	
	(위원장) 위원분들은 본 사안과 관련하여 확인하실 내용이나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해당 참고인분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	
	다. 만약 참고인께서는 위원분들의 질문이 이해되지 않으	
41-01	면 재차 질문을 요청해 주시고, 답변하기 어려우신 내용은	
참고인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지나치게 긴장하지 마시	
질의응답 	고, 사실에 근거하여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 참고인 응답)	
	(위원장)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참고인 ○○○분의 이번	
	사건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참고인 ○○○분께서는 이번 사건에 대한 의견이나 소견을	
	가감 없이 말씀해 주시되,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자	
	신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참고인 소견 청취)	
소견	(위원장) 더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청취 	(참고인) 네, 없습니다.	
	(의원장) 이상으로 참고인 ○○○님에 대한 질의응답 및 의견 청취	
	를 마치겠습니다.	
참고인	(위원장) 성실히 응답해 주신 참고인 ○○○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제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퇴장	(참고인 퇴장)	

7

징계 심의

절차	세부 진행 발언	비고
규정	(위원장) 이제부터 학생선도규정 위반 여부에 관해 심의하도록 하겠	
위반	습니다.	
여부	(위원장) 지금까지 청취한 진술 자료 및 조사·제출자료 등을 토대로	

절차	세부 진행 발언	비고
확인	이번 사안의 사실관계를 통한 해당 학생의 학생선도규정 위반 행위의 여부에 관해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간 학생선도규정 위반 행위 여부 협의)	
'조치 없음'	'조치 없음'의 경우 (위원장) 사안 번호 23-00호 사안은 (~의 이유로) 위원 협의를 통해 만장일치로 위반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사안에 대한 본 위원회 결정은 재적 위원 ○명 중 ○명의 출석과 출석위원 ○명 중 ○명의 의결에 따른 만장일치로 본교 학생선도규정 제00조에 제00항에의한 과반수의 의결조건을 충족하였기에, 본 위원회는 해당 사안에 관해 '조치 없음'으로 결정합니다. (图 '폐회'로 이동)	학생선도규 정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징계
	 ▶ '징계 조치 없음' 의결 사항 1. 행위가 학생선도규정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위반 행위를 했다고 볼 증거가 없는 경우 3. 위반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치 없음'으로 의결
'징계 조치'	규정 '위반 행위'의 경우 (위원장) 사안 번호 23-00호 사안은 (~의 이유로) 위원 협의를 통해 본교 학생선도규정 위반 항목 ○○○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사안에 대한 본 위원회 결정은 재적 위원 ○명 중 ○명의 출석과 출석위원 ○명 중 ○명의 '위반 행위'의결로 본교 학생선도규정 제00조 제00항에 의거 과반수의 의결조건을 충족하였기에, 본 위원회는 해당 사안에 관해 '본교 학생선도규정 위반 항목 ○○○'을 위반한 것으로 결정합니다. ▶ ○○학교 학생선도규정 제00조(학생선도위원회의 운영) ④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징계 결정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 다음으로 관련 학생에 대한 징계에 관해 논의하겠습니다. 사안 번호 23-00호 ○○○학생에 대한 징계 조치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간 상호 논의) (위원장)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사안 번호 23-00호 ○○○학생의 징계 조치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	조치 기준 상한선을 넘지 않도록 유의, 병과 조치 불가

절차	세부 진행 발언	비고
	여 위원 ○명 중 ○명이 '사회봉사 3시간' 조치의견을 주셨습니다. 본교 학생선도규정 제00조 제00항에 의거 ○○○학생에 대한 징계 조치로서 재적 위원 ○명 중 ○명이 참석하였고, 참석위원 ○명 중 ○명이 '사회봉사 3시간'에 대한 징계 의견을 주셨기에 본교 학생선도규정 제00조 제00항 과반수의 의결 조건을 충족하여 ○○○학생에게 '사회봉사 3시간' 징계(선도) 조치를 결정합니다. ▶ ○○학교 학생선도규정 제00조(징계의 방법) 학생 선도는 다음 각 항에 따라 실시한다. ② 사회봉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과 범위에서 시행한다. 1. 30시간 이내로 하며, 상담과 봉사활동 등을 수행해야 한다. 2. 사회봉사 기관은 학교장이 지명한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실행하며 위탁 기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단, 학생선도위원 회 결정에 따라 학교 내에서 사회봉사를 할 수도 있다.	
징계 세부 내용	(위원장) 다음으로는 사안 번호 23-00호 ○○○학생의 '사회봉사 3 시간' 조치에 관한 이행기관(장소), 이행 기간, 담당교원 등의 세부 내용에 관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 간 상호 논의) (위원장)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사안 번호 23-00호 ○○○학생의 징계 조치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위원 ○명 중 ○명이 '지도 교원은 담임교사, 이행 기간 20○○년 00월 00일까지, 이행기관 ○○교육청봄봄 또는해당 부서에서 결정'으로 의견 주셨습니다. 본교 학생선도규정 제00조 제00항에 의거 ○○○학생에 대한 징계 세부내용으로 재적 위원 ○명 중 ○명이 참석하였고, 참석위원○명 중 ○명이 해당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본교 학생선도규정 제00조 제00항에 의거 과반수의 의결조건을 충족하여 ○○○학생에게 '사회봉사 3시간'의 조치에 대해 '지도교원은 담임교사, 이행 기간 20○○년 00월 00일까지, 이행기관 ○○교육청봄봄 또는 해당 부서에서 결정'으로 결정합니다.	
	 ▶ ○○학교 학생선도규정 제00조(징계의 방법) ① 학교내의 봉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과 범위에서 시행한다. 1. 15시간 이내로 하며, 봉사의 취지 및 내용에 부합하는 활동 	

절차	세부 진행 발언	비고
	을 수행해야 한다.	
	2. '학교내의 봉사 프로그램'계획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3. 창의적 체험활동의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② 사회봉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과 범위에서 시행한다.	
	1. 30시간 이내로 하며, 상담과 봉사활동 등을 수행해야 한다.	
	2. 사회봉사 기관은 학교장이 지명한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실행하며 위탁 기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단, 학생선도위원	
	회 결정에 따라 학교 내에서 사회봉사를 할 수도 있다.	
	가.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기관	
	나.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 상담전문	
	가, 청소년교육사 등을 두고 있거나 전문상담교육을 하고	
	있는 기관	
	3. 학생은 사회봉사 조치 이행 확인을 위한 이수증 또는 확인	
	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수증 등을 제출하지 않을 시 미인	
	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4. 창의적 체험활동의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③ 특별교육이수는 다음 각 호의 내용과 범위에서 시행한다.	
	1. 30시간 이내로 하며, 특별교육이수기관과 협의하여 실시 일 수를 정한다.	
	구글 경원의· 2. 특별교육이수는 교육감이 지정 또는 위탁한 기관에서 실시	
	한다.	
	3.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 치료교육,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교육을 이수한다.	
	4. 부적응 학생 교육을 위한 대안학교에서 단기간의 교육을 이	
	수한다.	
	5. 상담자원 봉사자.사회봉사자 등과 연계하여 1대1로 상담치	
	료교육을 이수한다.	
	6. 기타 위의 각 호에 준하는 교육을 이수한다.	
	7. 학생은 특별교육이수 조치 이행 확인을 위한 이수증 또는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수증 등을 제출하지 않을 시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④ 출석정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과 범위에서 시행한다.	
	1. 출석정지는 학생선도규정 등에 의해 시행하되, 1회 10일 이	
	내,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절차	세부 진행 발언	비고
	2.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상황란에 '미인정결	
	석'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한다.	
	[중학교] 3. 출석정지 기간이 30일이 경과한 이후 문제행동을 일	
	으키는 경우 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해 대안교육 위탁 등 특	
	별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고등학교] 3. 출석정지 기간이 30일이 경과한 이후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경우 다음 단계의 징계를 적용할 수 있다.	
	[고등학교] ⑤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1.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학생	
	2.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이 잦은 학생	
	3. 기타 학칙을 위반한 학생	
	[고등학교] ⑥ 퇴학처분 전 조치는 다음 각 호의 내용과 범위에	
	서 시행한다.	
	1. 학교장은 퇴학처분을 내리기 전에 반성 및 행동개선을 위하	
	여 10일 이내의(숙려 기간 2주)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	
	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31조제6항)	
	2. 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한 때에는 당해 학생 및 보호자(학	
	부모 등)와 진로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 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 데 노력	
	하여야 한다.	
	(위원장) 그럼 지금까지 논의된 사안 번호 23-00호 ○○○학생의 징	
	계(선도) 조치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학생선도규	
	정 제00조 제00항에 의거 ○○○학생에 대한 징계 조치로	
	'사회봉사 3시간', '지도교원은 담임교사, 이행 기간 20〇〇	
	년 00월 00일까지, 이행기관 ○○교육청봄봄 또는 해당 부	
최종	서에서 결정'으로 최종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조치	(위 원) 이의 없습니다.	
결정	(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사안 번호 23-00호 ○○○학생의 징계(선	
	도) 조치로 학생선도규정 제00조 제00항에 의거 '사회봉사	
	3시간', '지도교원은 담임교사, 이행 기간 20○○년 00월	
	00일까지, 이행기관 ○○교육청봄봄 또는 해당 부서에서 결정'으로 의결합니다.	
	설정 으도 의결합니다. (위원장) 위원분들께서는 위원회 종료 후 본 위원회 의결서 내용을	
	(위현정) 위현문글께서는 위현외 공묘 후 본 위현외 의결자 대용글 확인하시고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간사는 이번 위	
	<u> </u>	

절차	세부 진행 발언	비고
	원회의 회의 결과를 학교장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 사) 네, 알겠습니다.	

8 **폐 호**

절차	세부 진행 발언	비고
	(간 사) 위원장님의 폐회 선언이 있겠습니다.	
 폐회 선언	(위원장) 이상으로 ○○학교 23-○차 학생선도위원회를 마치며 폐회	
페외 전한	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참석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의결서		'징계 의결
│ ᅴᆯᄭ │ 서명	의결서 서명 ('징계 의결서' 위원 서명)	서'위원 서
시당		명

[서식 3-⑩] 학생선도위원회 징계 의결서

학생선도위원회 징계 의결서

제00회 ○○학교 학생선도위원회 징계 의결서

1. 조치의결 사항

징	J계 대상	학생	의결사항						
순	성명	학년반	징계 사유	징 계 내 용	징 계 수 준	징 계 기 간	징계부서 /기관 (담당자)	비고	
1	홍길동	2학년 1반	흡연	학교내의 <i>봉사</i>	3 <i>\\Z</i> !	2023. 11. 20. ~ 11. 24.	○○학교 (교원○○○)		
2			절도	<i>특별교육</i> 이수	5시간	2023. 11. 20. ~ 11. 24.	○○교육청 위센터 (상담교사○○○)		
3			<i>절도</i> 동조	사회봉사	3시간	2023. 11. 20. ~ 11. 24.	○○교육청봄봄 (상담교사○○○)		

위 조치의결 사항이 이상 없음을 확인 동의합니다.

2000년 월 일(선도위원회 개최일 기재)

직	성 명	서명날인	직	성 명	서명날인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서식 3-⑩] 학생선도위원회 회의록

	제00회	○○학교 흐	∤생선도위	원회	회의	록			
사안 번호	23-1		일시 및 장소	~		3. 11. 17.(금) 학교폭력심의 내원회실			
참석 인원	위원정수: ○명 참석위원: ○명 불참위원: ○명 참 고인: ○명		참석 위원 및 참고인	및 교 학	원위원: 부모위	년장: ○○○ 년위원: ○○○, ○○○ ^년 모위원: ○○○, ○○○ 1인: ○○○			
회의 안건	선도규정 제9조제1항제10호 및 제19호 위반(절도, 절도 동조 및 흡연) 학생의 징계 결정 심의								
					징계기준				
	위반자 (학반)	징계 사유	PT	학교 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이수	출석 정지	퇴학	
심의 대상 및 내용	흥길동 행위	또는 음주를 상	슼적으로 하는	0	0	0	0		
	(= 1)	외에서 남의 물 를 한 학생	건을 훔치는	0	0	0	0		
		외에서 남의 물 에 동조한 학생	건을 훔치는	0	0	0			
	위반자		· 당계 사유				조치		
이전 징계 이력 참고	(학반) 홍길동		0/11 /\TT			학교	<mark>내 봉사</mark>		
시크 문자	(2-1)	흡연을 상습적의	으로 하는 행위		54	시간(202	23. 5.	13.)	

회의 내용(발언 요지)

※ 발언자의 내용을 발언 순서대로 발언 요지를 기재하되 의미가 왜곡되지 않도록 유의

위원장 〇〇〇:	
위원 ○○○:	

학생 ○○○:

○○○의 보호자:

참고인 〇〇〇:

회의 결과

	징계 대성	당 학생			징계	결정 심의 결과		
순	성명	학년반	징 계 사 유	징계 내용	징 계 수 준	징 계 기 간	징계부서 /기관 (담당자)	비고
1		2학년 1반	흡연	학교내의 봉사	3×12+	2023. 11. 20. ~ 11. 24.	○○학교 (교원○○○)	
2			절도	<i>특별교육</i> 이수	5시간	2023. 11. 20. ~ 11. 24.	○○교육청 위센터 (상담교사○○○)	
3			절도 동조	사회봉사	3×12+	2023. 11. 20. ~ 11. 24.	○○교육청봄봄 (상담교사○○○)	

※ 징계 결정 심의 후 징계 내용과 수준은 변경 불가함. 단, 징계기간 및 기관 등은 학교 및 기관의 여건상 변동 가능함

기록자

간사 000

[서식 3-12] 징계 조치 이행 계획서

학생선도위원회 징계 조치 이행 계획서

사안 번호		23-	0	선도규정 위반 사항							
대상 학생 (학년 반)		홍길동(2학년1반), 김교육(2학년1반), 박창원(2학년1반)									
			징계	예 조치 내용		징 계	이행 계획				
홍길동	징 계 사 유	징계 내용	징계 수준	징계 기간	징계부서 /기관 (담당자)	방법	이행 일시				
(2학년 1반)	절도 방조	학교 내의 봉사	5시간	2023.11.20. ~ 11.24.	생활교육부 (교원○○○)	교내외 환경정화	2023.11.20. ~ 11.24. 방과 후 1시간씩				
			XI.	계 조치 내용		XI.	계 이행 계획				
	징계	징계	징계		징계부서 /기관						
김교육	사유	내용	수준	징계 기간	(담당 자)	방법	이행 일시				
(2학년 1반)	흡연	사회 봉사	3시간	2023.11.20. ~ 11.24.	○○교육청봄봄 (담임교사○○○)	○○도서된 도서 정리	11.22.				
		•									
	-1 -11	-1-11		계 조치 내용		징계	계 이행 계획				
박창원	징계 사유	징계 내용	징계 수준	징계 기간	징 계부서 /기관 (담당자)	방법	이행 일시				
		출석		2023.11.20. ~	생활교육부	과제 부여	후 2023.11.20. ~ 11.22.				
(2학년 1반)	절도 	정지	3일	11.24. (시험기간 제외)	(교원○○○)	가정학습	3일간				

[서식 3-③] 회의록 공개 신청서

회의록 공개 신청자가 작성 후 학교로 제출하도록 안내

학생선도위원회 회의록 공개 신청서

	알기계	서대					학년/빈	<u>}</u>			
신	학생	성명					연락처				
청 인	보호자	2-J TH					학생과의 된	관계			
	(학부모 등)	성명					연락처				
	생선도위원회 개최일		년	월	일	7]계 조치결 [/] 통지일	정	년	월	일
<u> </u>	조치결정 내용										
, ,	공개 신청 이유										
0(○학교 학생선	도규정	제〇	조제	○항어	따라	위와 같이 호	회의록 열]람을 신	청합	니다.
				2	20 년	월	일				
				į	신청인	:		(서명 /	인)		
							(○○중·	·고등학	ᅷ교 정	상귀하

[서식 3-⑭] 조치결정통지서(중학교용)

OO학교 학	생생활제규정	ያ 제OO조,	제OO조	:에 의	의거하여 다음 사형	당을 통지합니다.	
징계		성명			학년 / 반		
대상 학생					/	,	
		징계의 근거			징계 /	사유	
징계 근거 및 사유	「초.중등교육 「초.중등교육 학생선도규정 학생선도규정	법시행령」제 제○○조제○	31조제1학)항제()호	j.	흡연 및	절도	
	조치 일자	징계 내용	징 계 수 준		징계 기간	징계부서 /기관 (담당자)	
징계 내용	2023. 11. 14 (심의위원회 개최일)		3시간	202	3. 11. 20. ~ 11. 24.	○○교육청봄봄 (담임교사○○○)	
조치 결정 이유	2023년 11월 2 서 흡연한 사실	_ , 0	○편의점역	에서 ()○담배 한 갑을 훔친 뒤	○○편의점 뒤 골목에	
	방법			불	복 절차 및 방법		
	재심의				이의가 있을 때는 조치 으로 학교 에 재심의를		
불복절차	행정심판	게 된 날부터	터 90일 여	이내,	기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행정심판법」제27조)] 180일 이내에 행	
	행정소송	게 된 날부터 소송을 청구	터 90일 ('할 수 있	이내, 음(^୮ 현	기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냉정소송법」제20조) 조치에 대하여 민사소 송	i 1년 이내에 행정	
문의 사항이 있으면 ○○고등학교 교무실(☎○○○-○○○)으로 연락바랍니다. 참고사항 재심 요청 시 학교 및 관련 기관에 신청 사유를 작성하여 기한 내 해당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2023.				
		○○중	학교	장 (직인)		

[서식 3-44] 조치결정통지서(고등학교용)

	I							
조치 대상 학생		성명			학년 /	/ 반		
71070		징계의 근거			지게 :	al O		
징계 근거 및 사유	「초.중등교육' 「초.중등교육' 학생선도규정 학생선도규정	법」제18조제 법시행령」제 제○○조제○	1항 31조제1형)항제○호	il-		<mark>징계 사유</mark> 연 및 절도		
	조치 일자	징계 내용	징 계 수 준		징계 기간	징계부서 /기관 (담당자)		
조치 내용	2023. 11. 14. (심의위원회 개최일)	사회봉사	3시간	202:	3. 11. 20. ~ 11. 24.	○○교육청봄봄 (담임교사○○○)		
조치 결정 이유	2023년 11월 2일 21시경 ○○편의점에서 ○○담배 한 갑을 훔친 뒤 ○○편의점 뒤 골목에 서 흡연한 사실이 인정됨.							
	방법			불	복 절차 및 방법			
	재심의				이의가 있을 때는 조치 으로 학교 에 재심의를			
불복절차	재심	를 받은 날	부터 15일 학생징계] 이니 조정 9	ト 있는 학생 또는 그 개, 그 조치가 있음을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	안 날로부터 10일		
출구현시	행정심판	학교장의 조 게 된 날부터	.치에 대해 터 90일 여	하여 (이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행정심판법」제27조)	180일 이내에 행		
	행정소송 하다고 이 기술 및 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알 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음(「행정소송법」제20조) 단, 사립의 경우는 학교장의 조치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참고사항	문의 사항이 있으면 ○○고등학교 교무실(☎○○○-○○○)으로 연락바랍니다. 재심 요청 시 학교 및 관련 기관에 신청 사유를 작성하여 기한 내 해당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023.					
○○고등학교장 (직인)								

[서식 3-⑮] 학교내 재심의 신청서

학교내 재심의 신청서

					자택)		_, ,	본 인	())
 청	성명			연락처	휴대전화)		관계	보호자 (학부모 등)	()	
구 인	주소	()				보호자(현	학부모 등)의 관계	계
	학생	성 명			소 속	()	학교 ()학년 ()반	
	스치 일자 위원회 개최일)	Ļ	चे ५	릴 일		l음을 안 날 l서 수신일)		년 월	일	
 징계	조치 내용				징계 3	조치 사유				
재심의 신청 취지		() 학	생에 대한	20	.자 사회봉사	조치의 취	소를 구합니	14.	
재심의 신청 이유										
본교 선도규정 제○○조제○항에 의하여 재심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청구	인 :	(٨ -	명 / 인)			
 ○○중·고등학					고등학교	장 귀형	⋾॓			
○ 참고	○참고사항: 본교 선도규정 제○○조제○항에 의거 재심의 요청은 1회만 가능합니다.									

[서식 3-⑥] 재심 청구서(고등학교용)

	재심 경	성구서	(고등	학교	퇴학치	려분 시)	접	번호 일자		년	- 월	일
							수	접수지	아			
청 구 인	성 명				연락처		· 관	계 본	인, 보	.호자(호	누부 도	· 등)
	주소							[학	생과의	리 관계]	
	학생	성명			전소속	()	학교	() <u>ā</u>	학년 ()반	.	
피청 구인	퇴학 조치 학교명	(학교)	소재지	()시·군 ()		학교장				
퇴힉	- 조치 일자		년	월	일	퇴학 조치가 있음을 안 날		ì	년	월	일	
청구 취지 (목적, 원하는 사항)		(구합니:	,	생에 대	한 피청구	인의 20	자 퇴	학 조치	의 취	소를		
(재심	성구 이유 을 청구하게 된 이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의하여 재심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청구인: (인) 경상남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												
○참고사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의거 징계처분 중 퇴학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학부모 등)는 그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 터 10일 이내에 해당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그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징계조정위원 회에서 필요한 경우 자료 및 정보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진술하여야 함												

[서식 3-⑪] 학생 징계 대장

법정 필수 장부는 아니며 필요한 학교에서 양식을 변경하여 사용 가능함 학생 선도위원회 징계 조치 대장

○○중·고등학교

사안			징계	징계	징계		이행여부	결	재
번호	학 번	성 명	사유	내용	수준	징계기간	(이행완료일자)	담당자	학교장
23-1	2-1	홍길동	흡연	학교내의 봉사	3시 <i>간</i>	2023. 11. 20. ~ 11. 24.	O (2023. 11. 23.)		

[참고] 사안 번호는 모든 관련 서류에 동일하게 작성 학교 여건에 따라 교감 전결 가능함 필수장부는 아니므로 단위 학교에서 장부 작성 및 비치 여부는 논의 후 결정 바람

[서식 3-⑱] 학교내의 봉사 활동 일지

대상 학생이 봉사활동일지를 기록한 뒤 징계조치이행 완료 후 업무담당자에게 제출하도록 안내 바랍니다.

학교내의 봉사 활동 일지

1. 대상 학생

이 름	홍길동	학년 반	2학년 1반
학생 연락처	010-	보호자 연락처	010-
규정 위반 내용	절도방조	징계 조치 내용	학교내의 봉사
징계 조치 수준	5시간	징계 이행 기간	2023.11.20. ~ 11.24.

2. 봉사 활동 일지

회차	활동 일시(시간)	실시 장소	활동 내용	지도 교원 확인	비고		
1	2023. 11. 20. (1시간)	도서실	교내외 환경정화	교원 ○○○ (인)			
2							
3							
4							
5							
성실하게 임한 내용		필요시 지도 교원이 기록					
불성실	하게 임한 내용	필요시 지도 교원이 기록					

※활동에 불성실하게 임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미이행하는 경우 선도규정에 따라 학생선도 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음

3. 보호자 지도계획 (의견서)

학교내의 봉사에 관한 보호자 지도계획, 가정 지도 내용 등을 기재	
보호자(학부모 등) 성명:	(인)

○○중·고등학교장 귀하

[서식 3-⑩] 사회봉사 의뢰서

사회봉사 활동 의뢰서

	2J FH	생 년 월 일	
인 적 사 항	성 명	연 락 처	
	학교명	학년 / 반	/
=1 -1 71 11	생활교육 부장	연 락 처	
학교정보	담 임	연 락 처	
보호자 (학부모 등)	성 명	학생과의 관계	
	연 락 처	연 락 처	
	요청 시간		
요청 내용 및 의견	의뢰 사유		
	학생 지도 시 유의 사항		

상기와 같이 사회봉사를 의뢰하며, 학생 및 보호자(학부모 등)의 인적사항, 상담내용, 사회봉사 활동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중·고등학교장 (직인)

[서식 3-20] 특별교육 의뢰서

특별교육 의뢰서

	zJ n4	생 년 월 일	
인 적 사 항	성 명	연 락 처	
	학교명	학년 / 반	/
하고저ㅂ	생활교육 부장	연 락 처	
학교정보	담 임	연 락 처	
보호자	성 명	학생과의 관계	
(학부모 등)	연 락 처	연 락 처	
	요청 시간		
요청 내용 및 의견	의뢰 사유		
	학생 지도 시 유의 사항		

상기와 같이 특별교육을 의뢰하며, 학생과 보호자(학부모 등)의 인적 사항, 상담내용, 특별교육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중·고등학교장 (직인)

Ⅳ 학생자치활동

1. 학생자치규정 표준안

※ 본 개정 표준안은 참고 자료이며, 표준안에 대한 의의, 관련 법령, 기본 방침 및 유의 사항 등을 참고하여 각 학교의 학생, 보호자(학부모 등), 교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교의 특성에 따라 보충 또 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학교 학생자치규정' 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자유롭고 민주적인 자치활동을 통하여 학생이 학교공동체의 한 주체로 학생과 관련한 학교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17조(학생자치활동)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8호 및 제30조에 따라 학생자치활동에 관한 세부 사항들을 규정 한다.

제2장 학생자치기구

제4조(조직) 학생의 자치활동을 위해 대의원회, 학생회, 학급회, 동아리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학생자치기구를 둔다.(각 자치회 기구 구성·운영은 본 규정에 따르며, 필요에 따라 별도 규정을 두어 운영할 수 있다.)

※ 본 규정의 학생자치기구 조직인 대의원회, 학생회, 학급회, 동아리연합회의 구성과 주요 내용은 №-3. 학생 자치규정 참고사항의 표를 참고하여 학교 상황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여 사용하셔도 됩니다.

제5조(권한) ① 학생은 학생자치기구를 자유롭게 운영할 권한을 가진다.

- ② 학생자치기구는 유영에 필요한 예산과 공간, 비품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 ③ 학생자치기구는 학교운영, 학교규칙 등에 대하여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

- 회'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④ 학생자치기구는 학교의 운영과 교육청의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있다.
- **제6조(책임)** ① 자치기구의 구성원은 학생자치기구의 관련 규정을 준수할 책임이 있다.
- ② 자치기구의 대표는 관련 규정에 명시된 '업무·권한·임무'를 성실히 수 행할 책임이 있다.
- 제7조(지원) 학교의 장이 학생자치기구의 활동과 운영, 예산의 편성·집행 등에 있어 독립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학생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기 위하여 적극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학생자치 조직 운영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
 - 2. 자부담 경비, 학교생활, 학생복지 등에 관련한 정보 제공 및 협의
 - 3. 학생회 자치활동 관련한 예산과 결산에 관한 정보 제공 및 협의
 - 4. 학교의 장과 학생자치회 정기적 협의회
 - 5. 문화 · 예술 · 체육 · 취미 · 봉사 활동
 - 6. 학교생활제규정 제 · 개정 활동
 - 7. 학생권리 옹호관 활동
 - 8. 이웃 학교 및 지역사회와의 관심사 연대(위원회ㆍ협의회ㆍ행사참여 등) 활동
 - 9. 기타 학생자치활동 및 학생생활과 관련된 활동에 필요한 행정과 재정의 지원
- 제8조(승인) 학생자치기구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단, 학교장이 승인을 유보, 거부하는 경우 해당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 제9조(자격 및 제한금지) ① 구성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다만, 휴학 중인 자는 그 기간 중 자격이 정지된다.
-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성적, 징계기록 등을 이유로 학생자치기구 구성원의 자격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 ③ 징계 기록에 관한 내용 및 해당하는 징계기록(적용 기간, 징계 수준)을 학교 내의 공식적인 합의 절차를 통해 결정하여 선거권자에게 공개할 수 있다. 단,
- 이 조항은 학생회 임원(회장 · 부회장) · 학급회 임원(반장 · 부반장) · 동아리 연

합회 임원 선거에만 적용할 수 있으며 적용 기간과 징계 수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적용 기간: 입후보 등록일자로부터 1년 이내의 징계 기록
- 2. 징계 수준: 적용 기간 중에 처분받은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

제10조(자격상실) 학생자치기구 임원의 자격 상실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학생선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처분이 확정되었을 때 [중학교]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요구한 가해학생조치(4~8호)가 확정되었을 때
- 3. 교권보호위원회가 요구한 교육활동침해행위에 대한 조치(2~6호)가 확정되었을 때

[고등학교]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요구한 가해학생조치(4~9호)가 확정되었을 때

3. 교권보호위원회가 요구한 교육활동침해행위에 대한 조치(2~7호)가 확정되었을 때

제3장 학생총회

제11조(구성) 학생총회는 본교 재학 중인 전체 학생으로 한다.

제12조(권한) 학생총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 1. 학생회 회장·부회장 선거
- 2. 학생 활동과 관련된 중대한 내용의 토의 의결

제13조(의장) 학생총회의 의장은 학생회장이 맡으며 학생회장이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을 시 부회장이 대행한다.

제14조(회의 및 소집) ①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 ② 정기총회는 연 1회 이상으로 한다.
- ③ 임시총회는 대의원회 결의 및 총 회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학생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4장 대의원회

제15조(구성) 대의원회는 학생회 임원, 학급의 대표, 동아리연합회 대표로 구성한다.

제16조(의장) ① 대의원회의 의장은 학생회장으로 한다.

② 대의원회의 의장은 대의원회의 운영을 맡으며 대의원을 대표한다.

제17조(입기) 대의원의 임기는 1년(3월~다음 해 2월까지)으로 한다.

제18조(회의 및 소집) ① 대의원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학생회장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소집한다.

- ② 대의원회는 매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 ③ 대의원회의 추가 개최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학생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재적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 3. 학교장의 요구가 있을 때

제19조(심의사항) 대의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학생회 운영 계획 및 운영 개정안에 대한 심의
- 2. 학생자치활동 예산 운영(안) 심의
- 3. 대의원 및 학생회에서 발의한 안건 처리
- 4. 대의원 및 학급회에서 건의한 사항 심의
- 5. 사업 추진 결과에 대한 평가 개선 심의
- 6. 학생생활제규정 제ㆍ개정 학생회 안 발의 및 심의
- 7. 학생총회 소집
- 8. 이웃 학교 및 지역사회와의 정보 교류 및 관심사 연대 활동에 대한 심의
- 9. 회장·부회장, 각 부장 및 차장 불신임 결의
- 10. 학생회 회장·부회장 당선자(재투표 결과) 및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학생회 장·부회장 대표 선출

- 11. 학생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의결 사항을 학교장 및 학교 운영위원회에 전달
- 12. 기타 필요한 사항의 협의 및 심의

제20조(의결) ① 대의원회의 의결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대의원회는 회장·부회장, 각 부장 및 차장이 학생회 운영상 중대한 과오를 범했을 때는 불신임 결의를 할 수 있다. 단, 불신임 결의는 대의원회에서 재적 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고,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학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자격상실) 이 규정 제10조(자격 상실)에 따른다.

제5장 학생회

제22조(구성) 학생회는 학생회장, 부회장, 각 부 부장 및 차장으로 구성된다.

제23조(심의사항 및 권한) 학생회의 심의사항 및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학생회 운영 계획안 수립
- 2. 대의원회의에서 위임된 사항
- 3. 학생자치활동 예산안 편성 및 집행
- 4. 대의원회의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 추진
- 5. 학생생활제규정 제·개정팀 운영
- 6. 학생권리옹호관제도 운영
- 7. 제19조에 의해 심의 · 의결된 사항 및 기타 중요한 사항
- 8. 긴급한 사항 발생으로 인하여 대의원회의 개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담당교사의 자문을 얻어 사업을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추후 대의원회에 그 집행사안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회의 및 소집) ① 학생회는 월 1회 이상 정기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

- 며, 학생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② 학생회장은 학생회 개최에 앞서 필요 시 담당교사에게 학교생활에 관련된 제반 도움 자료 및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부서) 학생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부서를 둔다.

- 1. 기획부는 입학식, 졸업식, 친구의 날, 리더십 캠프, 학생의 날 등 각종 학교 행사 업무 추진 활동을 한다.
- 2. 규정·선거부는 전교학생회 선거 및 반장 선거, 학생생활제규정 제·개정을 위한 학생 자치, 캠페인 등의 활동을 한다.
- 3. 문화예술부는 각종 학예 행사, 학교 축제 등의 문화예술분야 행사 업무 추진을 한다.
- 4. 복지부는 학생 건의함 운영, 안심우산 관리, 급식메뉴 선정, 각종 행사 안내 및 도우미 등 학생의 복지를 위한 활동을 한다.
- 5. 체육부는 체육 행사 활동 운영에 따른 제반 활동 및 운동기구 관리 활동을 한다.
- 6. 방송홍보부는 동영상 제작, 행사 사진 촬영 및 홈페이지 탑재 등의 학교 홍보 및 교내 방송을 한다.
- 7. 학생권리옹호부는 학교생활 전반에 대하여 학생의 불편·불만사항 모니터 및 해결 방안 활동을 한다.
- ※ 본 규정의 부서는 예시이며 역할, 명칭 등은 단위 학교의 규모 특성, 학생회 활동 역량 등을 고려하여 조직 및 운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참고) 학생권리옹호관제도

- 목적과 구성: 자율과 책임 중심의 학생자치활동 및 학교생활과 밀접한 사항에 관한 학칙 제·개정 과정에 학생 의견수렴을 제도화하기 위해 학생권리옹호관(학급 당 1명)을 둔다.
- 활동
 - ▷ 학생생활제규정을 제·개정함에 있어서 학생에게 보다 편리하고 다양한 의견수 렴의 기회를 상시 제공하고 이에 대한 선택권을 폭넓게 확대해 준다.
 - ▷ 학생 스스로 학교 구성원 간의 갈등과 불편함, 불합리함 등을 접수·조사·시 정하는 활동을 제도적으로 해결하여 학교생활의 만족도를 높인다.
 - ▷ 참여하는 자율과 책임,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교생활이 실제 반영되 도록 하여 학생자치 활성화와 민주시민 의식의 장이 되게 한다.

제26조(회장의 임무) ① 회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학생회를 대표한다.
- 2. 학생총회, 대의원회 및 학생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 의장이 된다.
- 3. 학생회의 각 부장과 차장을 학교장에게 추천한다.
- 4. 학생 주도의 학교행사, 학생자치의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한다.
- 5. 자치활동 예산 편성 및 운영의 자율권을 갖는다.
- 6. 학생의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을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각 부 부장은 제25조의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관장한다.

※ '학생의회'는 경남 소속 학교의 학생 대표로 구성된 학생 대의기구로 교육정책 제안, 입법 및 예산 편성, 학생가치활동 등에 관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경남에 있는 초, 중 고등학교의 학생회장은 모두 학생의회의 당연직위원이 됩니다.

제27조(선출) ① 회장·부회장은 제8장(학생회 선거)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각 부 부·차장은 회장의 추천에 의해 학교장이 임명한다.

제28조(임기) 회장·부회장 및 각 부 부·차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29조(자격상실) 이 규정 제10조(자격 상실)에 따른다.

제6장 학급회

제30조(구성) 학급회는 각 학급의 재학생으로 구성된다.

제32조(임원의 임무) 학급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학급반장은 학급을 대표하며 학급회의 시 학급회 의장이 된다.
- 2. 학급부반장은 반장을 보좌하며 반장이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을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 각 부서의 부장은 제25조에 규정한 각 부서의 임무 내용에 준하는 임무를 담당한다.

제33조(협의 및 의결) ① 학생자치활동과 관련되는 사항, 건의사항, 기타 학급의 특색 사안 등을 협의·의결한다.

② 학급회의 협의 및 의결 사항은 담임교사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담임 및 부담임 교사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34조(회의 및 소집) ①학급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

- ② 정기회의는 학교교육계획에 의하여 실시한다.
- ③ 임시회의의 개최는 다음 각 호에 따르며 학급반장의 발의로 소집한다.
 - 1. 학급 재적수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 2. 학급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3. 담임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35조(자격상실) 이 규정 제10조(자격 상실)에 따른다.

제7장 동아리연합회

제36조(명칭) 이 회는 '○○○○학교 동아리연합회'라 한다.

제37조(회원의 자격) 이 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각 동아리와 청소년 단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38조(동아리의 조직 및 운영) ① 매 학년도 3월 초 신규 회원을 모집하기 ○ 일 전에 동아리 등록을 마쳐야 하며 기존의 동아리도 매년 등록해야 한다.

- ② 각 동아리는 매 학년도 3월 중 전 학년을 대상으로 신규 구성원을 모집할 수 있다.
- ③ 동아리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는 구성원 개개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단, 지도교사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 ④ 바람직한 동아리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동아리의 목적에 따라 담당지도교 사와 함께 독립적인 '동아리활동수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제정 시 지도교 사는 학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⑤ 학교 밖에서 실시하는 동아리 활동은 학생생활제규정의 목적과 원칙을 위배하지 않아야 하며, 외부 기관 및 단체 행사(학원 등)에 참가하고자 할 때는 동아리 회장이 지도교사에게 활동 시간, 참가 사례비, 시설 안전, 행사의 주최기관 및 목적 등을 사전 보고해야 한다. 단, 일과 중일 때는 학교장의 허락을받은 뒤 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39조(동아리 임원의 구성) 동아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회장 1명, 부회장 1명을 선출·구성한다.

제40조(동아리 임원의 임무) ① 회장은 동아리 목적에 맞는 활동을 계획·운영 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을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1조(동아리의 활동 정지 및 해산)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 학교장은 해당 동아리를 활동 정지 및 해산할 수 있다.

- 1. 동아리 및 청소년 단체 구성원 대다수가 학생생활제규정을 현저히 위반하여 학교에 물의를 야기한 경우
- 2. 동아리 및 청소년 단체 구성원 간의 불협화음으로 더 이상 활동이 불가능할 경우

제42조(동아리 활동 지원) ① 학교장은 동아리활동지원비를 학교예산에 편성해야 하며, 경비는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지원한다.

② 학교장은 인가된 동아리의 연속성을 위해 지도교사를 위촉해야 한다.

제43조(동아리연합회 임원의 구성) ① 동아리연합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회장 1명, 부회장 1명을 선출·구성하여 운영한다.

- ② 회장, 부회장은 각 동아리 대표 2인의 투표를 통해 선출하고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 ③ 임원의 임기는 해당 학년도로 하며, 임원이 결원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고, 남은 기간 동안 재임한다. 단, 남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일 때선출한다.

제44조(동아리연합회 회원의 활동과 의무) 동아리연합회의 회원은 각 동아리를 대표하여 이 회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학생자치기구의 목적에 따른 의무를 다하다.

제45조(동아리연합회의 심의사항 및 권한) 동아리연합회의 심의사항 및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동아리연합회 운영 계획안 수립
- 2. 동아리연합회 예산안 편성 및 집행
- 3. 동아리활동에 관한 기타 토의 사항 등을 협의 · 의결
- 4. 동아리활동에 관한 의견 수렴 및 건의

제8장 학생회 선거

제46조(목적) 학생자치회 임원 선거가 학생 스스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공정 하게 치러지도록 함으로써 올바른 선거의식과 학생의 자치 능력을 키우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제47조(선거권)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선거권을 가진다.

제48조(입후보자 자격) 후보에 등록하려는 학생은 선거 공고일 현재 본교 재학 중인 학생이어야 하며, 이 규정 제9조에 따른다.

제49조(선거의 방법과 절차) 선거를 합리적이며 공정하게 시행하기 위한 방법 과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재학생 전원의 투표를 통해 선출한다.
- 2. 학생회 임원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거 관리 세부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 3. 선거관리위원회가 수립한 세부 시행 계획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0조(선거의 시기) 학생회 회장, 부회장 선거는 매 학년도 ○월 중에 실시한다. 단, 학교 실정에 따라 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제51조(임기) 학생회 회장·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임원이 사고 및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결원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며, 전임자의 남은 기간 동안 재임한다. 단, 남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일 때는 선출한다.

제52조(입후보자 등록) ① 회장·부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이 공고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의 자격을 심사하여 이를 공고한다.
- ③ 기간 내에 후보자 등록이 없을 시 재공고를 통해 실시한다.

제53조(선거운동) 선거운동은 입후보자의 등록 후 정해진 기간에 행할 수 있으며, 입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선거관리위원 회는 선거일 공고 후 교내에서 충분한 선거운동기간(3일 이상)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 단, 선거운동이 수업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54조(투표 및 개표) ① 투표는 기표소 또는 온라인 투표를 이용하여 해당 입 후보자의 기표란에 기표한다.

- ② 유권자는 선거인 명부를 통해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투표에 참여한다.
- ③ 개표는 정해진 장소에서 입후보자 및 입후보자가 추천하는 참관인 1명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제55조(당선인)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 결과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하며 학교장은 당선인 확정 후 바로 공고한다.

- ②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3일 이내에 최다득표자들만을 대상으로 재투표를 실시한다. 재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 대의원회에서 투표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 ③ 단독 출마의 경우 전체 학생 과반수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수의 1/3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하며, 1/3 이상을 득표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선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7일 이내 재선거를 한다.
- ④ 당선자 및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대의원회에서 대의원회 의결 규정에 따라 선출한다.

제56조(무효)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기간 중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입후보자에 대하여 입후보 자격을 상실하게 하거나 당선 무효를 결정한다.

- 1. 등록원서를 부당하게 작성한 경우
- 2. 선거관리위원, 입후보자, 유권자에 대하여 폭행·협박·유언비어 유포 등의 행위를 한 경우
 - 3. 교내외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경우
 - 4. 선거관리위원회의 규정에 따르지 않은 경우
 - 5. 선거운동 시 유권자와 금품 수수가 있는 경우
 - 6. 기타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거나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제57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별도로 결정할 수 있다.

제9장 학급회 선거

제58조(목적) 학급회 임원 선거가 학생 스스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함으로써 올바른 선거의식과 학생의 자치 능력을 키우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제59조(입후보자의 자격) 학급회 임원의 자격은 각 학급의 재학생으로 하며 이 규정 제9조에 따른다.

제60조(선거의 방법과 절차) ① 학급반장・부반장(봉사위원)은 투표로 선출한다.

- ② 개표 결과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 ③ 최다득표수가 2인 이상인 경우 최다득표자들만을 대상으로 재투표 한다.
- ④ 학급회 각 부장은 학급 반장이 추천하여 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 ⑤ 학급 임원의 선출은 3월 이내에 실시하며, 선출된 임원은 학교장이 임명한다. 단, 학교 실정에 따라 학기별로 실시할 수 있다.

제10장 재정

제61조(예산편성) ① 학생자치기구의 운영비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한다. ② 학생자치기구에서는 다음 연도 예산인 편성단계 이전에 학생자치회 예산안을 대의원회를 통해 확정하여 본 예산안에 반영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추진 일정은 학교 실정에 따라다를 수 있다.

제62조(지출) ① 학생자치회 운영비는 학생자치회 활동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② 예산을 지출할 때는 대의원회의 결의에 따라 학생회장이 요구하고 담당지도 교사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집행한다.

제63조(결산) 학생회장은 임기 만료 전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학생회의 심의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장 규정의 개정

제64조(개정 절차) 본 규정의 개정 절차는 학생생활제(齊)규정의 개정절차를 따른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1. 학생회 선거관리규정(안)

※※ 본 개정 표준안은 참고 자료이며, 표준안에 대한 의의, 관련 법령, 기본 방침 및 유의 사항 등을 참고하여 각 학교의 학생, 보호자(학부모 등), 교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교의 특성에 따라 보충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학교 학생회 선거관리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 학생자치회 임원 선거(이하 '임원 선거')가 학생 스스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함으로써 올바른 선거의식 과 학생의 자치 능력을 키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학생자치회 회장 선거와 부회장 선거에 적용한다.

제3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임원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고 진행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선거일 ○일 전까지 구성해야 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후보자로 출마하지 않는 학생 중 지원을 받고 대의원회의 무기명 투표로 ○~○인으로 구성한다. 단, 희망자가 위원회의 정원과 같을 경

- 우 투표를 생략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위원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하고, 위원 명단을 선거 공고일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진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 ⑥ 위원의 임기는 선거공고일로부터 재선거, 보궐선거 등을 포함하여 선거가 종료된 때로 한다.
- ⑦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다.
- ⑧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선거인 명부 관리에 관한 일
 - 2. 후보자 등록 관리에 관한 일
 - 3. 선거운동 방법 및 관리에 관한 일
 - 4. 투표와 개표에 관한 일
 - 5. 당선인 결정과 공고에 관한 일
 - 6. 선거에 관한 이의 사항의 심사 · 처분
 - 7. 투표 참여 안내와 선거의 중요성 등 선거 홍보에 관한 일
 - 8. 기타 선거에 관한 필요한 일

제4조(선거일 공고) 선거일은 학생자치회 협의를 거쳐 학교장이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승인하되, 늦어도 선거일 14일전까지 공고한다.

제5조(선거권자) 임원 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자(이하 '선거권자')는 선거일 공고일 기준으로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으로 한다.

제6조(선거인 명부 작성) ① 학급회는 선거일 공고일 ○일 이내에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때 학급명렬표(출석부) 사본을 선거인 명부로 대신 사용할 수 있다.

② 학급회는 선거일에 선거인 명부 작성일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 전학 등으로 인하여 선거인 명부에 변동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여 전학 간 학생의 경우에는

선거인 명부에서 삭제하고, 전학 온 학생의 경우 선거인 명부에 수기로 직접기재하여 선거인 명부를 확정한다.

제7조(후보자 자격) 임원 선거의 후보자는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다.

제8조(후보자 등록) ① 임원선거에 후보자가 되려는 학생은 등록 기간 내에 서류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후보자 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제출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후보자 등록 신청서 1부
- 2. 공약서 1부
- ② 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마감 후 즉시 임원 선거 후보자의 기호를 추첨으로 결정하고 후보자 등록 상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후보자의 징계 및 조치사항 공개) ① 징계 기록(적용 기간, 징계 수준)은 선 거관리위원회 등 공식적인 합의 절차를 통해 선거권자에게 공개할 수 있다. 단, 이 조항은 학생회 회장, 부회장 후보자 및 학급회 반장, 부반장 후보자로 한하며 적용 기간 및 징계수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적용 기간: 입후보 등록일자로부터 이전 1년 이내의 징계 기록
- 2. 징계 수준: 적용 기간에 처분받은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
- ② 임원 선거 후보자의 징계 및 조치 사항 공개 기간은 후보자 등록 이후부터 선거일까지 공개하며 선거일 후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는다.

제10조(후보자의 사퇴) ①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원회에 본인이 임원선거 후보사퇴서를 작성하여 직접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교선관위는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선거운동) ① 선거 운동 기간은 위원회가 지정한 기간으로 한다.

- ② 선거 운동은 후보자와 선거권이 있는 학생 중에서 ○○명 이내의 선거운동 원만 할 수 있다.
- ③ 후보자는 제2항의 선거운동원을 둘 때는 그 명단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

- 다. 선거운동원이 변경될 때도 또한 같다.
- ④ 후보자는 선거운동원과 함께 쉬는 시간,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지정된 장소와 시간에 개인 소견을 발표할 수 있다. 단, 선거운동이 수업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12조(등록 무효) ①위원회는 후보자와 그 보호자, 선거운동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최초로 할 때는 1차로 경고하고, 재발 시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다.

- 1. 선거권자에게 음식물 또는 선물 등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하는 경우
- 2. 다른 후보자를 헐뜯거나 거짓말을 퍼뜨리는 경우
- 3. 후보자가 선거운동원 신고와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선거운동을 할 때
- 4. 우리 학교 선거 협약에서 정한 이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 또는 등록을 무효로 결정할 때는 사전에 관련자에게 설명의 기회를 준다.

제13조(홍보 포스터) ① 후보자는 기호, 이름, 사진, 자기소개와 공약사항 등의 내용이 들어간 후보자 홍보 포스터를 출력물 형태 또는 파일 형태 등으로 후보자 등록 마감일 ①일 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후보자가 제출한 홍보 포스터를 학생이 많이 다니는 복도나 게시 판 등에 후보자의 기호순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붙인다.

제14조(소견 발표회) ① 후보자는 합동 소견 발표회(토론회)와 개인소견 발표회 등을 통하여 자신의 소견과 공약사항 등을 선거권자에게 알릴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선거 기간 중 선거권자 전체를 대상으로 1회 이상의 합동 소견 발표회(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③ 합동 소견 발표회(토론회)의 발표 시간은 후보자마다 ○○분 이내로 하고 발표순서는 추첨 혹은 후보자 기호 순서에 따라 진행한다.
- ④ 후보자는 선거운동원과 함께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교실이나 학생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개인 소견을 발표할 수 있다. 이때 학교 수업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 ⑤ 후보자별로 선거운동원 중에서 지지 연설자를 지정하여 개인 소견 발표회에서 지지연설을 받을 수 있다.
- ⑥ 위원회는 모든 후보자에게 선거 협약에 따라 SNS 및 유사한 방법을 활용한 선거운동 허용 여부를 반드시 안내해야 한다.

제15조(선거비용) 학교에서는 선거운동에 필요한 물품구매를 위한 선거 운동비를 관련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투표) ① 선거권자 1인 1표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 ② 위원회는 선거 ○일(시간)까지 투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투표용지를 작성하여 ○일 전까지 만든다. 그 비용은 학교에서 부담한다.
- ④ 투표는 위원이 관리한다. 다만 위원만으로 투표관리를 다 할 수 없을 때는 투표소에서 투표사무를 도와줄 학생을 선정할 수 있다.
- ⑤ 위원회는 모든 학생이 투표소 위치, 투표 절차 등을 알 수 있도록 자세히 알려야 한다.
- ⑥ 후보자는 투표소마다 투표 참관인을 1인씩 선정하여야 하며, 그 명단을 선거일 전날까지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 ⑦ 투표참관인은 투표 진행 과정에서 잘못이 있는 때에는 위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은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바로 시정해야한다.
- ⑧ 위원은 선거권자가 제시한 학생증과 투표자 명부를 대조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선거권자가 선거인 명부에 서명한 뒤 투표용지를 1매를 준다. 단, 학생증을 분실하면 2인의 선거권자 또는 담임교사가 확인 증명한 후 투표용지를 준다.
- ⑨ 위원장은 투표가 끝나면 투표 상황을 기록하고 투표함과 남은 투표용지를 투표 참관인과 같이 개표장소로 옮겨야 한다.
- ⑩ 전자투표를 실시할 때에는 위원회 별도의 계획에 의한다.

제17조(개표) ① 위원회는 선거 ○일 전까지 개표 장소를 결정하고, 투표가 끝

나기 ○시 전까지 개표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② 개표사무는 위원이 담당한다. 다만, 위원만으로 개표 관리를 다 할 수 없을 때는 개표사무를 도와줄 학생을 선정할 수 있다.
- ③ 후보자는 개표참관인 1명을 선정하여야 하며, 그 명단을 선거일 전날까지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④ 개표 참관인은 개표 진행 과정에서 잘못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할 때는 바로 시정하여야 한다.
- 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 1. 위원회가 작성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 2. 어디에도 정해진 표기를 하지 아니한 것
 - 3. 두 후보자 이상에 기표한 것
 - 4. 어느 난에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
 - 5. 정해진 기표 대신에 다른 기호나 표시를 한 것
- ⑥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투표지는 유효로 한다.
 - 1. 한 후보자에 2개 이상의 정해진 기표를 한 것
- 2. 후보자의 구분선상에 정해진 기표한 것으로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
- 3. 정해진 기표한 것이 옮겨 묻은 것으로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했는지 명확한 것
- ⑦ 위원장은 개표가 끝나면 즉시 개표 결과를 발표하고 선거록을 작성한다. 이때 개표 결과는 득표수를 제외하고 순위를 공개한다.
- ⑧ 전자투표를 한 경우 개표 방법 및 결과 처리는 위원회의 협의로 결정하여 실시한다.

제18조(당선인 결정) ① 위원회는 개표 결과 최다득표 후보자들을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② 후보자등록 마감 후 후보자가 1명인 경우 당해 임원선거에 등록한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시행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가 당선으로 결정한다.
- ③ 개표 결과 최다득표자의 득표수가 같을 때가 두 명 이상이면 최다득표자들

만을 후보로 재투표를 한다. 이때 재투표 일시는 위원회 회의를 통해 결정하고, 재투표 후에도 가장 표를 많은 받은 후보자의 득표수가 같을 때 대의원회에서 투표를 통해 당선인을 결정한다.

④ 위원장은 당선인 결정 후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장은 당선인을 공고하여 야 한다.

제19조(당선무효) ① 선거운동 기간에 당선인이 ○○○규정의 제00조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 운동을 한 것이 확인되면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선을 무효로 결정할 수 있다.

②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 ○○○○규정의 제00조에 따라 ○○○○ 이상의 징계를 받아 학생자치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을 때 당선을 무효로 결정할 수 있다.

제20조(재선거)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선거를 실시한다.

- 1. 제00조에 따른 당선 무효 결정이 있을 때
- 2.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퇴하였을 때
- 3. 그 밖의 학교장이 부정선거 등으로 선거 전부를 무효로 결정한 때
- ② 재선거는 위원회 회의를 통해 정하고, 재선거 절차는 처음에 실시했던 선거의 절차와 같이 실시한다.

제21조(보궐선거) ① 학생자치회 임원이 전학 등의 사유로 공석이고, 잔여기간 이 ○개월 이상일 경우 보궐선거를 할 수 있다.

- ② 보궐선거는 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정하고, 보궐선거 절차는 처음에 실시했던 선거 절차와 같이 실시한다.
- ③ 보궐선거 미시행으로 회장이 부재할 시 대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회장 대행 체제로 운영할 수 있다.

제22조(선거에 관한 이의신청) ① 선거 과정과 당선인 결정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후보자 또는 학생은 당선인 공고 후 ○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일 이내에 조사를 실시한 후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사전에 이의신청자와 관계자를 불러 신청 취지와 해명을 들은 후 결정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와 관계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③ 선거 과정에서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후보자 또는 학생은 결정을 통보받은 ○일 이내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일 이내에 회의 등을 통해 결정하고 그 결과를 후보자에게 통보한다.

제23조(보칙) ① 위원회는 선거록과 투표지를 ○개월 보관하여야 한다.

②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하였거나 규정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부칙

제1조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학생자치규정 Q&A

Q1. 학생자치와 학교생활과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에 학생 참여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서는 규정의 정비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1. 학교규칙 제·개정을 심의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학생대표가 참석하여 의견을 내거나 학교공동체의 일원으로 주요 운영사항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02. 선거관리규정을 반드시 별도로 두어야 할까요?

==> A2. '선거관리규정'을 반드시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생활규정에 선거에 관한 내용을 개괄적으로 명시하고, 자세한 사항은 선거시행세칙으로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선거 관리에 대한 내용은 규정 혹은 세칙 등으로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03. 선거관리규정 외에 세부적인 선거 약속을 다른 방식으로 정해도 되나요?

==> A3. 학교에 따라 '우리 학교 선거 협약' 등에 구체적인 선거운동 방식을 규정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협약에 따라 선거 과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와 같은 사안이 생겨 온라인으로 선거를 진행할 때 규정 개정을 하기보다 협약 등을 통해 세부 운영사항을 정하기도 합니다.

Q4. '학교내의 봉사'의 징계를 받은 학생에 대한 피선거권 제한을 해도 괜찮을까요?

==> A4. 네. 징계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징계를 이유로 피선거권을 전면 제한하는 것은 차별행위가 될 수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례가 있기도 했습니다. 특히 임원자격 기준에서 '출 석사항이 90%이상인 자', '학교내의 봉사 이상 징계를 받은 학생' 등은 출결 및 징계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제한이므로 개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학교 내의 공식적인 합의절차를 통해 결정(적용기간, 징계수준 등) 된 피선거권자의 징계기록을 선거권자에게 공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Q5. 초등학교의 경우 전교학생회 정·부회장 선거 투표권을 4학년부터 주 면 될까요?

==> A5. 민주주의 국가에서 모든 국민은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학교에서도 학생은 입학과 함께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이라는 이유로 투표권을 제한하는 것은 개인이 가지는 참여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전교생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저학년 학생이 자신을 학교 구성원으로 생각하고 직접 투표를 경험하는 것 자체로 민주시민교육의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저학년 학생은 선거 후보자의 공약 의미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가질 수 있기에 공약을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풀어서 설명하는 등의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Q6. 전교어린이희 규정이나 다모임규정만 있으면, 학생자치규정을 보완하여 개정해야 할까요?

==> A6. 초등학교의 경우 전교어린이회 규정이나 다모임규정을 학생자치 규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표준안에 따른 목적, 근거, 회원 및 구성, 권리와 의무, 활동, 임원자격 등의 내용이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회'라는 용어 보다는 '학생회'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학생의 권리와 의무를 보장함과 동시에 학생자치를 실현하고 민주적인 학 교문화 조성을 위해 자기결정권을 강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표준안은 도교육청이 권장하는 안으로써 단위학교는 이 규정을 준용 하여 학생생활제규정을 제·개정하되, 학생·학부모·교직원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하여 학교 현장의 실정에 맞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3. 학생자치규정 참고 사항

가. 학생자치규정의 의의

학생자치활동은 학생이 학교공동체의 한 주체로 '학교운영에 관한'의 사결정에 참여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 목적이다.

학생자치규정은 학생자치 조직의 구성과 운영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해놓은 것으로, 학생자치 조직의 구성과 대표자 선출 및 권한과 책임, 의사결정 및 집행, 예산 편성과 결산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된다.

나. 학생자치기구의 조직 및 구성

학생은 학생자치활동을 통해 「대한민국헌법」과 「교육기본법」에서 강조하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성장 기회를 갖는다. 학생자치활동을 통해 자신과관련된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과 그에 따르는 책임 등 공동체 생활을 경험하는 과정 자체가 민주주의를 배우는 교육 활동의 장이다.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해 구성된 학생자치기구는 학생의 의견을 대표 하는 기구이며, 주로 학생총회, 대의원회, 학생회, 학급회, 동아리연합회 등 으로 구성된다. 이외에도 학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구를 만들 수 있으 며 학생자치규정에는 각 기구의 성격, 권한, 임무 등을 명시한다.

〈 학생자치기구 조직 〉

구분	주요 내용
지 계 초 최	학생총회는 학생자치회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전체 학생의
학생총회	직접적인 의견으로 의결할 사안이 있을 때 개최
리이이성	학생대표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기구로 학생자치와 관련된 사
대의원회	항에 대해 의견 수렴 및 심의·의결
	학생 선거에 의해 선출된 학생회장, 부회장, 각 부 부장 및 부
학생회	원으로 구성된 공식적 학생 조직으로 학생자치와 관련된 의결
	사항을 집행 및 학생자치활동 사항 운영
	각 학급을 대표하는 기구로 학급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급
학급회	자치활동 운영
드시키어킹청	동아리 학생을 대표하는 조직으로 동아리 관련 사항에 대해 의
동아리연합회	견 수렴 및 운영

다. 학생자치규정 주요 개정 권고 사항

학생자치활동의 구체적 보장 명시를 통한 실질적 학생자치권 보장

(학생회 권리와 역할) 학생자치규정 내 자치활동 참여 권리, 학생자치 조 직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 등 학생자치활동 및 학생생활과 관련한 협의·지원사항을 명시하여 실질적 학생자치권 보장이 필요함

(학생회 권한과 역할) 학생자치회의 목적은 학생이 학교생활의 주체로서 민주적인 자치활동에 참여하며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르는 데 있으므로, 학생회가 학생자치기구로서 수행하는 역할 중 통제와 감시가 목적인 생활규율 확립 등의 임무 관련 규정은 삭제하도록 권고함. 대신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학급 규칙', '생활협약' 제정 등 자치활동 목적에 맞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을 권고함

(임원의 업무 및 권한) '학급을 대표하며 담임교사를 보좌한다', '학생지도위원회'등의 내용은 학생자치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삭제 또는 '학생자문위원회'등을 통한 학생회 지원 및 학생자치회의 대표로서수행하는 역할로 개정이 필요함

(운영위원회 부서) 학생자치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에 있어 '선도부'의 구성과 '교내·외의 학생생활을 선도하고, 질서 확립을 위하여 활동한다.' 등과 유사한 조항(학생을 교육(지도)할 권한은 교원에게만 있음)은 학생이 학생을 선도하는 과정에서 학교폭력사안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어 개정이 필요함. 그리고 학생생활에 있어 기본권은 학생 간의 통제와 감시가 아닌 민주적 학교규칙 마련 등을 통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과도한 학생자치 참여권 제한 완화를 통한 학생자치권 증진

(학생회 입후보 자격) '학교내의 봉사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등과 유사한 규정은 징계행위의 종류와 징계의 경중, 적용기간 등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어서, 입후보자에 대한 과도한 피선거권 제한으로 학생자치활동 보장을 과도하게 제한할 소지가 있으므로 개정을 권고함. 또한, 공동체의 합의에 의해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

처분에 대해 특정 기간 동안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도 있겠으나, 기본권 침해 최소화를 위해 피선거권 제한을 없애고 선거권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일정기간 내(6개월, 1년 이내 등) 입후보자의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 기록을 공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학생회 입후보 자격) 회장·부회장 입후보 자격 요건으로 담임교사나 학생생활지도담당교사 등의 추천을 받도록 한 규정은 선거권자가 아닌'교사의 추천'을 필수 요건으로 명시하여 학생 자치참여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으므로 삭제를 권고함
- (학생회 임원 자격상실 기준) '학교선도위원회에서 결정된 학교내의 봉사 이상의 징계처분이 확정되었을 때' 등과 유사한 규정의 경우, 징계행위의 종류와 징계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합리적인 이유없이 징계이력을 사유로 한 차별에 해당함. 임원 자격상실 기준으로 징계처분 요건을 포함할 경우 적용 기간, 징계의 경중 등 합리적인 비례원칙이 적용되어야 함

실질적 학생자치활동 보장을 통한 학생자치권 증진

- (활동) '학생회의 모든 활동은 학칙과 본 규정의 범위 내에서 학생의 본 분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 와 유사한 규정은 모호한 표현(학생의 본분에 맞는)의 사용으로 자의적이고 주관적으로 해석되어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 권고함
- (선거의 방법과 절차) 학생이 아닌 교사나 타인의 지도에 의해 실시되는 학생회 선거는 실질적 학생자치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학생회의 임원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거를 합리적이며 공정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이와 유사한 규정은 정비가 필요함
 - ※ 초등학교의 경우, 자문의 영역에서 전교학생회(전교어린이회)의 역량을 고려하여 실정에 맞게 지원할 수 있음
 - ※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 등)도 입학 선언과 함께 해당 학교의 학생 이 되므로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을 권장함

- (당선인) '선거 결과 득표수가 같을 시 대의원회에서 투표로 결정한다'와 유사한 규정은 실질적 학생자치권 보장을 위해, 재투표를 실시하고 재투표 실시 결과 역시 같을 시 대의원회 의결 규정에 따라 선출하도록 개정 권고함
- (당선인) '학생회 임원 선거에 단독출마한 경우 교직원회에서 결정한다' 등과 유사한 규정은 실질적 학생자치권 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전체 학생의 과반수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 수의 1/3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는 등 직접 선거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합리적인 선거 과정을 마련하도록 개정이 필요함

4. 학생자치규정 관련 서식 [서식 4-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공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공고

년 월 일 실시하는 학생회 선거를 관리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년 월 일

○○학교 선거관리위원회(인)

위 원 명 단

구 분	학년 - 반	성 명	비고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후보자 및 투표에 참여하는 학생은 선거기간 동안 궁금한 점 또는 급한 일이 생겼을 경우 선거관리위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 4-②] 선거일공고

선 거 일 공 고

년도 학생회 선거의 일정과 입후보 자격 요건 등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년 월 일

○○학교 선거관리위원회(인)

1. 선거일정

구 분	일 시	장 소	비고
후보자 등록			
선거운동 기간			
합동 소견 발표회			
투 표 일			
개 표 일			

2. 후보자 등록 시 제출서류

- 가. 후보자 등록 신청서 1부
- 나. 공약서 1부

3. 입후보자격

가. 년 월 일 현재 본교 재학생으로 회장은 ○학년에, 부회장은 ○학년 또는 ○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4. 입후보자 확인 사항

- 가. 후보자의 징계 및 조치 사항이 있는 경우 학교선거관리규정 및 학생자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자에게 공개할 수 있음
- 나. 당선된 이후라도 학교선거관리규정 및 학생자치규정에 따라 자격 상실 기준에 해당할 경우에는 자격을 상실함

[서식 4-③] 선거인명부(투표자 명단)

※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지 않고 학급 명렬표(출석부)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선 거 인 명 부

학년 반

번 호	성 명	서 명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작성일: 년 월 일

작성자: 학년 반 학급반장 (서명)

[서식 4-④] 후보자 등록 신청서

후 보 자 등 록 신 청 서

성 명		
학년·반	생년월일	

본인은 년 월 일 실시하는 학생회 선거의 (회장·부회장) 후보자로 등록을 신청합니다.

붙임 1. 공약서 1부.

년 월 일

위 본인: (서명)

[서식 4-⑤] 후보자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후보자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안녕하십니까?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학생회 선거에 필요한 후보자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관하여 학생과 보호자(학부모 등)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의 내용을 확인하신 후 해당란에 ☑ 표시 및 서명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서

업무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학생 회 선거 후보자 등록	 ● 수집이용목적: 학생회 선거 후보자 등록 공고 ● 수집항목: 학교, 학년, 반, 성명, 선거 관련 영상정보(사진, 동영상), 징계기록(필요시) ● 이용 및 보유기간: 학생회 선거 후보자등 록 이후부터 선거일까지 활용될 예정입니다. 	 제공받는 자: 학생회 선거 후보자 소속교 재학생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학생회 선거 후 보자 정보 공개 제공하는 항목: 학교, 학년, 반, 성명, 선거 관련 영상정보(사진, 동영상), 징계기록 (필요시)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학생회 선거 후보자등록 이후부터 선거일 까지 활용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 □ 예 □ 아니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예 □ 아니오

본인은 위에 명시된 개인정보 활용 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학교()학년()반()번 학생성명: (서명)
보호자(학부모 등) 성명: (서명)

* 수집한 개인정보는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한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 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서식 4-⑥] 공약서

공 약 서

공	약 1.
선정 이유와 기대 효과	구체적인 실천 계획(예산 포함)
공	약 2.
선정 이유와 기대 효과	구체적인 실천 계획(예산 포함)
곳	약 3.
	1
서저 이용이 기계 중계	구체적인 실천 계획(예산 포함)
선정 이유와 기대 효과	구세적인 절선 계획(예산 포함)
	T. Control of the Con

[서식 4-⑦] 후보자등록공고

후 보 자 등 록 공 고

년 월 일 실시하는 학생회 선거의 후보자로 아래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년 월 일

○○학교 선거관리위원회(인)

학생회 선거 후보자 명단

	ਨੀ 71	7	÷ н	7 1.					부	회	장	후	보 자				
	회 장	<u> </u>	<u>수 모</u>	^[С	학	년				0	학	년		
기호	학년・	반	성별	성	명	기호	학년 •	반	성별	성	명	기호	학년·변	반	성별	성	명
1	학년	반				1	학년	반				1	학년	반			
2	학년	반				2	학년	반				2	학년	반			
3	학년	반				3	학년	반				3	학년	반			
4	학년	반				4	학년	반				4	학년	반			
5	학년	반				5	학년	반				5	학년	반			

[서식 4-⑧] 후보자 사퇴신고서

후 보 자 사 퇴 신 고 서

1. 학년·반: 학년 반

2. 성 명:

3. 사퇴이유 :

본인은 년 월 일 실시하는 학생회 선거의 (회장·부회장) 후보자를 사퇴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위 본인: (서명)

[서식 4-⑨] 후보자 등록 (무효/사퇴) 공고

후보자 등록 (무효/사퇴) 공고

년 월 일 실시하는 학생회 선거의 (회장·부회장) 후보자가 아래와 같이 (무효/사퇴)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년 월 일

○○학교 선거관리위원회(인)

등록 (무효/사퇴) 후보자 명단

구 분	기 호	후보자 성명	등록 (무효/사퇴) 연월일	등록 (무효/사퇴) 이유

※ 구분란에는 등록 "무효" "사퇴"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서식 4-⑩] 학생회 선거운동원 신고서

학생회 선거운동원 신고서

년 월 일 실시하는 학생회 선거의 (회장/부회장) 선거운동원을 아래와 같이 신고합니다.

학생회 선거운동원 명단

번 호	학년·반	성 명	선임·교체	비고
1	학년 반			
2	학년 반			
3	학년 반			
4	학년 반			
5	학년 반			
6	학년 반			
7	학년 반			
8	학년 반			
9	학년 반			

[※] 교체시에는 ○○○와 교체라고 기재합니다.

년 월 일

후보자 (서명)

[서식 4-⑪] 투표용지

** 회장과 부회장 선거를 각각 실시하는 경우 투표용지는 색상을 달리하여 각각 작 성할 수 있습니다.

투표용지

학생회 선거 투표

기 호	<u>-</u>	후보자	기 표 란
1	회장		
2	회장		

기호	후브	보자	기 표 란
1	부회장		
2	부회장		
3	부회장		
4	부회장		
5	부회장		

○○학교 선거관리위원회

[서식 4-⑫] 투표 및 개표 참관인 신고서

투표 및 개표 참관인 신고서

년 월 일 실시하는 학생회 선거의 투표 및 개표 참관인을 아래와 같이 신고합니다.

1. 투표참관인 명단

학년·반	성 명	비 고
학년 반		
학년 반		
학년 반		

2. 개표참관인 명단

학년·반	성 명	비 고
학년 반		후보자
학년 반		참관인
학년 반		참관인

년 월 일

후보자 (서명)

[서식 4-3] 학생회 선거 개표결과

학 생 회 선 거

개표결과

		후 보 자 별 득 표 수						п -		투표율
선거인수 (가=나+마)	투표자수 (나=다+라)	1	2	3	4	5	계	무 효 투표수 (라)	기권수 (마)	(%)
							(다)	(4)	, , ,	(나/가)

검 열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부위원장	위	원	장

[※] 회장과 부회장 선거를 각각 실시하는 경우 집계표를 따로 준비하여 집계합니다.

○○학교 선거관리위원회(인)

[서식 4-44] 학생회 선거 선거록

학생회 선거 선 거 록

1. 투·개표

가. 투표장소 : 나. 개표장소 :

2. 투·개표 일시

가. 투표일시: 년 월 일 시 분 ~ 시 분 나. 개표일시: 년 월 일 시 분 ~ 시 분

3. 투표상황 및 후보자별 득표상황

7 H		하 자 러	7]	부 회 장 선 거						
구 분	회 장 선 거				○학년			○학년		
선거인수			인			인			인	
투표자수			인			인			인	
기권자수			인			인			인	
	기호	후보자 성 명	득표수	기호	후보자 성 명	득표수	기호	후보자 성 명	득표수	
후보자별	1		丑	1		丑	1		丑	
두포시 <u> </u>	2 3		丑丑	2 3		丑丑	2		丑	
	4		丑	4		丑	3 4		丑	
	5		丑	5		丑	5		丑	
무 효 투표수			丑			丑			丑	

4. 당선자 명단

	회 장		부 회 장				
기 호	후보자 성명	학년·반	기호	후보자 성명	학년·반		

이 선거록은 사실대로 기록하였습니다.

		년	월	일
위 원	장			(서명)
부위유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	_			. , . ,

[서식 4·⑮] 당선자 **공고**

당 선 자 공 고

년 월 일 실시한 학생회 선거의 당선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년 월 일

○○중·고등학교 선거관리위원회 (인)

당선자 명단

회	장	부 회 장				
학년·반	성 명	학년·반	성 명			

[서식 4-⑯] 당선증

당 선 증

소속: 학년 반 성명: 〇 〇 〇

위 후보는 년 월 일 실시한 학생회 선거에서 (학생회장/부회장) 당선 인으로 결정되었으므로 당선증을 드립니다.

년 월 일

○○중·고등학교 선거관리위원회 (인)

[서식 4-⑰] 이의 신청서

학생회 선거에 대한 이의 신청서

1. 신 청 자 :						
2. 이의 신청 요약:						
3. 증빙자료						
학생자치규정 제○○, 학생회 ·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선거관리규정	제○○에 의거히	하여	○્રે	헌거에	있어
			١	킌	월	일
		신청인	:			(서명)

V기숙사학생생활규정

1. 기숙사학생생활규정 표준안

※ 본 개정 표준안은 참고 자료이며, 표준안에 대한 의의, 관련 법령, 기본 방침 및 유의 사항 등을 참고하여 각 학교의 학생, 보호자(학부모 등), 교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교의 특성에 따라 보충 또 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1장 기숙사학생생활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열악한 학습 환경 대상자와 원거리 통학 학생 등에게 학업 편의 및 면학 공간을 제공하고 공동체 생활을 통하여 타인을 배려하는 인권 친화적 환경 조성과 협업할 줄 아는 성숙한 민주시민의 자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기숙사운영위원회

제2조(기숙사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숙사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기숙사 운영 규정 제정 · 개정에 관한 사항
 - 2. 기숙사 운영비 등 보호자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 3. 입사 학생 선발 및 퇴사에 관한 사항
 - 4. 기숙사 운영 연간 계획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기숙사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및 운영)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 ~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 ③ 위원은 교직원 대표, 보호자 대표, 학생 대표로 구성하되, 교직원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40%를 초과하지 못한다. 단, 특수학교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구성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 ④ 운영위원회는 학생의 기숙사 생활에 관련된 사항은 기숙사학생자치회(이하 '자치

회'라고 한다.) 대표자 참여와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신학기 개시 2주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 ② 임시회 소집은 위원장, 학교장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소집한다.
- 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학교장은 간사 1명을 임명한다.

- ② 위원회 간사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위원회 운영 관련 사무(회의 개최 안내, 안건 심의 정리 등)
 - 2. 위원회 의결 사항 시행
 - 3. 기타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 * '기숙사소위원회' 설치는 단위 학교의 상황에 따라 구성 유무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설치가 필요할 시에는 학교기숙사 운영 길라잡이 매뉴얼에 따라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제3장 기숙사학생자치회

제8조(기능)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의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생활을 위하여 기숙사학생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를 둔다.

※ '기숙사학생자치회'는 해당 학교 기숙사 생활에 참여하는 학생수(규모)와 교육공동체의 의견에 따라 기숙사 학생자치회를 구성하여 운영 유무를 결정하거나 단위학교 실정에 적합한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제9조(회원의 자격) 자치회 회원은 ○○학교 기숙사 입사 중인 학생으로 한다.

제18조(자치회 임원의 구성 및 임무) 자치회 임원의 구성 및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자치회 임원은 회장, 부회장, 학년 대표 등으로 구성한다.
- 2. 임원의 임무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회장은 자치회를 총괄하며 안전하고 편리한 기숙사 생활을 위한 각종 안건 협의 및 건의를 한다.
 - 나. 부회장은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역할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역할을 대행하다.
 - 다. 학년대표는 각 학년을 대표하며 회장 및 부회장의 활동을 지원한다.
- * 일부 학교에서는 각 호실마다 '방장(실장)'을 두고 점호 및 점검, 청소 확인 등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를 지 양하고 다른 방법으로 각 호실을 운영할 것을 권장합니다.
- 매주 순번을 통한 당번(책임)제 운영 방법 권장
- 각 호실마다 동학년이 생활할 것을 권장 ☞ 여러 학년이 섞여 생활할 경우, 선후배 문화, 학교폭력 등에 노출될 위험이 있으므로, 같은 학년끼리 생활함으로써 학업과 휴식문화 등에 동질성 회복

제19조(임원 선출 및 임기) 임원 선출 및 임기는 다음 호에 따른다.

- 1. 자치회의 임원는 회원의 민주적인 선거와 투표에 따라 선출한다.
- 2.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3. 임원이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을 시 보궐선거를 하며,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일부 학교에서는 '기숙사학생자치회' 운영에 참여하는 '회장, 부회장, 학년대표, 층장'에 대해 '봉사활동시간'으로 인정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로 기숙사생활을 할 수없는 학생에 대해서는 '기회의 평등'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20조(심의사항) 자치회는 원활한 입사생활을 위하여 세부사항을 자치적으로 결정하며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심의한다.

- 1. 자치회 회칙 제·개정에 관한 사항
- 2. 기숙사생활수칙 등에 관한 사항
- 3. 기숙사 생활에 따른 건의 · 요구 등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자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21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회 이상 실시한다.

- ②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1. 자치회 회장이 회의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
 - 2. 자치회 회원 1/3 이상이 회의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
- ③ 자치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회의 개최 일정 등을 사감과 협의 한다.
- ④ 학교장과 기숙사 담당 교직원과 사감은 자치회의 권한을 보장하고 자치회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한다.
- ⑤ 자치회 결정사항은 기숙사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4장 입사 및 퇴사

제22조(입사 정원) 기숙사의 입사 정원은 ○○명이며 각 학년별 배정 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학년별 배정 인원은 1학년 ○명(○%), 2학년 ○명(○%), 3학년 ○명(○%)으로 하다.
- 2. 학년별 남녀 배정 비율(남녀공학일 경우)은 입사 지원 상황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3. 학년별 입사 희망자가 부족할 경우 입사기준에 따라 다른 학년의 입사 희망자로 충원할 수 있다.

제23조(입사 자격) 본교 학생으로 입사 선발 규정에 따라 정한다.

제24조(학생 선발) ① 기숙사 정원의 범위 내에서 입사 희망자 중 우선선발학생과 일반학생으로 구분하여 선발한다.

- ② 사회적배려대상자와 원거리 통학자가 우선 선발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사회적배려대상자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학생 또는 그 자녀
 - 다.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자녀

- 라. 기준중위소득 00%이하에 해당하는 학생 또는 그 자녀마.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
- 2. 원거리통학자(통학불편자)는 사회적배려대상자를 차감한 인원만큼 선발하되, 통학시간, 거리, 불편 등을 계량화하여 순위가 우선인 학생을 선발한다.
- ③ 일반학생의 선발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원거리 통학자 및 사회적 배려 대상자, 열악한 학습 환경에 있는 학생을 제외한 학생 중에서 일반학생을 선발한다.
 - 2. 일반학생에는 위원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 장애 학생도 포함된다.
- 3. 일반학생에는 입사 희망자 중 신청을 받아 추첨하거나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학생도 포함된다.
- ※ 학생 선발 시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선발해야 합니다.
- 1. 기숙사 정원의 범위 내에서 입사 희망자 중 우선선발학생과 일반학생으로 구분하여 선발한다.
- 2. 사회적배려대상자와 원거리 통학자가 우선 선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가. 일반 학생: 원거리 통학자 및 사회적 배려 대상자, 열악한 학습환경에 있는 학생을 제외한 학생
 - 나. 장애 학생: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 학생
 - 다. 기타 학생: 입사 희망자 중 신청을 받아 추첨하거나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학생

제25조(입사 제한 및 재입사)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에서 입사 제한할 수 있다.

- 1. 전염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
- 2. 평소 음주 또는 약물 오남용이 있는 경우
- 3. 최근 6개월 이내 각종 위원회에서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 조치를 받아 기숙사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4. 기타 위원회에서 입사 제한을 결정한 경우
- ② 재입사가 가능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퇴사 사유가 소멸된 경우
 - 2. 위원회에서 재입사가 결정된 경우

* 징계, 병력, 학년, 사생활 등의 특성을 입소자 선발에서 고려하고자 할 때에는 일부 특성을 일률적인 입소 제한 사유로 삼아서는 안 되며, 그러한 특성이 기숙사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하여 종합적이고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제26조(입사 기간) 입사 기간은 당해 학년말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제27조(퇴사) 퇴사는 입사기간 동안 임의로 퇴사할 수 없으나, 다음 각호의 경우 관련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퇴사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학생 및 보호자의 소명 기회를 부여한다. 단, 원에 의한 퇴사의 경우 학교장의 승인후 위원회에 사후보고를 할 수 있다. 퇴사는 월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1. 가정 환경 등의 부득이한 경우로 인정되어 학교장의 승인을 득한 학생
- 2. 법정전염병으로 확진되거나 피부질환 등으로 타인에게 전염시킬 우려가 있는 학생
- 3. 사감 및 담임교사에게 기숙사 생활수칙 위반이 수차례 확인되어 학교장이 퇴사를 명한 학생

제5장 기숙사생활수칙

제28조(일반적 사항) 학교 기숙사는 공동생활 장소이므로 입사생은 타인의 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아야 하며, 안전과 위생을 지키고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한다.

- 1. 타인의 생활을 존중하고 배려해야 한다.
- 2. 시설물을 고의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
- 3. 개인의 취미 생활이나 건강 관리 활동이 타인의 생활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 4. 전기와 물은 아껴 쓰고 함께 이용하는 기기들은 사용 방법을 지킨다.
- 5. 기숙사의 규정을 준수하고 사감의 지도를 존중해야 한다.
- 6. 외부인의 출입, 폭력 발생, 응급 환자 발생, 기타 긴급 상황이나 학교 측에 알려야 할 사항을 알게 되면 즉시 사감 등에게 알려야 한다.
- 7. 특정 질환이 있는 자, 특이 체질자, 특정 약을 일상적으로 복용하는 자 등은 반드시 사감에게 알려야 한다.
 - 9. 어떤 경우에도 폭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 10. 기숙사 출입 시에는 사감 등 기숙사 관리 관계자에게 신고한다.
 - 11. 몸을 청결히 하고, 개인 의류 등에서 악취 · 불쾌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12. 생활에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사감 등 기숙사 관리 관계자에게 알린다.
 - 13. 음주, 흡연을 금지하며, 약물 오남용을 해서는 안 된다.
 - 14. 촛불 점등 및 화기를 사용하는 행위는 일절 금한다.
- 15. 호실의 공용물품은 수시로 확인하고 훼손 상태 발견 시 즉시 사감실에 신고하다.
- 16. 창문 밖으로 휴지나 기타 이물질을 던지지 않는다.(방충망이 고정돼 있을 경우 방충망의 임의 조작 금지)

- 17. 변기에 휴지 등 이물질을 버리지 않으며(비누, 칫솔, 과일, 음식물 등 주의), 변기가 막히면 사감실에 준비된 압축 기구를 이용하여 해결한다.(해결이 안될 경 우 사감실에 신고한다.)
- 18. 등교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한 퇴실 시 냉난방 작동 유무를 확인하여 정지시키고 최종 퇴실자가 꺼짐 상태를 확인한다.
 - 19. 호실에 비입사생을 동반하지 않는다.
 - 20. 현금 등 귀중품을 호실 내에 방치하지 않는다.
- 21. 기숙사 시설물을 임의로 변용하거나 보조물을 설치하지 않는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학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 22. 개인적으로 애완동물이나 곤충 등을 키워서는 아니 된다.
- 23. 성냥, 라이터, 초 등의 인화성 물질 또는 폭발성 물질 등 위험한 물건을 반입하지 않는다.
 - 24. 기숙사생활 중 카드, 도박 등의 사행성 행위는 하지 않는다.
- 25. 학생은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음성이나 모습을 녹음, 녹화, 촬영하거나 이를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 26. 비상 상황 발생 시 각층에 설치되어 있는 비상탈출로프를 이용한다.

*기숙사생활수칙의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감 및 담당교사는 경중과 횟수에 따라 '주의, 경고'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반 사실이 '학교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될 경우 사안에 따라 '선도위원회(학교폭력심의위원회,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기숙사생활로 인하여 선도위원회(학교폭력심의위원회, 교권보호위원회) 결정 중, '사회봉사'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해당 학생은 기숙사생활 규정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 제29조(독서(정독)실 이용) ① 열람대(지정석 등)를 깨끗하게 사용하고 낙서를 해서는 안 된다.
- ② 독서실 입실 및 퇴실 시간을 지킨다.
- ③ 독서실 입실 시에는 휴대전화 전원을 끈다.
- ④ 음료수 등의 음식물 반입을 금한다.
- ⑤ 어학용 학습기기 등은 본인만 들을 수 있는 도구(헤드폰 등)를 사용해야 한다.
- 제30조(컴퓨터실 이용) ① 휴식시간 이외에 게임, 만화나 드라마, 스포츠 등의 동영상 시청, 기타 학습과 관련이 없는 용도의 사용은 금한다.
- ② 설치된 프로그램 이외의 프로그램 사용을 금하고, 필요 시 지도교사와 사전에

상의하도록 한다.

- ③ 본인의 자료는 반드시 별도의 개인용 저장 장치를 이용한다. (하드보안관이 설치되어 종료 시 자료 자동 소멸)
- ④ 입실 시 음료수 등의 음식물 반입을 금한다.
- ⑤ 설치된 프로그램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사용 중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사감실에 신고한다.
- ⑥ 저작권 침해나 개인정보 보호에 주의한다.

제31조(세탁물 관리) ① 세탁물은 개인용 바구니에 담아 보관하고 개인적으로 지정된 요일과 시간 및 장소에서 세탁한다.(부득이 해당일이 아닌 때 세탁하고자 할때는 사전에 다른 호실에 양해를 구한다.)

- ② 개인 의류 등에는 이름을 표기하여 다른 사람의 세탁물과 쉽게 구분되도록 한다.
- ③ 세탁물 건조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한다.

제32조(외박과 외출) ① 외박은 주말 또는 공휴일에 한하되, 특별한 경우 사전에 사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휴일 외박을 희망하는 학생은 사전에 사감에게 외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야외 활동 시 안전사고 예방과 공중도덕을 잘 지킨다.
- ③ 외출을 희망하는 학생은 사감에게 외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외출자의 귀사 시간은 22시까지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귀사 시간을 지키기 어려울 때는 미리 사감실에 알려야 한다.
- ⑤ 사감이 직접 통화 등을 통해 보호자(학부모 등)의 동의 사실을 확인한 후 공휴일 이외의 외박 및 외출을 허락한다.
- ⑥ 외박 또는 외출 장소를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기숙사 재입사제한 등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
- ⑦ 외박 장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사감실에 알려야 한다.
- ⑧ 종교 행사, 학원 수강 등 정기적 외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자(학부모 등)가 정기 외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입사 시 준비물) 입사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준비한다.

- 1. 침구류: 이불(1인용 침대 크기의 깔개와 덮개), 베개, 매트리스 커버
- 2. 의류: 생활 공간이 협소하므로 불필요한 의류의 반입은 피할 것
- 3. 세면도구(비누, 샴푸, 치약, 칫솔, 수건)와 기초 화장품, 개인용 컵 등
- 4. 학습 자료: 교과서, 참고서, 필요 시 USB 등 개인용 저장장치 준비
- 5. 현금: 가급적 현금 소지를 최소화하되, 개인이 원할 경우 사감실에 위탁
- 6. 개인용 실내화: 기숙사용과 학교용은 별도 구입
- 7. 개인용 세탁물 바구니
- 8. 학습을 위한 전자기기(노트북 등)이나 핸드폰

제34조(기타) ① 기숙사 내에 설치된 게시판을 수시로 확인하고 안내방송 및 사감의 지시 사항 등 각종 안내 및 전달 사항을 숙지한다.

- ② 등·하교 시, 용의·복장을 단정히 한다.
- ③ 등교 시간 및 귀사 시간을 준수한다.
- ④ 남학생이 여학생 기숙동, 여학생이 남학생 기숙동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한다.
- ⑤ 입·퇴사 시, 건강 이상 등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보호자(학부모 등)의 호실 출입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 ⑥ 개인용 옷장(사물함) 열쇠가 필요한 경우 사감실에서 열쇠를 받아 본인이 관리하되 되사 시 반드시 반납해야 한다. 단, 파손 또는 분실 시에는 이에 상응하는 변상조치를 해야 한다.
- ⑦ 출판물 구독은 개인적으로 해당 신문 지국에 신청하여 구독할 수 있다.
- ⑧ 시설물 또는 기타 사항에 관한 신고 시 칠판에 기록하지 않고 사감실에 연락한다.
- ⑨ 설날·추석 명절의 연휴 기간과 3일 이상의 휴업 또는 휴교일 경우 휴관하고,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중에 일주일 이상은 청소와 소독 및 시설 점검을 위해 휴관 한다.
- ⑩ 아침, 저녁 식사 배식 시간을 잘 지켜야 한다.
- ① 학교 일과 중에는 기숙사 출입이 금지되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감 또는 담임교사와 함께 출입할 수 있다.
- ② 방과후 교육활동 시간 또는 야간자율학습 시간 중에 발생한 환자는 담임교사 또는 해당 교과 교사의 승낙을 받은 후 사감실에 신고하고 입실한다.
- ③ 노트북, 전자기기 등의 충전은 기숙사 내에 상주하는 시간에만 하고, 등교 시

에는 전원을 차단하도록 한다.

④ 위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명시된 내용이라 할지라도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6장 규정의 개정

제35조(개정 절차) 본 규정의 개정 절차는 학생생활제(齊)규정의 개정절차를 따른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기숙사학생생활규정 Q&A

Q1. 기숙사 학생 자치회의 학생대표가 학생의 생활 태도나 생활 수칙 준수 여부를 감독하게 할 수 있나요?

==> A1. 안 됩니다. 학생 생활을 지도·감독하는 주체는 교원입니다. 자치회의 학생대표라 하더라도 학생 생활을 지도하거나 감독할 수 없습니다.

Q2. 기숙사의 취침 시간이나 자율학습 시간에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할 수 있나요?

==> A2. 취침 시간이나 자율학습 시간에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여 그 '소지'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다만,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개정한 기숙사생활규정에 따라, 특정 상황(취침 시간, 자율학습시간 등)에서 휴대전화의 '사용'을 제한할 수는 있습니다.

Q3. 학생의 외출과 외박은 어떻게 관리하여야 하나요?

==> A3. 학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외출 등에 학생의 신청, 보호자(학부모 등)의 동의, 기숙사 담당 교직원과 사감의 허락 등 일정한 절차를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절차의 구체적인 사항은 학교의 실정에 따라교육공동체의 논의를 거쳐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출이 가능한 요일과 귀사 시간을 정하고 학생이 외출 신고서를 제출하여 자율적으로 외출・귀사하는 방식이나 기숙사 교직원과 사감이 학생의 외출을 확인한 뒤 외출 사실을 보호자(학부모 등)에게 통지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Q4. 이미 학교 전체적으로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기숙사의 학교폭력예방교육을 대신할 수 있나요?

==> A4. 기숙사 별도의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학교 전체적으로 시행하는 학교폭력예방교육에 기숙사와 관련한 내용을 추 가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Q5. 기숙사 입소자를 선발할 때 지원 학생의 모의고사 성적을 우선하여 반 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발 기준도 평등권을 침해하는 규정인가요?

==> A5. 선발 기준에서 학생의 성적을 과도한 비율로 반영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학업 의지와 함께 공동체 생활 태도, 건강 상태, 기숙사 숙식의 필요 등을 균형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6. 학생이 기숙사에서 소지하기에 적절치 않은 물건을 가지고 있다고 의심될 때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 A6. 학생의 물품 소지와 관리는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한 사안으로 그 자유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다만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목적으로만 소지품을 제한하거나 검사할 수 있는데, 그러할 때는 제3장 제7절의소지품 검사와 관련된 사항을 참고하여 기숙사 내 소지 제한 물품 및 소지품 검사 관련된 규정을 둘 수 있습니다.

3. 기숙사학생생활규정 참고 사항

가. 기숙사 입소자 선발 시 유의사항

- 1) 기숙사는 학습 환경이 열악하거나 원거리를 통학해야 하는 학생을 지원하고, 학생의 학습·생활에 편의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 2) 입소자 선발 시 기숙사의 운영 취지에 따라 사회적 통합 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가정 등)와 원거리 통학자(통학불편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는 규정을 둔다.
- 3) 우선 선발 대상 외의 입소자를 선발할 때는 기숙사 생활의 필요, 학업 의지, 교우관계 및 인간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선발의 기준으로 성적만을 고려하는 규정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 4) 징계, 병력, 학년, 사생활 등의 특성을 입소자 선발에서 고려하고자 할 때에는, 일부 특성을 일률적인 입소 제한 사유로 삼아서는 안 되며, 그러한 특성이 기숙사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하여 종합적이고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나. 기숙사 운영 방법

1) 일부 학교에서는 각 호실마다 '방장(실장)'을 두고 점호 및 점검, 청소 확인 등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를 지양하고 다른 방법으로 각 호실을 운영한다.

〈권장 운영 방법〉

- 매주 순번을 통한 당번(책임)제 운영 방법 권장
- 각 호실마다 동학년이 생활할 것을 권장

대 여러 학년이 섞여 생활할 경우, 선후배 문화, 학교폭력 등에 노출될 위험이 있으므로, 같은 학년끼리 생활함으로써 학업과 휴식문화 등에 동질 성 회복

- 2) 여러 가지 이유로 기숙사생활을 할 수 없는 학생에 대해서는 '기회의 평등'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임을 고려하여 '기숙사학생자치회' 운영에 참여하는 '회장, 부회장, 학년대표, 층장'에 대해 '봉사활동시간' 으로 인정하는 것는 바람직하지 않다.
- 3) 기숙사 학생자치회 임원에게 학생 자치의 본질을 벗어나는 업무와 의무를 부여하지 않아야 한다. 기숙사 학생 자치회의 본질적 역할은 학생의민주적이고 자율적인 자치 활동이며, 기숙사 담당 교직원과 사감의 업무를 보조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4) 헌법 제10조는 개인이 자기 의사에 따라 행위를 할 수 있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확인한다. 이에 따라 학생은 정규 교육 과정 외의 시간, 즉 평일 수업 이후와 주말의 일상을 자유롭게 영위할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가진다. 다만,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는 입소한 학생의 안전을 책임지고 보장하여야 하기에, 학생의 외출 및 외박에서 사고를 예방하고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일정한 절차와 제한을 둘 수 있다.

다. 기숙사생활규정 위반 시 조치

- 1) 기숙사생활규정을 위반한 학생에게 생활교육을 실시하는 규정을 둘 수 있다. 생활교육은 기숙사생활규정에 적시된 경우에 한해야 하며, 기숙사생활규정은 생활교육의 대상이 되는 행동을 명료하게 규정해야 한다.
- 2) 조치는 기숙사생활규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조치 과정에서 학생과 보호자가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규칙 위반 시 퇴사시킬 수 있음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의 입사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강제하거나 그와 비슷한 규정을 두지 않도록 유의한다.

3) 기숙사생활수칙의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감 및 담당교사는 경중과 횟수에 따라 '주의, 경고'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위반 사실이 '학교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될 경우 사안에 따라 '선도위원회(학교폭력심의위원회,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학교생활(기숙사생활포함) 중 선도위원회(학교폭력심의위원회, 교권보호위원회) 결정 중, '사회봉사'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해당 학생은 기숙사생활 자격을 상실할 수도 있다.

4) 조치의 일종으로 퇴사 조치(단·장기, 영구 퇴사)를 부과하는 것은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일반적인 조치와 비교하였을 때, 퇴사에 따르는 학생의부담(통학 시간, 통학 시의 위험)이 과중하므로 규정 위반의 경중에 따라 신중하게 조처하여야 하며, 다른 방법으로 지도할 수 없는지 재고해야 한다.

라. 기숙사 내 전자기기의 소지와 사용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은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 통신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과 밀접히 관련된다. 휴대전화는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도구일 뿐 아니라 정보에 접근하고 일상을 영위하는 생활필수품으로서 그 소지와 사용을 보장하여야 한다.

기숙사에서 학생이 위험하거나 위급한 상황에 부딪혔을 때 휴대전화를 비롯한 전자기기는 학생이 외부에 구호를 요청하는 등 자신을 보호하는 쉬운 수단이 된다. 따라서 기숙사 내 전자기기는 학생의 안전과 관련된 사안으로 인식하여야 하고, 그 소지와 사용을 전면 금지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숙사 내 전자기기의 무분별한 사용이 공동체 구성원의 건강과 사생활 등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공동체의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논의를 거친 기숙사생활규정으로써 전자기기의 사용을 일부 제한할 수 있다.

마. 기숙사 내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처

기숙사에서는 학생이 보호자의 직접적인 보호를 받지 않고, 교직원이 학생의 생활 전부를 관찰할 수 없으므로 학교폭력 예방 시스템의 사각지대가될 위험이 있다. 또한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은 일상 전반을 함께하고밀접한 관계를 맺는다는 점에서 기숙사 내 학교폭력 사안은 정도가 심각하거나, 폭력이 일상적으로 지속될 염려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기숙사의 학교폭력 예방·대처는 일반적인 학교폭력 예방 시스템에 의존하여선 안 되며, 기숙사에 특화된 규정과 절차를 두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과 생활 수칙, 학교폭력 신고 또는 인지 시 학교가 취해야 할 대처, 사후의 처리 등을 내용으로 둘 필요가 있다.

바. 기숙사생활규정 주요 개정 권고 사항

1 합리적 기숙사 선발 기준 마련을 통한 기본권 보장

(선발기준) 기숙사생 선발기준으로 '학생선도위원회 및 기숙사에서 징계 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자'와 유사한 규정은 징계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제한이며 학생의 징계는 '학생선도위원회'에서만 가능함. 그리고 기숙사는 설립 목적에 따른 선발 기회에 '원거리 통학생', '교통 약자', '가정에서의 학습환경이 좋지 않은 학생'등이 우선 고려되어야 함. 또한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등 징계 기록을 사유로 입사 자격을 무기한 제한하는 것은 과잉 처벌의 우려가 있으므로, 징계처분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재입사 가능하도록 수정하여 학습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학생에게 최상의 이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권고함

●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용어의 사용으로 학생 인권 증진

(입사 제외 기준) '품행이 단정치 못한 자'와 같은 모호한 의미를 가진 용어로 입사 제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학생의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음 (기숙사 생활수칙) '외출 중 학생 신분에 벗어나는 행동을 할 경우 징계를 받는다'와 유사한 규정의 경우, '학생 신분에 적절한 행동'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내용이 없으므로 자의적이고 주관적으로 해석되어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개정이 필요함

⑩ 인권 친화적 기숙사 생활 규정 마련을 통한 학생 기본권 보장

(기숙사 생활수칙) '무단 외출, 외박 등 생활규정 미준수 시 서약서(벌점 내용, 학생 및 학부모 서명 포함)를 작성한다'와 유사한 규정은 학생 및 학부모(보호자)의 서명 작성 요구는 양심의 자유 및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생활 협약의 형태로 개선을 권장함

(기숙사 생활수칙) '휴대전화 사용을 금하며, 적발 시 압수한다'와 유사한 규정은 학생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규정 위반으로 인한 휴대전화 학교 보관과 같은 처분은 재산권 침해 소지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타인의 학습 및 휴식(수면권)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사용 시일정 시간 이후 제한 등)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개정 권고함

(상벌점제) 기숙사 내 질서 유지를 목적(공동체생활에 있어서 지키고 배울 수 있는 것이 중요)으로 상벌점제를 운영할 경우,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적용의 어려움과 점수화와 누적만을 통한 결과 적용이 비교육적임을 감안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2018년 이후 상벌점제 사용을 폐지를 권고함. 대안으로 1차 위반 시 '주의', 2차 위반 시 '경고' 및 보호자알림 및 상담, 3차 위반 시 입사제한 조치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음을 권장

(자격상실) 기숙사 생활규정 내 학교선도위원회 결정에 따라 '사회봉사'이상의 징계를 받을 시 기숙사 생활 자격을 상실하는 규정에 대해 기숙사 생활 중 발생한 징계 사안일지라도, 징계에 대한 심의는 학생선도 규정에 따라 학교선도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개정할 것을 권고함. 그 외 기숙사 생활수칙은 기숙사 내 학생자치회와 운영위원회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음

함께 만든 사람들

총 괄 강신영 |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국 국장

기 획 배경환 | 경상남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과장

이필우 | 경상남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교육인권경영센터장

전수정 | 경상남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장학사

집 필 및 편 집

이명섭 | 김해 관동초등학교 교감 |김해 주촌초등학교 교사 박병철 | 창원 내동초등학교 교사 최은지 |김해 구봉초등학교 교사 안현정 박성현 | 함안 군북초등학교 교사 김지현 | 함안 칠서초등학교이룡분교 교사 | 창원 마산양덕중학교 교사 정기용 김선영 | 양산 양산남부고등학교 교사 배상휘 | 경남혜림학교 교사

검 토 김민태 |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

김보상 | 경상남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장학관 박시동 | 경상남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장학관 백재성 | 경상남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장학사 진희정 | 경상남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변호사 조수정 | 경상남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주무관 이운희 | 경상남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파견교사 조정민 | 경상남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주무관

발행인 박종훈 | 경상남도교육감

발행처 경상남도교육청

발행일 2023. 12.

주 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41

저작권 경상남도교육청